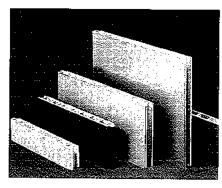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대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랑성/M²당 무개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바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내통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관넱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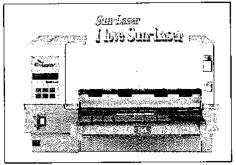
내진성/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외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강락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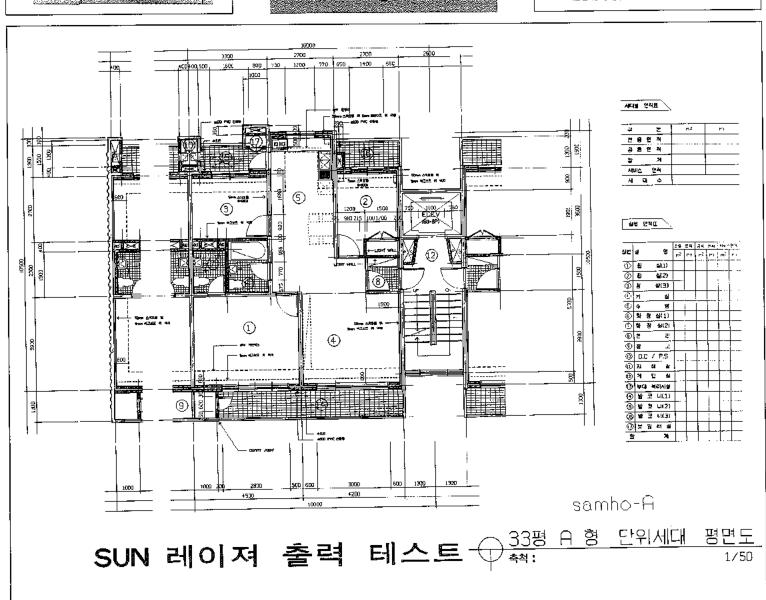
solution 1. 서통AI사업부가 국산화를

CAD 겸용 레이져 프린터 썬레이져 탄생!



雪墨从打 720 [4

- 해상도:300dpi
- 프린트속도:11 PPM
- 용지 Size: B4,A4
- 무한대 확대,축소 회전기능
- Emulation Version
 - -KS(NAIS) -IBM 5540/50
 - -KSSM
- -PS-55xx
- -EPSON
- -HP II



ARRIS7計量可含量但以

)2.5.1 -- 92.7.3(

실현하는 두가지 SOLUTION!

Solution 인공지능 3S 기능을 채택한 해인 슈퍼 하우징!



■해인 슈퍼 하우징의 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 구현 -사용자의 단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해인 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 기능 -창호도 자동 작도 기능

-벽체 마감 자동 작도 기능 -벽체 해칭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 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계단 작도 기능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 기능

-MULTI WINDOW 기능 -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완성형 한글(약 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 (약 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캐드축제'92 문의전화 서울:514-0386 /대구:(053)421-2856 캐드축제담당자



▶ 캐드축제 92 기간중에는 다양한 PACKAGE 상품을 준비하여 특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AutoCAD 사용자를 위하여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3rd Party S/W CADSPEED와 우일 Detail Library를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 \mathbf{B} \mathbf{C} (주)빌리언시스템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9세종분화회관
- o**국립극**장
- ※쉐라본워커힐
- 롯데호텔
- · 부사무화예술회관 이화어대강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서울·제주 신라호텔 ②수안보와이키키핀광호텔

o유관순기념관

o 충현교회본당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0계몽센타 예술국장
- o<mark>육군박</mark>물관
- e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 209-1 松麻里 山 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 면데기를 키rd 8억 ㅁ 8억 ii 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위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저진동 특수감속기의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의 장착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실현 최고기술전의 완벽A/S는 언제어디서나 고개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반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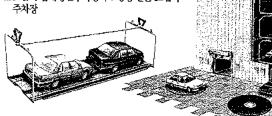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배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작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두대 주차

學民主義 일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황식, 중식)

- 國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 주차시키는 방식 黨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청골 조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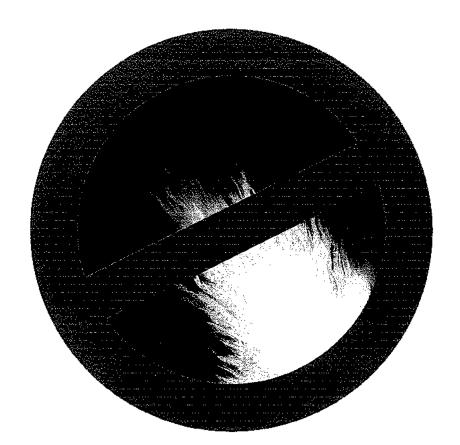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파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점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면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율을 국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인슈그라스율파넬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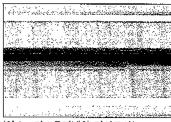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자구에 의하여 1급 불면새로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 하므로서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파넬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로
스치로폴	85°C
P.U.R	110°C
P. I. R	<u> </u>
베놀퐄	200°C
그라스물	350°C

...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2. 우수한 견교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인 유리 섬유의 결을 수작으로 세워 성행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의 결율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한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 바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의 단면구성)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제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얼재명	열 전 도 윭
그리스율	0, 029
스치로폴	0. 0285
암 면	0.053
발포 CONC.	0.15

(단얼재의 얼전도율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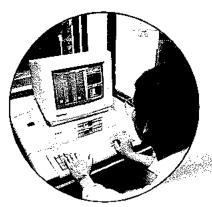




본사맞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립디 39-2 TEL: (02) 745-6687, (0336) 34-8880 FAX: (0336) 32-4243 사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여산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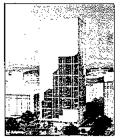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시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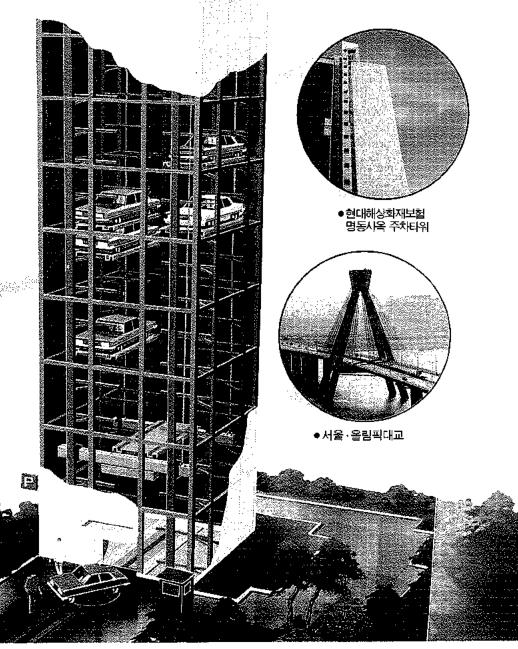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 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YOP-A연립형



YOP-M형



유원 컴퓨터 주차타위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이상, 1분내 입출고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독창성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시례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1기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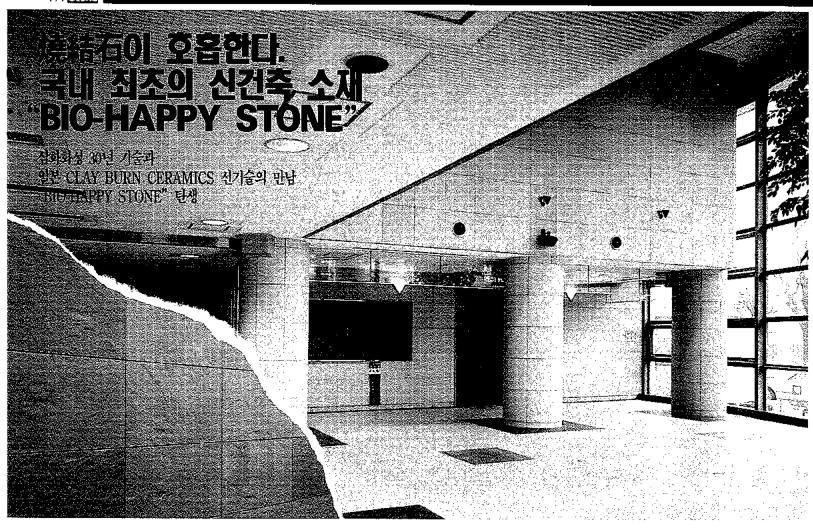
●부산고속터미날 : 3기 120대 ●사당 쇼핑센타 : 3기 150대

●잡실 뉴스타관광호텔 11기 50대

●평창산업주치타운 :4기 200대



상담전화: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02) 754-8521 주차 폴랜트부



국내 유일의 종합 염기성 내회물 제조업체인 삼화화성이 30년 축적된 기술과 오랜 경험으로 '91 우수 KS업체 대상 수상과 함께 국내 최초로 건축 내외장 마감재인 소결석 "BIO-HAPPY STONE"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의 언어인 신기술과 IE 추진 강화로 2000년대 최고기업으로 도달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

Bio 은 제품 지체에서 발생되는 바이오성분에 Happy Stone 의하여 공기중의 유해질을 정회시키고 모든 생물의 생체리들을 활성회사면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어 자연스럽고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2. 뛰어난 가공성

1,200℃ 이상에서소성한불연제품의 수축, 팽창이 없고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대청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사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25, 600×600m/m×25 로 공공건물,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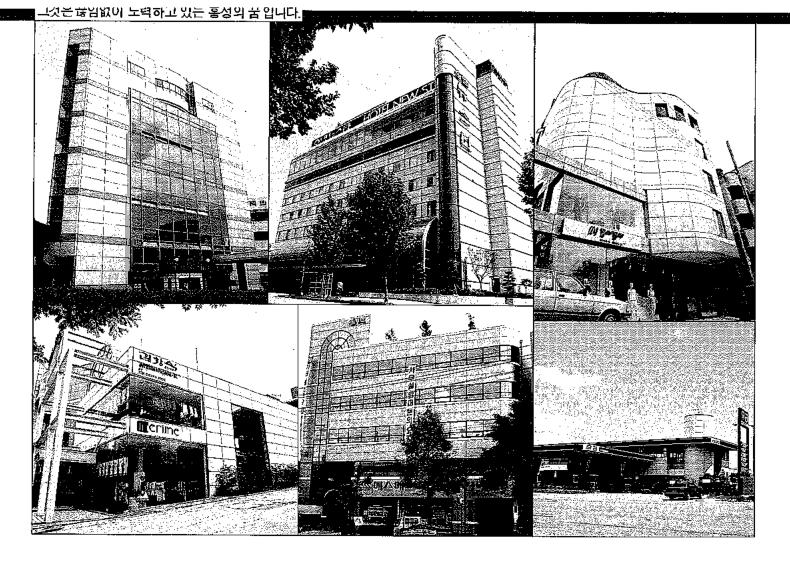


삼화화성 '91우수 KS업체 대상 수상-



三氧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본사 · 공장 : 경북 포항시 청림동 1~143 TEL (0562) 90 - 0114, 91 - 2051 ~ 3 FAX. 91-0033 /서울총판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9-22(국제조명빌딩 2총) TEL (02) 516 - 7772 ~ 4, FAX. 516 - 7775



OFER EN 230 35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건축 내·외장재의 혁신



아키텍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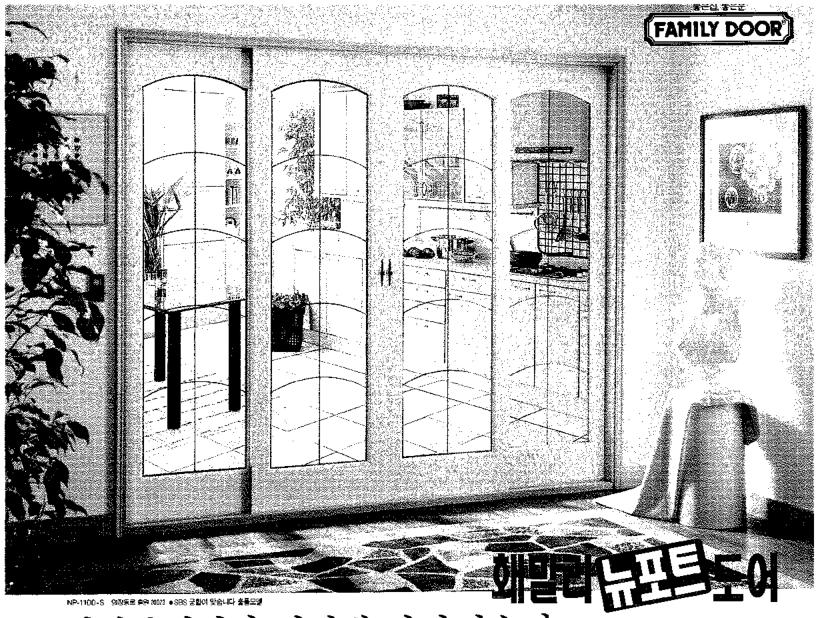
알미늄판, 아연도철판, 동철판 등 각종 금속판(O.1mm~O.5mm) 을 양편으로 하고 코어부의 일정 두째를 강력한 접착력과 보강력이 있는 가열경화성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혼합물로 형성하여 줌으로써 금속한판 전체의 보강은 물론 단열, 방진, 방음 및 차음의 효과를 낼수 있고 변질이 되지 않는 특수 금속함판의 건축재입니다.



사업수주등대응용

-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회관 1층 TEL..(02) 562-1264, 568-3474~6, FAX.(02) 566-0856
- ■본사 및 공장: 경기도 이천군 내월면 사동리 산 78-2 TEL. (0336) 34-5119, 32-1903~4, FAX. (0336) 34-9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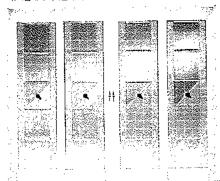


실내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수가…

멋과 실용성이 함께합니다.

구마에서 널리 보급되어온 정통 FRENCH DOOR를 이상적으로 핵산시켜 BRASS유리살과 BEVELED GLASS가 접합된 독특한 산개발제품으로 아파트 한관입구의 중문, 색당출입문, 거실과 베란다출입문 등 다양한 용도로 실내분위기가 돌랄만큼 변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요.



NP-1200\$ 연합통로 출원 20024

인테리어 감각이 살아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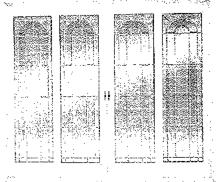
오래된 재래식의 뒤뜰린 문으로 집의 품위가 떨어지지는 않으신가요? 현완이나 거설주방 등을 인테리어 감각이 돋보이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소파나 실내가구에 비교하여 귀댁의 문들이 여울리시는지요? 이제 화밀리뉴포토도어로 새로운 인테리어 공간을 창출해 보십시오.

NP-1000S 명성등록 2월 1899

품질을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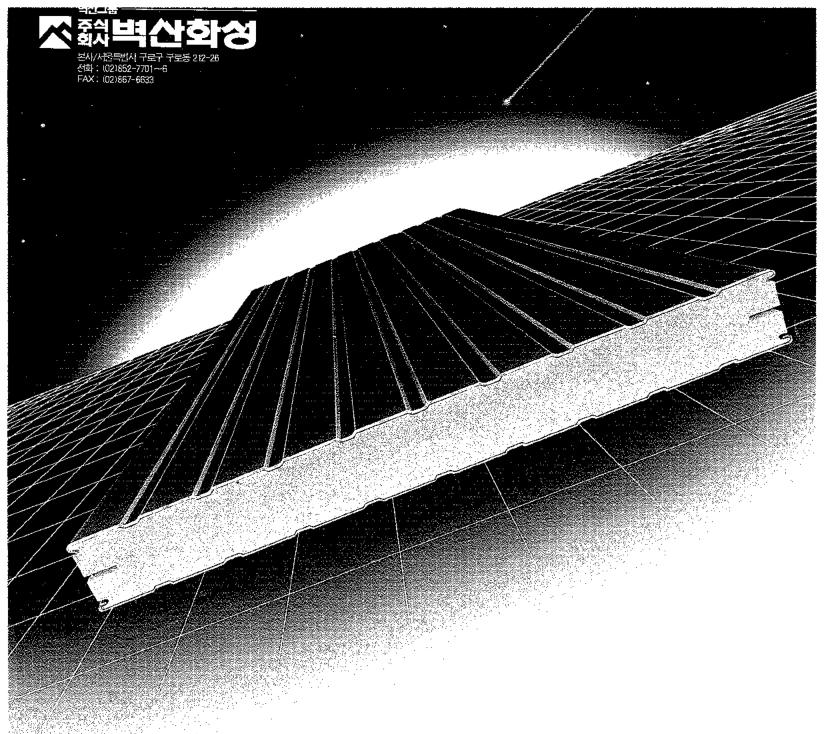
해밀리뉴포트도어는 임선된 자재의 사용과 철저한 품질관리하여 고도로 숙련된 전문 기능인에 의하여 채작되며 이미 미국, 일본, 등에 수출을 통하여 명성을 얻고있는 FAMILY DOOR가 품질을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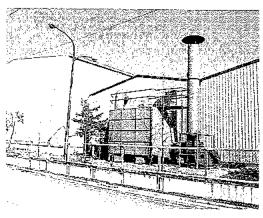
NP-900 의관등학 현장 117194 + MBC 사랑이 뭐길래 출품모델



물 국내대리절 ● 서울: 강남549-8800 건설화한 540-0555 울지로 268-3124 논현 545-7352 은평 339-9594 사태운 388-2956 ◆ **경기**: 행력 655-3943 오산 72-9300 인천 422-0859 안영 55-3813 인산 402-7869 생남 757-3177 부평 518-4248 ◆ 출청 : 대전 527-5120 대전등부 255-7117 대전등부 284-3977 청구 65-4241 충구 647-7255 충구 중앙 상47-3750 서산64-4158 천연 62-8196 개천 43-7425 대천 34-7327 • 작원 : 강동 41-3341 동해 34-5488 원주 42-2702 숙초 33-4405 영월 374-4303 춘천 51-2816 순천 중앙 5-3257 ● 호설 : 광주 259-9820 군산 42-6719 천주 85-3222 여수 31-4417 충천 742-2870 광주사무757-6451 • 경험 : 부산 741-6601 동부산 464-1277 대구 753-6700 대구등당 555-2299 마산9 · 5000 구이 51-0646 포함 81-8370 안동 2-3197 영주 34-6012 김천 30-5977 김찬중앙 333-4966 울산 92-3668 경주 43-1810 부산동제상 35-5146 청구 535-5888 전략 439-4884 전주 745-892 부산전시장 505-8686 점수 35-7528 ◆ 자주 : 제주 56-4131 서기포 33-8204 플래 생고대리철 ◆ Tokyo ◆ Oseka ◆ Losangeles ★대리철 개설문의 : 작용 (032) 577-0122 이승인



조립식때널의 품질은 중간단열재가 결정합니다



최고급 난연·방수단열재 **아이고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_ 그 명성에 걸맞는 품질로 조립식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터스트리(UCI)사의 진공 압출발포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인 아이소핑크를 중간 단열재로 사용하여 세계적 명성의 조립식패널 메이커인 네델란드 아이소월 인터내쇼날 (ISOWALL INTERNATIONAL B.V.)사의 샌드위치 라마네이트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 □ 핑크월은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 핑크월은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 핑크윌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 핑크월은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 핑크윌은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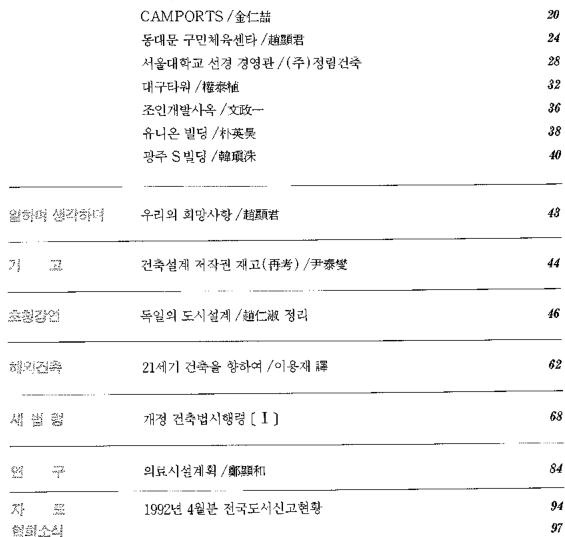
Pane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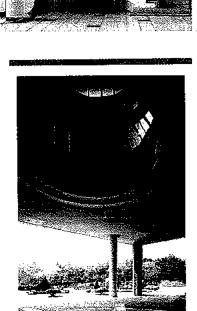


차례/1992년 6월호 통권 제278호

서초동 주택 /宋光燮

aleae





표지 : 서울대 선경 경영관 (설계 / (주)정림건축)

發 行 人 吳雲東

編輯企劃:編纂委員會

委員長:李義求

委員:徐千植,李瓚榮,金文圭,崔英集,

宋洙九

編 輯:出版事業部

發 行 處: 大韓建築士協會

住 所 :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137-170

雷 話:代表(02)581-5711,581-5712~14

패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 /72(054-2) : 0612(519)

印刷人: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Eui-Koo

Member: Suh, Chun-Sik/Rhee, Chan-Young

Kim, Moon-KyulChoi, Young-JeeplSong, Soo-Koo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16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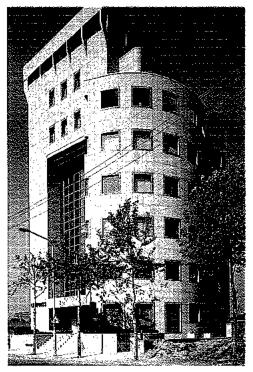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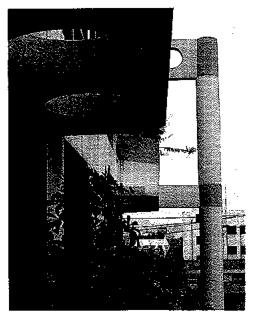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78. JUNE 1992

WORKS	Seocho - dong Residence Song, Kwang - Sub	16
	CAMPORTS / Kim, In - Chul	20
	Tongdaemun Sports Center / Choi, Hyun - Koon	24
	Sunkyung Management Hall in Seoul Nat'l University /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28
	Taegu Tower / Kwon, Tae - Sik	32
	Join Development Co. Building Moon, Joung - Ill	36
	Union Building / Park, Young - Ho	38
	Kwangju S Building Han, Jin · Su	40
ESSAY	Our's Wishful Thinking Cho, Hyun - Koon	43
FEATURE	Reconsideration of the Architectual Design Copyright	44
	Yoon, Choon - Sup	44
!SSUE	Deutschland Urban Planning / Prof. Dr. Ing Michael Trieb	46
OVERSEAS		·
ARCHITECTURE	Go toward the 21 C Architecture Daniel Libeskind	62
NEW & LAWS		
ORDINANCES	New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Building Law	68
REPORT	The Planning of Medical Facilities / Cheong, Hyun - Wha	84
STATISTICS		94
KIRA NEWS		97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통1603·55, 581·5715~8·서대문분회 / 서대문구연화동169·25, 333·6411 • 관약분회 /관약구신임통1422·17, 882·6744 • 도봉분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 /영등포구당산3기81, 634-2143ㆍ강동분회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ㆍ강서분회 /강서구화곽동1105·05, 604-7168ㆍ성동분회 /상동구구와동252-16, 446-5244ㆍ동대문분회 /동대분구신설 동101-7, 923-6313· 총로분회 /종로구수성동46-18, 735-0905·마포분회 /마포구성산동275-1, 336-5057·송과문회 /송파구송파50-12, 423-9158·중구분회 /송무로2가49·11, 279·1415·용산분회 /용산 구원효로17·129·22, 712·7647·시초문회 / 사초구시초1동1623·1. 586·7707·윤령문회 / 은평구녹면동79·32, 352·6720·중작분회 / 중작구사당동206·6, 815·3026·강남분회 / 양남구최년동242·30, 511· 8515·노원분회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양천분회 /양천구신정동1027·9, 616·7172·중랑분회 /중랑구면욕동166·46, 923·6123·성북분회 /성복구삼선57410, 923·440] ·구로분회 /구로구구 모용86-4、853-4084 🛢 부산직활사건축사회 / 부산직활시중구동광동 I가1(부산데파트내)(051)246-6284~7 🛢 대구직활시건축사회 / 대구직활시수성구범어동27h1-8、(053)753-8980~5 👅 인천직활시건축사회 / 인천작활시남동구 간석1몽558·1, (032) 437-338:~4(FAX)437-3385(한국종합발당204호) 를 광주직할시건축사학/ 광주직할시복구종홍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를 대견직할시건축사학/ 대전시중구대용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24-5, (0331)47-6129〜30 - 작항분회 /경기도수원시매산도37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 / 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무천분회 / 부천시중구원미 동88-1, (032)664-1554・성남분회 /성남시수정구래평동3407, (0342)755-5445・의정부분회 /외정부시의정부동182, (0351)2-1083・송탄분회 /송탄사서정동343-22, (0333)4-6153・고양분회 /고양군원당 울주교38분역16곳도. (0344)63-8902 · 구리문회 /구리시수백동409-2. (0346)63-2337 · 이천문의 /이천군약천울중리192-1. (0336)635-6545 · 광평분회 /광명시절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 /안산시교 잔동536-1. (0345)80-9130 빨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사옥천동39·5. (0361)54·2442·원주분회 /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강동분회 /강동사양대동6-14. (0391)2·2262·숙초분회 /숙초사동평동 460·63, (0392)33·5081·삼작문과 /삼작시남양동55·43, (0397)2·3106·영원문화 /영원문화 /영원군화원급영소·10960·12, (0372)43·2695 ■총청북도건축사회/총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충 주분회 /충주시역전동673-1. (041)847-3082 · 제천분회 /재천시의림동6·8. (0443)43·6253 · 옥천분회 /옥천군옥천음삼양리222·206. (0475)33·3502 ■충천남도건축사회 / 충청남도대전서충구대총동452·2. (042)256·4088 · 천안 분희 /천안시문화통160-1, (0417)551-4551·홍정분회 /홍정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부여분희 /부여군부여읍통남라703·1, (0463)2·2217·대천분회 /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타복도건축사회/ 전라복도진주시서노승통635·5(매록빌딩 508)、(0652)87·6007∼8·이라분회 /아리사남중동1가77·22、(0653)52·3304·군신분회 /군산사신창동35·4、(0654)445·4060·남원본회 /남원시하장 용 106·2. (0671)31·1000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경동783·23(추선회환)(062)384·7567, 33·9944·목포분회 /목표시대안용1, 10631)43·3348·효원분회 /순천시항천동51·11(0661)3·2457·여수분회 /여수 사관문동41번지. (0662)6t-7023 를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작할서중구동인용17: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회 / 포항시국도동43-8, (0562)44-6029, 46-1661 · 경주분회 / 정주시동천동771-4. (0561)3·3638 · 구 마분회 /구마시원평동961-264。(0546)52-6351 - 52-7547・안동분회 /안동사서부동157-4。(0571)54-5703・김천분회 /김천분회 /김천원기정화동280-1。(0547)2-2541・양루분회 /영주시휴전2동642-52。(0572)33-7504 · 점훈분회 / 점훈시중앙동280-3、(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 /상주시남성동36-23、(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민산서중앙통3713-47, (0551)46·4530~1 · 윤산분회 / 윤산시 남구신장등585·6. (0522)74·8836·전주분회 /전주시산성등7·20. (0591)41·6403·충무분회 /충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김해분회 /김해시부원동61i-1. (0525)35-5592·일양분회 /일양시내일 동392·1. (0527)355·4848· 저장분회 /거장군거장읍중암리274·3. (0598)43·6090· 양산분회 /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겨제분회 /가짜군신현유고현리139·2. (0558)635·3432· 삼산포 문희 /삼천포사동급통91·6. (0593)33-9779 ■제주또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2토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문화 /서귀포시서귀통299-6, (064)62-2233

M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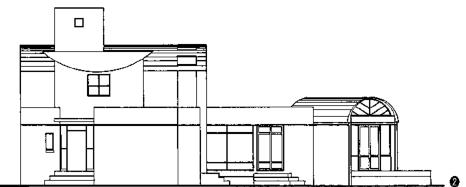
서초동 주택

Seocho - dong Residence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 - Sub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18 — 11 지역·지구 / 전용주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360.80m² 건축면적 / 132.02m² 건폐율 / 36.79% 연면적 / 311.08m² 용적물 / 54.14% 구조 / 철근콘크라트 라맨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 아트월 단열시스템





기하학적 도형들의 이합집산이 보여주는 리듬감 - 보다 다양한 삶의 모습들, 다가구 주택이라면 여러가족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모니가 집안 구석구석에서 느껴져야 할 것이다.

가족구성은 3세대로서 1층 본체에 부모 님과 아이들 그리고 공적인 공간으로서 거 실과 식당을 배치하고 별채는 젊은 부부를 위한 침실과 부속 공간으로 분리시켰다. 지 하층과 2층은 엄대공간으로 계획하고 후일 1층과의 동선회복을 기약해 본다.

건축주가 지금은 일반 직장인으로 가정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지만 학창시절 연극 을 했고 언젠가는 다시 연극으로 돌아가라 라는 꿈을 지니고 있어 집안 어딘가에 연습 실 겸 소극장으로 변용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였다. 여유가 돌아서면 현재 두가 구가 거주하는 지하층은 주차장 쪽과 연계 된 흐름으로 조적벽이 해체되고 그 안에 숨 겨진 2개의 원기등이 살아나 소규모의 문 화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경사진 대지 자체가 남향이고 건물 매스 의 분리로 침실, 거실 등의 주요 공간에 모 두 남향으로 배치되어 시야가 트이는데 거 리낌이 없다. 원래의 의도는 브릿지 아래로 작은 연못을 꾸미는 것이었으나 우리의 습 속이 집안에 주공간 두는 것은 저어하여 브릿지만 띄우고 확 트인 마당의 분위기와 는 또다른 아기자기한 규모의 작은 정원으 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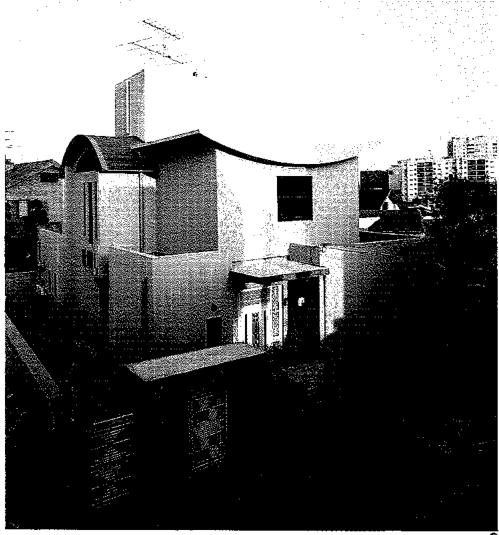
1층의 별채와 2층 가족실에서 보여지는 볼트형의 천장, 그리고 외부에서 나타나는 반달형의 처마선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도시형 주거군의 스카이라인을 살려 줄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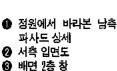
외벽단열시스템을 채택하여 깔끔한 외부 마감을 기대했었으나 겨울칠의 졸속공사로 매스와 메스가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모서 리 부분이 뭉개져 보이는 것이 못내 아쉽다.

편안한 집, 그러면서도 예쁜집 -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가장 소박한 꿈이라라. 다가구 주택으로 일단 이루어진 건축주의 꿈이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각각 외 공간 본래의 성격을 회복시키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을 넉넉하게 담아낼 수 있 는 그런 집으로 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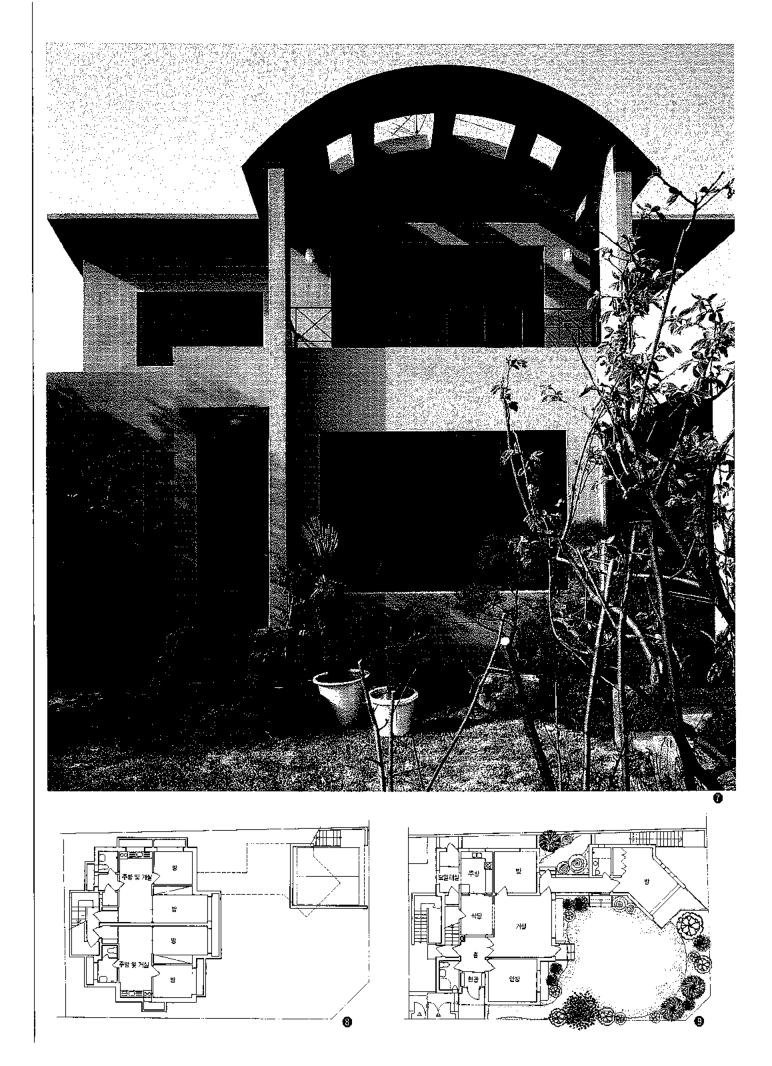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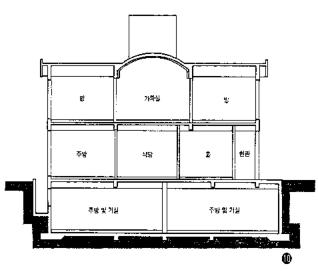
♦ 1층 거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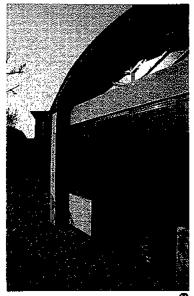
⑤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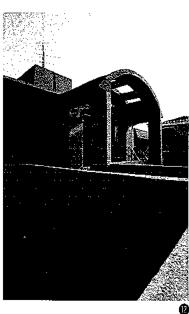
⑤ 남축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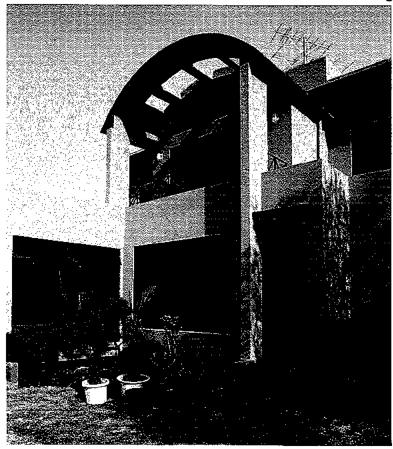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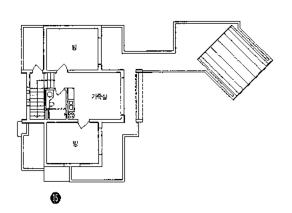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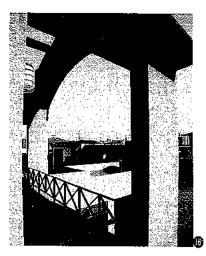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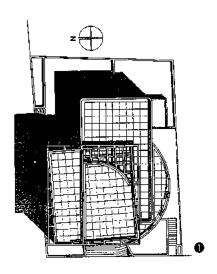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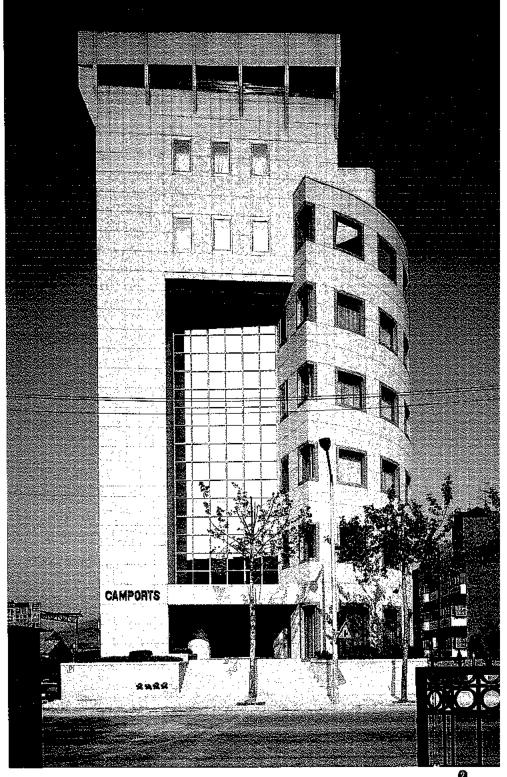
- 상세 [상세 [장하층 평면도바치 및 1층 평면도
- 망 배치 및 1층 평면도
 마 단면도
 1 2층 파사드 상세 Ⅰ
 2 2층 파사드 상세 Ⅱ
 1 2층 파사드 상세 Ⅱ
 1 2층 평면도
 2 2층 파사드 상세 Ⅳ

CAMPORTS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Designed by Kim, In - 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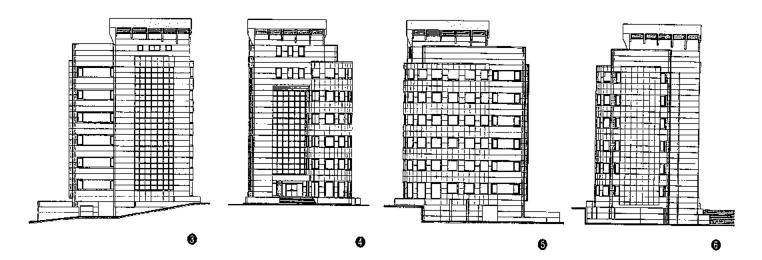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8
 대지면적 / 478.2m²
 건축면적 / 238.95m²
 연면적 / 2,708.46m²
 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
 구조 / R.C 조
 외장 /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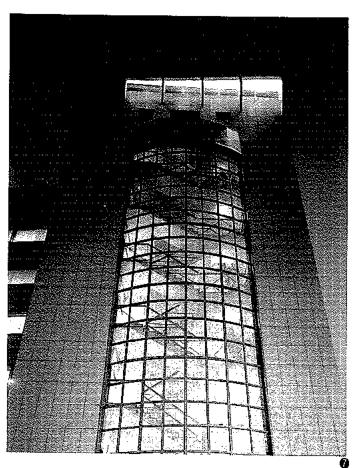


양재동 "서민의 숲"에 있는 윤봉길기념관을 오른쪽으로 보며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교육 문화화관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서 다시 과천쪽 으로 방향을 틀면 화물차량들이 사잇길로 이용 하는 폭 이십미터 도로를 들어선다. 얼핏 오피 스빌딩을 놓기에는 아직 망설여지는 곳이다. 고 속도로에서도 쉽게 눈에 뜨이는 붉은색 회관의 존재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다. 일반적인 도 심의 환경보다 녹지공간이 풍부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리 강조될만한 것 은 되지 못한다. 한적한 교회의 주택가를 연상시키던 이곳도 주변에 들어선 화물터마널에게 침범 당해 더이 상 조용하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도로로부터 골 목길이 접속되는 모퉁이의 대지는 주변의 비어 있는 공간들 때문에 당분간은 혼자 서있어야 하 는 조건이다. 뒷편의 주택들에게는 서쪽으로 비 켜 서 있게 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하고 골목길 의 경사를 염두에 두며 줄거리를 만든다.

지적도상에서의 모퉁이 각도를 현장에서는 전혀 느낄수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직각에 대한 감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은 우리의 주변 에서 쉽게 찾아진다. 직각이 아니어서 어색한



- 배치도
- ④ 우속 입면도
- 🛭 정면 전경
- ③ 배면도
- ❸ 좌촉 입면도❹ 정면도
- #면 상세연결계단 상세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를 이루기 위해 식각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찾아지지 않는다. 전체 란 바로 자연이기 때문이다.

공간의 골격을 그것에 맞추기로 한다. 화장실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담아서 골목길의 각도에 맞추어 세우고 네 개의 기둥만으로 지지되는 주계간은 전면도로에 반듯이 놓는다. 콘크리트의 박스와 프레임으로 이미 공간은 구성되었다. 어긋난 각도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건폐율의한계까지 호를 그어 목면을 만든다. 이것은 벽이 되겠지만 주제와는 관계를 갖지 않는 헛벽의형태로 보이게 하고 싶다. 덤으로 얻어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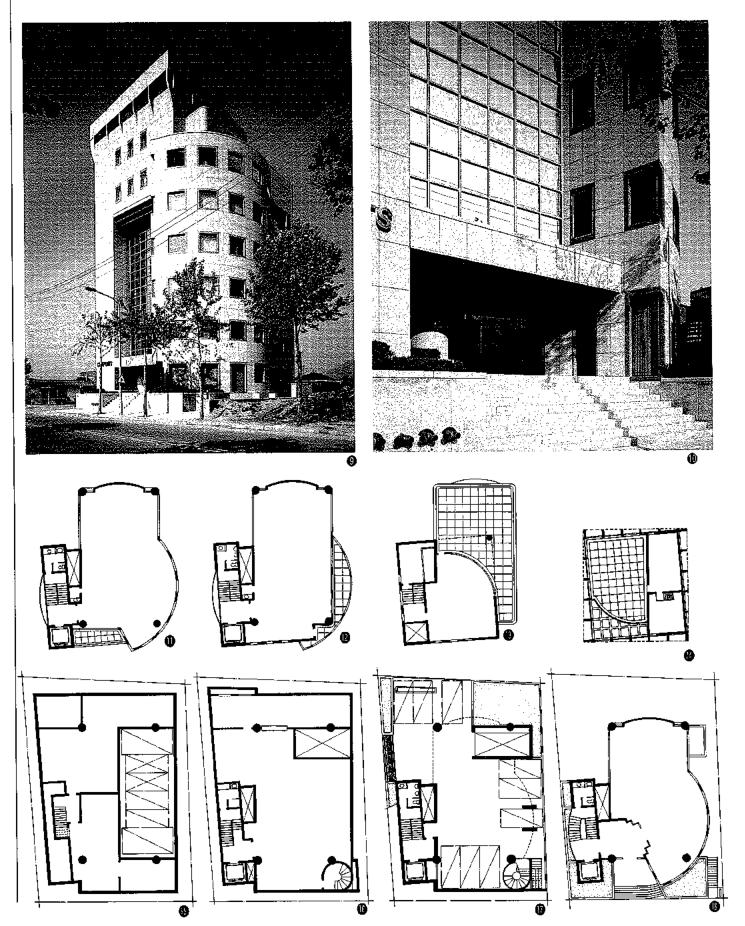
이가 때문이다. 제각각의 높이로 솟아나 있는 부분들은 모호한 상태로 엉거주춤해 있지만, 그 높이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겹침으로 나타 나는 그 관계는 배타적이지 않기 위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용합해 여유와 긴장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정확히 맞물려 들어가는 직각의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운 감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규범을 내부에 감춰두는 지혜 가 필요하다. 모호함이 정확함을 초월할 수 있 을 때 合理와 順理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같다. 그 모호함의 본질에는 아직 이르지 못 했음인지 최종적인 매듭은 정형으로 풀린다. 어

굿난 형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만든 것들은 형태와 공간의 상관성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로 묶은 것인데, 직설적인 형식으로만 나타난 것이 불만이다. 현장의 시공자들은 그것을 왕관이라고 이름지어 부르고 있다.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방법론은 관념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지적인 사고의 결과를 강요했을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긴장으로부터 이완되기 위해서 민헌식의 "비어있음의 中性"과 같은 "어긋남의順理"를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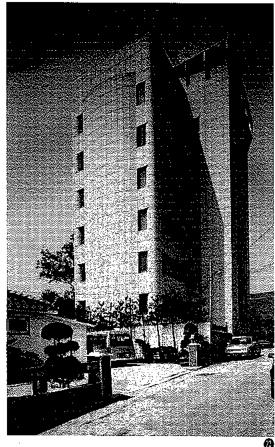
- 남동측 전경현 현관 진입구 전경
- 점을 전립되었다. 3~6층 평면도 7층 평면도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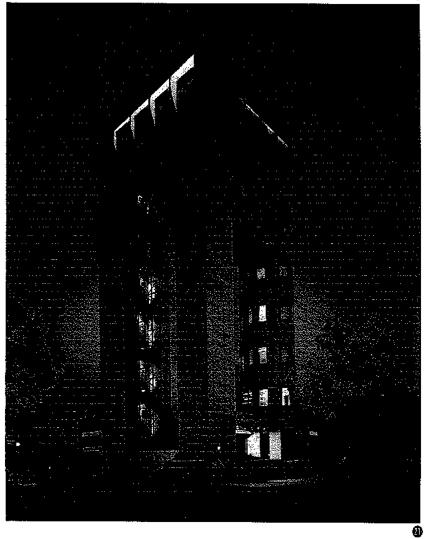
- ♣ 옥탑층 평면도
 ♣ 지하 2층 평면도
 ♣ 지하 1층 평면도
 ♣ 1층 평면도
 ♣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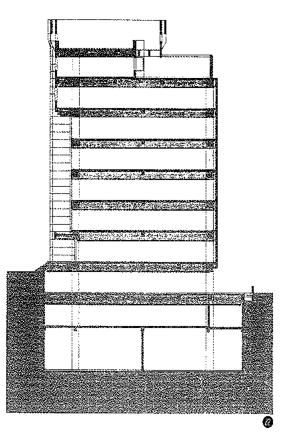


- ⑥ 1층 내부 전경⑥ 북서축 전경⑥ 남서축 전경② 주단면도









동대문 구민체육센타

Tongdaemun Sports Center

趙顯君/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조 by Cho, Hyun - Koon 대지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56(장평공원 내)

대지면적 / 공원부자 15,698m² 중 3,429m²

건축면적 / 1,417,89m²

연면적 / 5,157m²

건폐율/ 9.03%

용적률/20.28%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옥탑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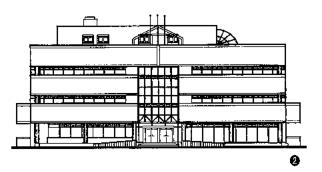
구조 / 대체육관·수영장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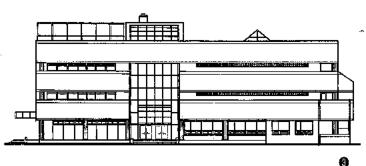
강당 · 교육실 · 근생 · 소체육관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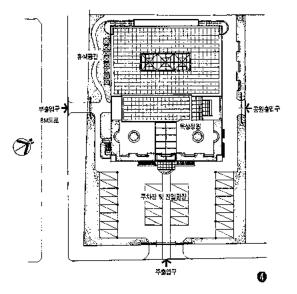
외장재료 / 자기질 파스텔타일, 붉은 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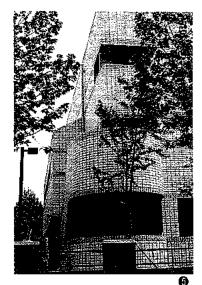
컬러 알루미늄 새시, 컬러 알루미늄 스팬드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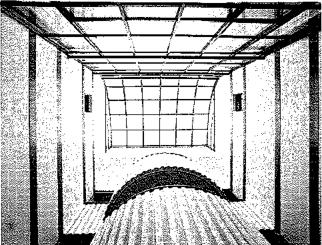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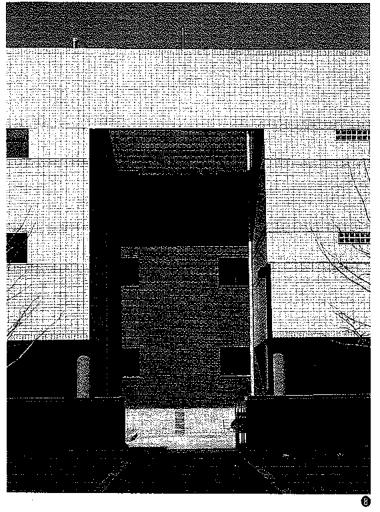




- 정면 전경❷ 정면도
- 6 우측 면도
- ❷ 파치도
- 해면 비상 계단 부분
- ③ 로비 아트리움
- 1층 공원쪽 부출입구 좌측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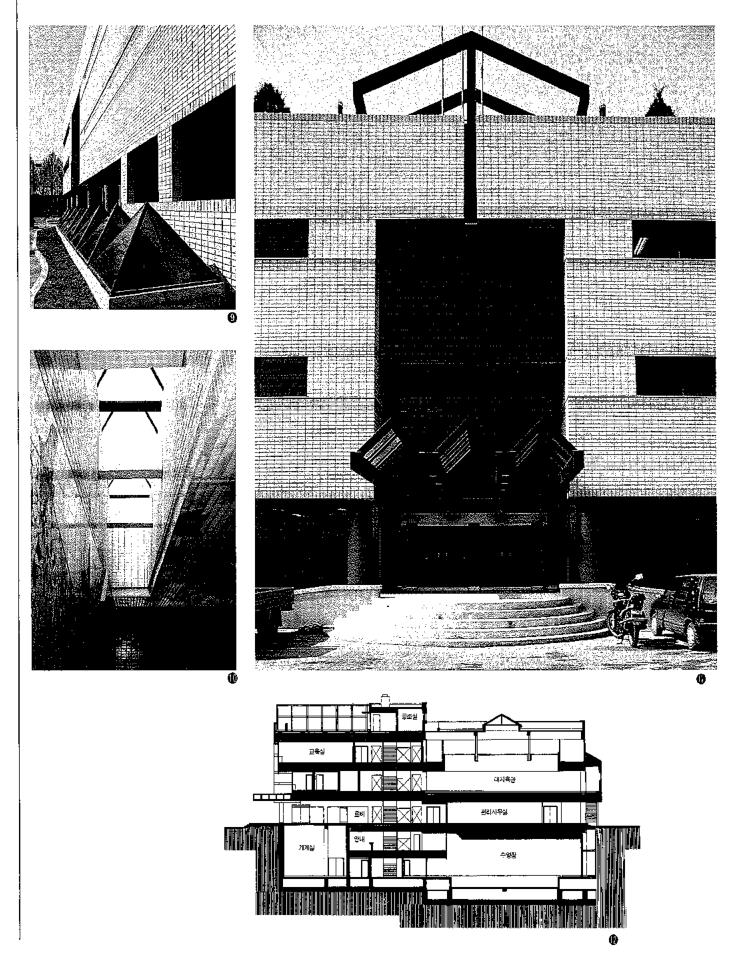
이 건물은 3년전에 현상 설계를 거쳐서 최근에 완공되었는데 시공중 연약한 지반문제로 인해 땅속에서 헤매다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으나 다행히 시공자와 감독관청측의 노력으로 별탈없이 1층바닥 슬라브 뚜껑을 덮을 수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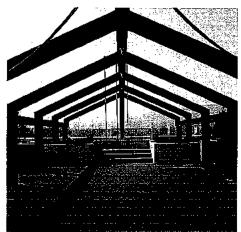
혼하들 관청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축 공시는 임자없는 건물이 되기 쉽상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기 싫어하는 감독축, 소극적이고 무사 안일한 시공자로 인하여 시공의 질이 형편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도 이 점이 가장 우려되었다.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설계자로서 간섭 아닌 간섭을 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건축가로서의 위치와 발언권을 찾고자 하였다. 다행히 시공자측과 감독측이 이해를 거의 대부분 설계자의도대로 시공될 수 있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현장소장이 시공자로서의 책임과자부심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좀더 나은 건물을 짓고자 노력한 점은 높이 사야할 것이다.

계획과정에 대해 약간 언급하면, 처음 현장에서 느낀 점은 계획부지가 서민아파트 단지 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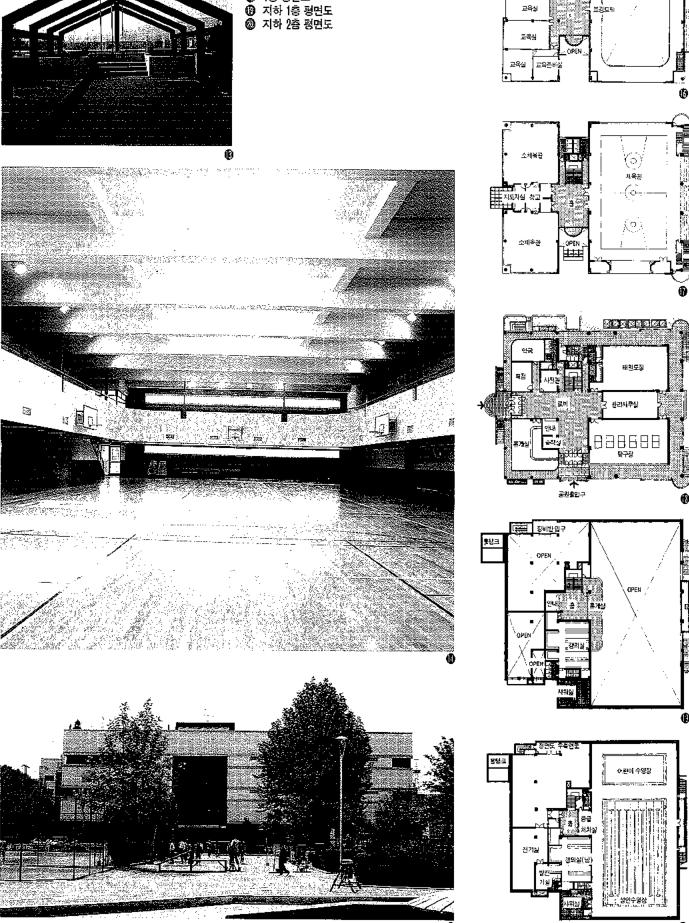
근란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주변의 동대문 구민 회관과 연계하여 이용이 잘되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훌륭한 부지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따라서 각종 사례조사와 기능분석을 통하여 수 영장·체육관 등 큰 스팬이 필요한 부분과 교육 실·유도장·소체육관 등 작은 스펜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 중간을 계단실· 화장실·홀 등의 공용부분으로 계획하였다. 그 리고 정면도로에서의 진입과 공원쪽에서의 진입을 동시에 고려한 배치 및 입면계획으로 양면성을 추구하였다.

- ④ 좌측면 수영장 천창
- ♠ 수영장 톱라이트 부분◆ 정면 상세
- ② 단면도





- 옥상 휴식공간
- 🐠 체육관 내부
- 공원측에서 본 전경
- 3층 평면도
- Ď 2층 평면도
- 🚯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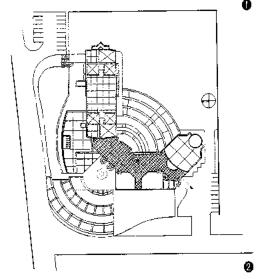
서울대학교 선경 경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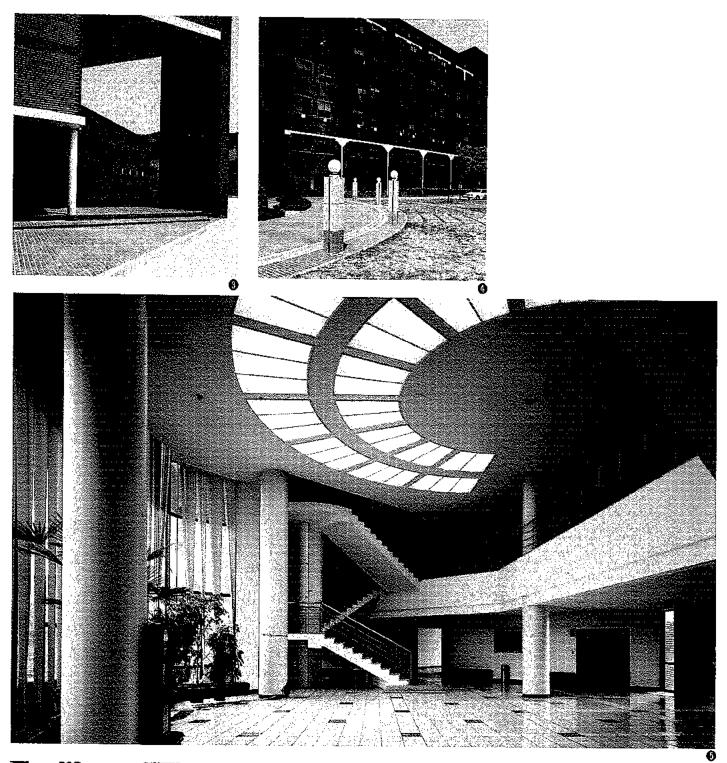
Sunkyung Management Hall in Seoul Nat'l University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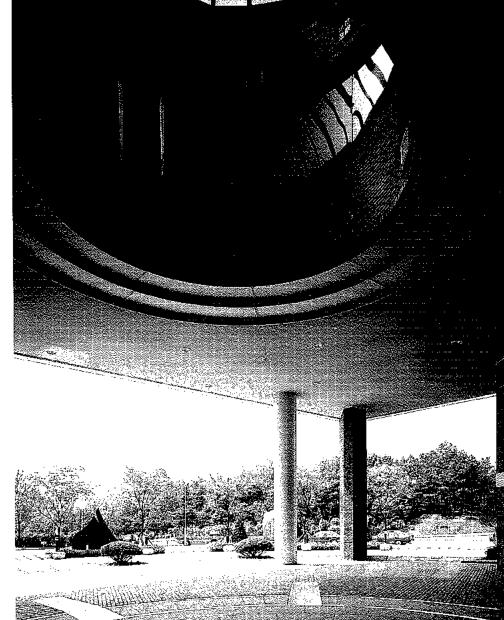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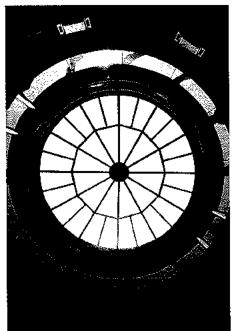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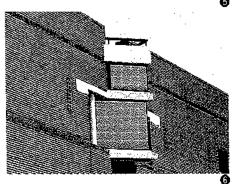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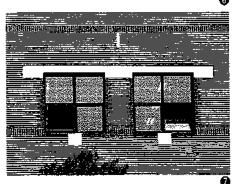
- 전면전경
- 전편성상 ② 배치도 ③ 출입구촉 상세 ④ 외벽상세 ⑤ 1충로비 전경 ⑥ 배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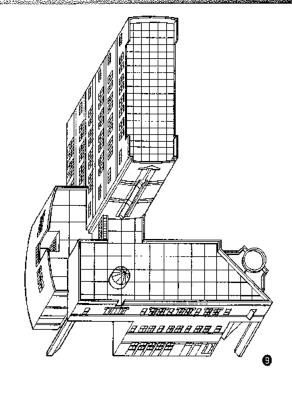
- ⑦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천창 상세
 ⑥ 외부창 상세 I
 ⑦ 외부창 상세 II
 ③ 주출입구측 천창
 ⑨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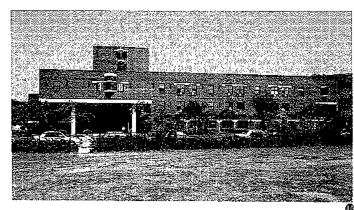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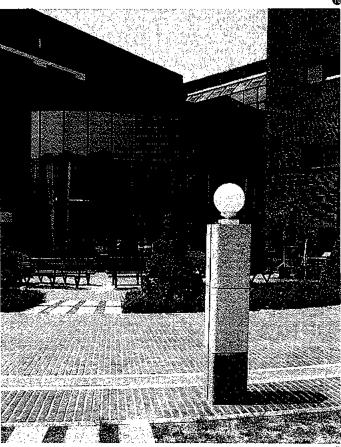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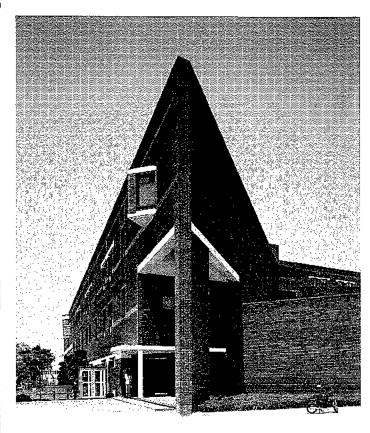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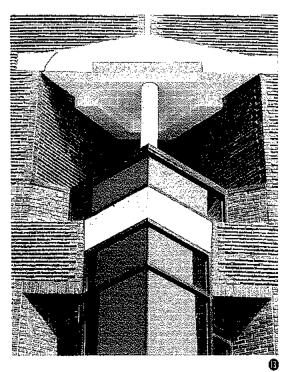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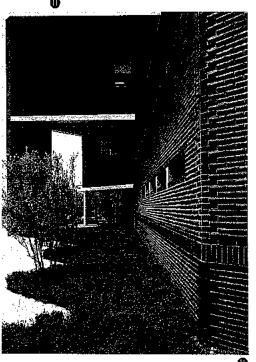


- ① 서촉 전경
 ① 선큰 가든
 ② 남동촉 전경
 ③ 외벽 상세 I
 ④ 외벽 상세 I









Ø

대구타워

Taegu Tower

/ORKS

權泰植 / 종합건축사사무소 합동건축 Designed by Kwon, Tae - Sik

대지위치 / 대구직할시 달서구 두류동

산 302 - 13번지외 213필지 중 30필지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두류공원)

대지면적 / 406,800.0m²중 132,422,0m²

건축면적 / 6,918.44m²

연면적 / 24,857.25m²

건폐율 / 1.7%

용적률 / 6.1%

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외부마감 / 벽 $/ 1.5 \mathrm{T}$ 스테인레스 세라믹판

탑신 /노출 콘크리트

주차대수 / 60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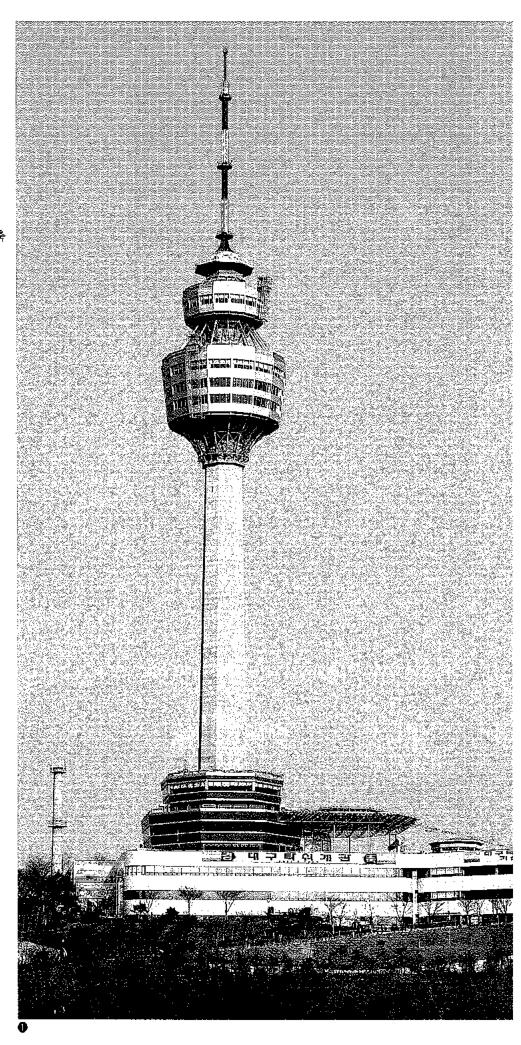
높이 / 202m(탑신 / 153m, 철탑 / 4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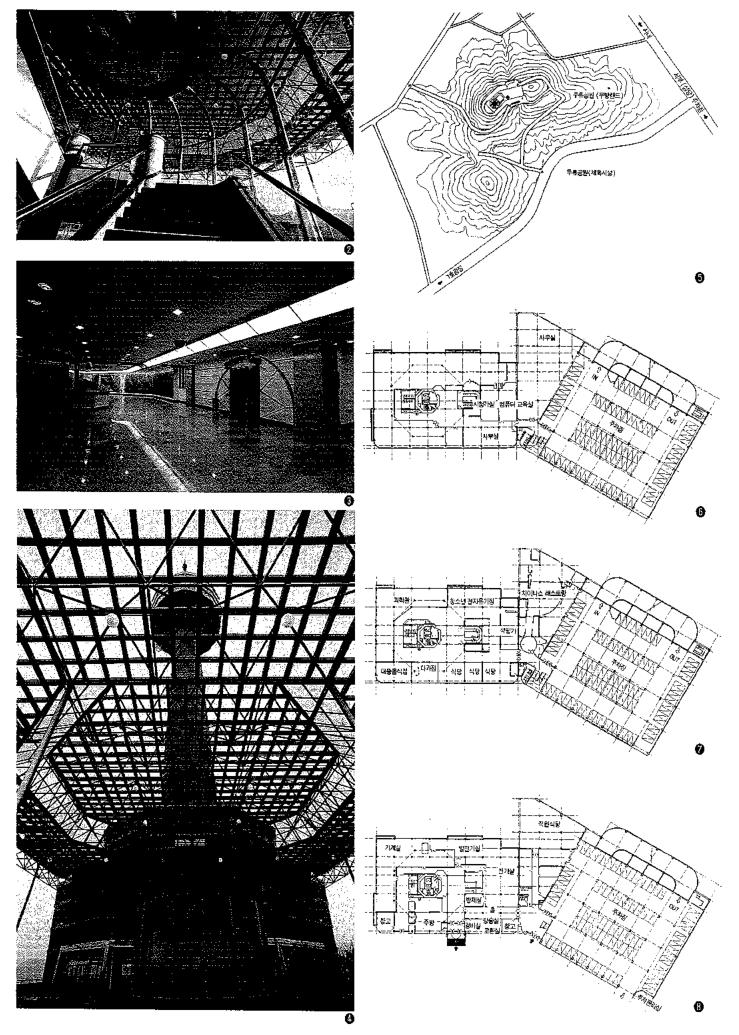
엘리베이터 / 20인승 2대(고속)

지난 82년 대구직할시 승격기념으로 계획되었 던 대구타위가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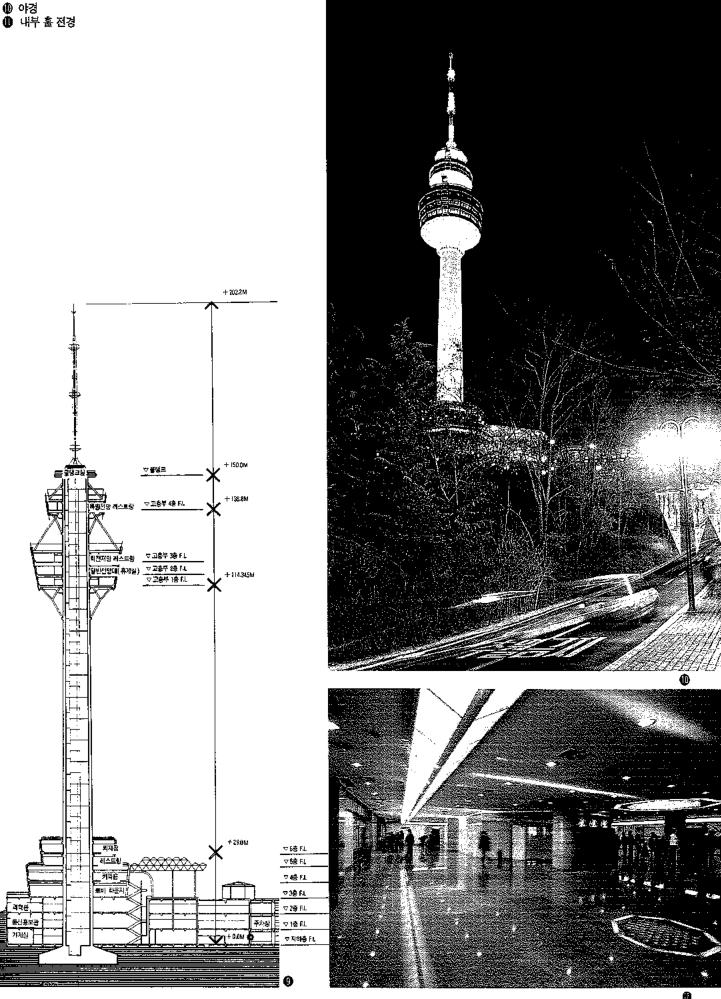
그동안 사업주의 변경으로 우여곡절 끝에 준 공된 대구타워는 앞으로 대구시의 랜드마크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기존의 서울타워(135.7 m), 부산타워(135.7 m)보다 더 높은 탑신(153 m)과 시민들을 위한 안락한 편의시설(공연장· 바학관·공원)동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변 대지를 종합공원화하여 9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우방랜드'라는 대단위 위략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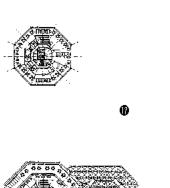
- 전경
- ② 계단 상세
- 6 1층 복도 전경
- ♠ 휴식공간에서 올려다 본 구조물
- 6 배치도
- ③ 2층 평면도
- 1층 평면도
- ③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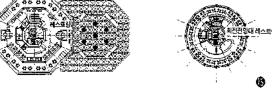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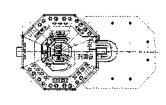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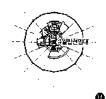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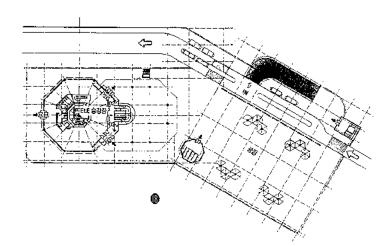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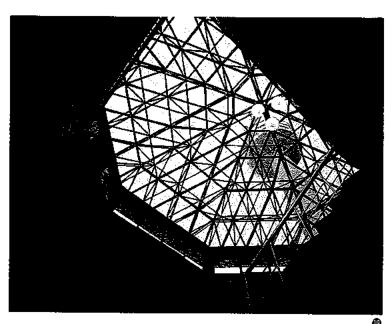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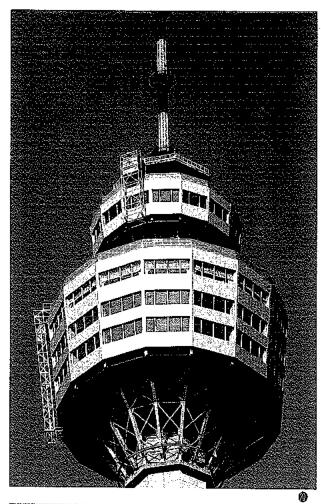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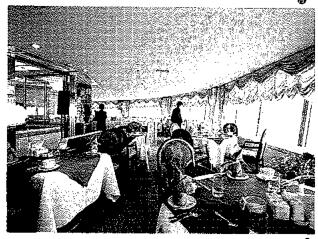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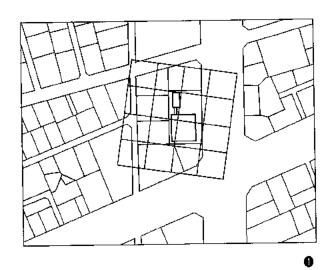


- 6층 평면도
 고층부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⑤ 상부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고층부 1.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구조물을 통해 바라본 타워상부
 타워 상부 상세
 전망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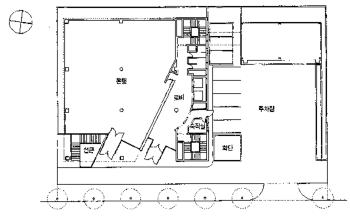
조인개발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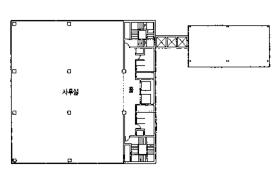
Join Development Co.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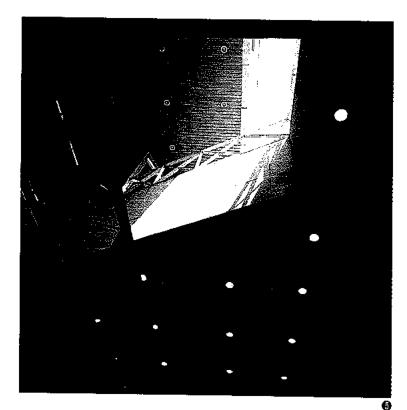
文政一 / (주) 우원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nged by Moon, Joung - III













대지위치 / 강남구 논현동 90 - 2번지

지역ㆍ지구 / 주거지역, 일부상업지역 2종미관,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1,487.8m²

건축면적 / 733.68m²

연면적 / 7,440,24m²

규모 / 지하 3층, 지상 8층

건폐율 / 49.312%

용적률 / 297.05%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벤조

주요외장 / 외벽 - Transpa Panel

창호 = 18mm 복충유리(ETS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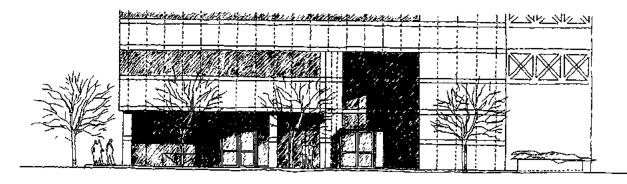
주차대수 / 76대

언주로 가로변에 위치한 동북측의 직사각형 대지에 세워진 부역컨 설팅회사 사옥으로서 배치는 도로의 흐름에 따라 축을 설정하고 형태 는 거의 정사각형으로 구성하였다. 주용도가 업무시설로써 코이는 자 연스럽게 북축에 배치되었고 내부의 기둥을 최소화하여 남동서축을 사무공간의 주 3면으로 처리하여 사무공간의 효율성에 간접적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주차의 부족분은 Tower Parking으로 처리하여 대지안에 두개의 Shape를 철재 Truss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는 단일매스로 인식시켜 사옥으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동시에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도시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가로의 형성요인에 기여함과 사옥으로서의 이미지에 적합한 큰 번화보다는 깨끗한 면들의 통일감 부여에 디자인 개념을 설정하고 Skin으로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된 Transpa Panel을 채택하여 유리면과 패널의 깨끗한 면만을 느낄수 있도록 모든 창호의 Bar를 내부로처리하여 먼거리에서도 전체적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❶ 배치도
- ❷ 전경
- ❸ 배치 및 (충 평면도
- ☑ 기준층 평면도
- ❸ 선큰
- ⑤ 로비 전경
- 🕜 스케치



유니온 빌딩

Union Building

朴英昊 / 종합건축사사무소 의전・건축문화・동인 Desinged by Park, Young - Ho

대지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1번시와 필지 지역 • 지구 / 준주거, 노선상업자역, 2종미관,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582.80m²

건축면적 / 346.34m²

연면적 / 3,554.61 m²

건폐율 / 59.43%

용적률 / 470.89%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 외장용 자기질 타일

● 정면 전경

층별 엑소노메트릭

에소노메트릭

🚱 발코니 상세

성 북동축 입면

이 건물은 두사람의 건축주가 하나의 대지를 공유하여 건물의 소유를 각기 달리하고, 그 기능마저 유사사에 분 리할 수 있도록 지어진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그래서, 전면 폭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전면 출입구 와 코어가 둘로 나뉘어 있는 점이나, 기계실, 변전실, 옥 탑, 변소, 소방시설 등 거의 모든 부분이 같은 형상으로 나뉘어져있는 기이한 점이 이해 되리라 생각된다.

건물을 공유하는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완전 히 같은 조건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에는 좁은 대지 여건상 어려 운 점이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건축주의 요구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건축비가 다소 증가되거나, 설계상의 어려움 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나로서 감당하지 못할바 없고, 그 것이 진실임을 감안할때,무리한 기능을 탓할라도 없을 것 같다.

건축계획에서 준공까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세월은 상 반된 기능을 충족시켜서, 두사람을 만족시키는데 소비했 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느 한편이 좋아하는 점이, 다른 한편에 그대로 적용 되지 않더라 하는 점을 실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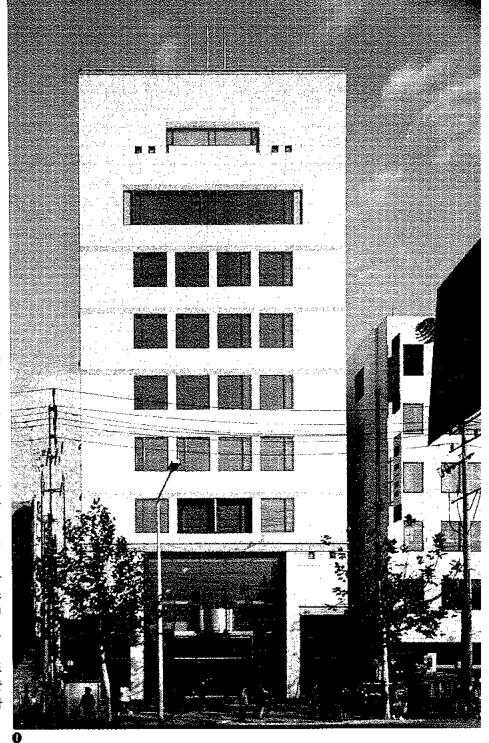
입면은 좌우대칭 이라는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살려야. 했으나 창호의 짝수 분할이 망설여져 전면 저층부는 커튼 월을 도입하여 좌우 분산감을 제어해 보았다.

또한 주위, 건물군에 비하여 층수가 높았던 관계로 상 층부는 좀 덤덤하게 처리하여 먼 시선의 산만함을 억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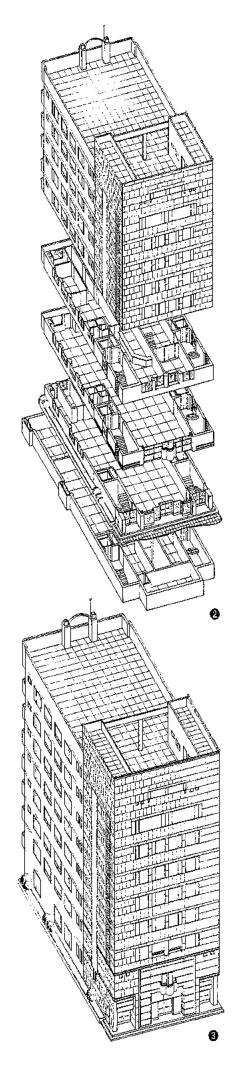
멀리서 위엄이 있고, 가까이에서는 친근감을 느끼며, 그 기능에 엄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공자는 군자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이 건물에 옮기어, 무표정한 건물에 인간 적인 정서와 동양적인 견해를 도입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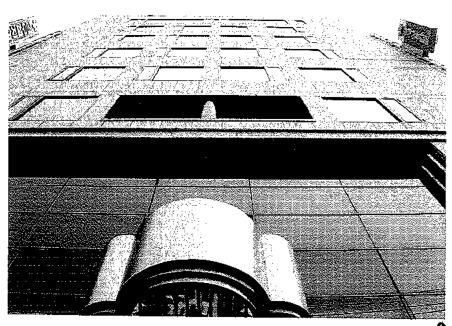
그리하여, 상층 옥상부는 창 뚫림이나, 수평띠의 가로 지름을 자제하였다. 또한 돌의 색상과 질감이 주는 수더 분한 맛을 보완하기 위해 초록색 알미늄과 유리를 사용하 있고, 저층부는 빨간색 알비늄 패널과 반짝이는 스텐레스 판을 사용하여 아기자기한 친근감을 연출해 보았다. 다행 이도, 3, 4층의 병원 내부 설계에서는 내부기능이 달랐던 관계로 좌우대칭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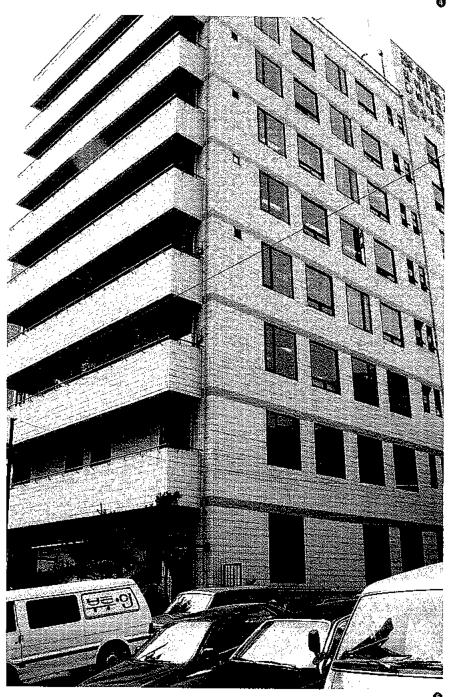
이 건물의 이름이 그러하듯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또 둘이면서도 하나다. 이러한 건물이 그 기능을 어떻게 살 려서 활용되어 나갈 것인지 나는 두고 두고 주의해 볼 작 정이다.



38 건축사 9206







광주 S 빌딩

Kwangju S Building

韓瑱洙 / 건축시시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 - 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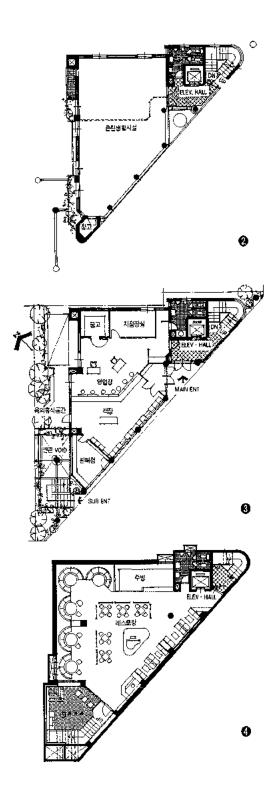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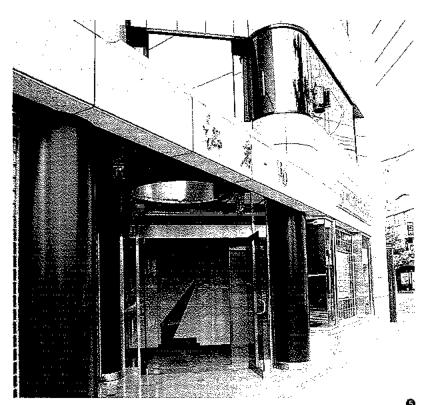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작할시 동구 장동 대지면적 / 287.49m² 건축면적 / 168.13m² 연면적 / 978.84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덴조 외장 / 화강석 도심에서 멀리서도 시야에 들어오는 로타리의 건물 가로에 접하는 삼각형의 대지, 이는 관심을 갖기에 축했다. 5거리의 특성상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시각적 조형성이 고려되며, 수평의 창, 모서리의 곡면 대지에 의한 축을 결정 기능상의 원활과 형태적 변화 등을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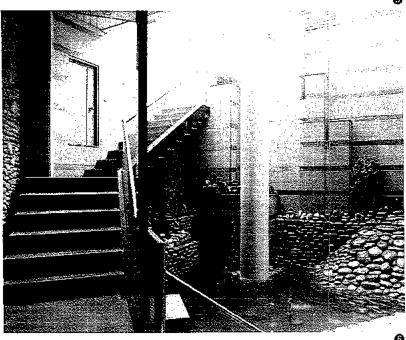
건축이라는 폐쇄성을 어느정도 극복하며 가로에 순응한다. 작지만 엘리베이터도 두고 모서 리에 코아를 배치, 기능적인 효율을 높여주며, 발코니를 두어 냉난방 실외기 설비와 화단을 고려하고 서향 일조의 차양 역할을 한다.

지하실을 선콘시켜 계단의 원활한 동선과 환경적 의미를 부여하며 엘리베이터 홀의 스페이스를 분절시켜 형태에 변화를 주고 옥상 부분에 구멍을 뚫어 자연환경에 의한 외관의 변화와 건물과 하늘의 시각적인면을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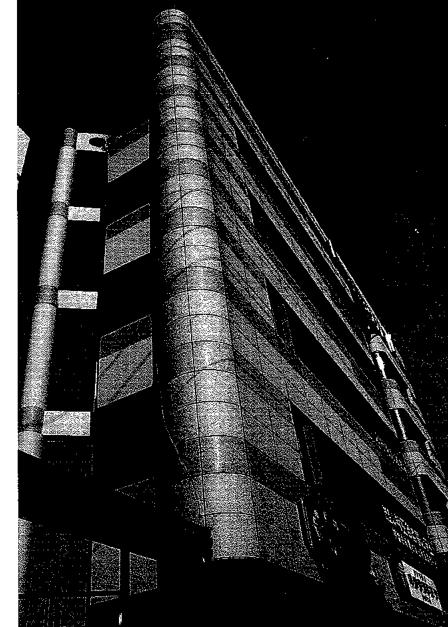
- ◐ 전경
- 지하층 평면도
- ❷ 2~5층 평면도
- ⑤ 현관 상세
- 🛭 1층 평면도
- ③ 지하 선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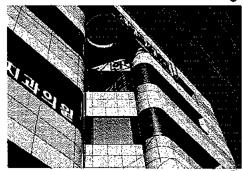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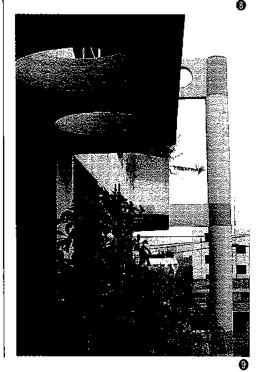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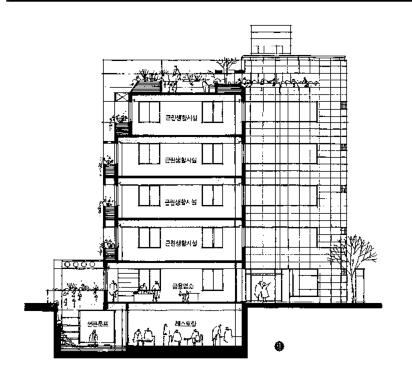
- ② 올려다 본 외벽상세
 ③ 외부상세 I
 ④ 화단 상세
 ⑩ 외부상세 II
 단면도











우리의 희망사항

Our's Wishful Thinking

趙顯若/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조 by Cho, Hyun - Koon

지방으로 출장가는 기차속이나 고속버스안에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늘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자어지는 농촌의 개량주택들이 우리 자연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건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색 일변도의 지붕색깔이나 옥탑모양 등이 최소한의 미적수준도 지니지 못한 채 바구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건축사의 설계를 통하여 지어지는게 분명할 진데, 건축잡지에 게재되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최소한의 디자인도 되어지지 않은 채, 마구 자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사들의 책임이 크다하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문제는 '세계적인 건축가나 작품이 없다'라는 문제보다는 탄탄하고 건설한 건물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보통의 건축가들의 층이 아직은 두렵지 못하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등지를 여행하면서 감탄하는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건축가들이 설계한 보통의 건축물이 거의 고르게 어느 정도의 건축적 수준을 유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도시가 보다 이름다워 보이고, 많은 추억거리도 생겨나고,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건축물에 대한 국민적인 자긍심도 생겨나리라 본다. 물론, 우리나라도 60~70년대 보다는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우리 건축계가 아직은 발전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대가(大家)는 아니고 보통의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 건축가들의 분발이 요망되는 것이다. 더구나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못하는 우리의 건축작품들이 문화부 기자들의 취재대상으로 더 많이 등장하기 위해서도 보통의 중간층 건축가들의 층이 더 두터워야 하겠고, 우리의 대사회 발언도 많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토대와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건축가도 탄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은 2년전에 일본에 있는 교포 건축가와 같이 설계를 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부러울 정도로 설계기간도 결고 현장에서의 감리도 철저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처음 계획도면을 가져올때는 5~6장 정도였는데 그것을 계속발전시키고 주무르고 해서 결국 하나의 물건(작품)이 되더라는 점이다. 물론 이 건물은 교포 건축가의 자기 아뜨리에나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의뢰되는 설계에 대해서도 그정도의 설계기간이 주어지고 철저한 현장감리가 이루어진다니 부러울 따름이다. 설계과정에서 아무리 애를 써서 디테일을 연구하고 도면화시켜주어도 제대로 서공에 옮기지 못하는 시공자의 수준을 보고 분통이 터진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 반면에 외국의 건축잡지들을 보면서 작품의 디테일이 시공된 것을 보고 과연

설계자가 감리현장에서 어느정도 개입하길래 이런 디테일까지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도 좀더 설계자의 철저한 강리하에서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기를 희망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있게 이 건물은 나의 설계와 철저한 감리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건축이란 것은 건축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한 도내의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기가 하는 범위, 자기가 느끼는 범위내에서 자기의 도구를 차근차근 만들어야 한다"는 선배 건축가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자신도 얻고, 희망을 가쳐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포스트모던이니, 해체주의니 하는 세계건축사의 호름을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호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되,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결국 우리 주변의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전통건축의 제승문제가 거론되면 상당히 거부 반응들을 보여면서 그런 이유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거론 되다가 결국 호지부지 되고 말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집대성하고 체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통건축에서 디자인의 모디브를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지붕, 처마, 기둥 등의 외부 형태에서도 차용할 수 있을 테고 내외부 공간의 요소들에서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므로, 좀더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실험과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매도하는 수준의 비평이 아니고 순수하게 건축원리에 입각해서 활발한 건축평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희망사항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우리 건축가들이 스스로 홀로서기에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주변에서도 호용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나스스로에게도 다짐해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건축풍도에 대한 책임을 결국 우리 건축가들이 일차적으로 져야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주변환경에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 결국 건축이한 것은 건축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한도내의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자기가 하는 범위, 자기가느끼는 범위내에서 자기의 도구를 차근차근 만들어야 한다"는 선배 건축가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자신도 얻고, 희당을 가져보는 것이다.

건축설계 저작권 재고(再考)

Reconsideration of the Architectual Design Copyright

尹泰燮 /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Yoon, Choon - Sup

무한한 창작의 범주는 건축을 기술적 측면과 함께 예술로 인정받게 하는 근본이유이며, 특히 건축설계작품의 독창성은 궁극적으로 건축가의 권리와 재산으로 간주되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국가에서 적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법협약에는 멀리 1886년 조인된 Berne Convention과 1952년 UNESCO에 의해 주도된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에 있으며 한국은 1987년 UCC에 가입하였다. 국내의 저작권범은 1957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그후 1987년에 1차 개정된바 있다.

국내 저작권법의 건축관련부분을 살펴보면 "건축서작물이란 건축물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며, 복제란 하나의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를 사용하여 다시 이를 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인 건축가의 승인없는 불법복제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설계작품의 원상태를 유지하는 권리, 즉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을 가진다. 그러나 일단 건축된 건물의 중축, 개축, 수선과 같은 변형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저작권은 설계도서의 불법복사나 게재에도 법적효력을 가지나, 설계도서가 아닌 건물자체나 진시모형은 누구나 허락없이 촬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서적, TV방송 등에 게재, 방영 할 수 있다. 다만 신문이나 건축잡지, 작품집 같은 출판물에 실린 건물사진의 복사나 제촬영은 조금 복잡하다. 가령, 잡지에 실린 건물사진의 복사나 재촬영은 건축가가 아니라 사진촬영자의 중인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진도 이차적(二次的)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더욱이 잡지에 실린 도면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기사의 저자 및 도면의 원저작권자인 건축가의 중인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가의 설계계약서식에는 건축사의

저작권소유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취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사의 독창적 작업의 도용(높用)이나 불법재사용을 막고자 함이다. 국내의 설계계약서식에도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귀속(歸屬)되며 건축주는 본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모방(模倣)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저작권의 귀속관계가 명시되어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와 같은 설계계약서식상의 저작권 귀속과 모방건축급지조항에 대하여 재고해 보기로 한다.

민저, 저작권의 건축가 소유, 여기에는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도 특히권과 마찬가지로 제삼자에게 양도되거나 위탁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축가와 건축주 양자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되고,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원건축가가 다른 건축가에게 금전거래에 의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양도나 위탁은 공동저작자 전원합의에 의한다. 즉 공동설계작품일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 지분율 공유하게 되고, 만약 그 기여도가 구분될 수 없을 때는 균등한 지분을 공유하게 되나, 이 모든 경우 공유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저작권의 양도나 위탁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용관계에서의 설계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니라 고용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관계는 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계약관계이므로 이점과 무관하다.

또 하나, 현재의 저작권 귀속에 함축된 의미는 건축가 자신이 과거 한 건축주를 위해 납품했던 설계도면의 일부 또는 경우에 다라 전부를 다른 건축주를 위해 무제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품을 일반소비재와 같이 상품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혹자는 그러한 복제설계를 할 건축가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겠지만 후에 소개될 몇가지 사례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00AESSANGER BEGINNE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집에 따라 예전에는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각종 이권관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참예화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권같은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시비의 급증이 그대표적 예라 하겠다. 건축설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왕왕 작품에 대한 표절시비가 생겨나곤 한다. 더욱이 정보매체의 발달과 정보유통의 초현대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손쉽고 빠르게 국내는물론 해외의 설계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어 표절시비는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 이울러, 피할 수 없는 시장개방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를 감안할 때 건축설계저작권에 관련된, 그리고 장차 관련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에 와 있는 것같다.

둘째, 모방건축의 금지, 여기서는 모방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도작(盜作)이 아닌 이상 작품의 모방은 저작권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법에서는 그 보호영역을 추상적인 것 보다는 실체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남의 아이디어나 개념의 사용(도용?)까지 저작권침해로 확대해석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내짓과 비슷하다."는 정도로는 저작권시비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에 따라 그 해석은 융통성을 갖겠지만 일단 한 설계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도용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완벽한 도용, 즉 도작은 병백한 저작권침해이나 실제로 도용의 정도를 자로 재돗 명확히 측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실제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연의 일치로 동일시점에 두개의 같은 작품이 나왔다면 이 경우 두사람 모두 저작권을 보호받게 된다.

그러면 저작권소유와 모방건축에 관재된 극적인 사례 몇가지를 영국의 건축지 Architects' Journal ('85, 6, 5)에서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첫번째 사례, 법적소송으로 까지는 비화되지 못하였으나 매우 애매한 경우로서 뉴욕 Long Island의 주말주택설계에 관계된 일화이다. 1981년 당시 Progressive Architecture로부터 시상될 만큼 우수한 주택설계안이었으나 불행히도 건축주가 건축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New York Times지에 설계도를 설계원가인 2만5천불에 판다고 광고를 한 사례이다. 물론 보편적인 계약시 설계안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귀속되나 이 경우 계약 당시 전축주측 변호사의 권유로 설계완료시 그 설계는 건축주의 제산으로 한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기재함으로서 결국 건축사는 법적원리주장을 못하게 되었다.

둘째, Florida를 거점으로 활약하는

Arquitectonica설계사무소가 겪은 사례, 1978년에 5만불을 받고 고층 콘도미니엄(우리의 경우 아파트)을 설계했으나 건축주가 건축을 포기하고 건축부지를 캐나다계 한 회사에 매도하였다. 그후 그 회사는 공교롭게도 같은 설계사무소인 Arquitectonica에 의뢰하여 동일부지에 Atlantis란 건물을 건립하였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전건축주에게 납품한 그 설계안과 매우 흡사한데서 일어났다. 이에 전건축주는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설계비 반환 및 자신이 매수한 예술작품에 대한 불법재대도에 따른 손해보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셋째, 1984년 뉴욕에서 일어난 저작권관련 소송사례, 1983년에 준공된 뉴욕 3번가 Trump Plaza의 이웃 대지소유자는 Trump Plaza를 설계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우연이건 의도적이건 매우 흡사한 설계안이 작성되었다. 이에 Trump Plaza의 소유인은 자신건물의 독창성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건축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판사는 법적심판보다는 건축주와 건축사에게 신축건물외관의 유사성을 많이 줄이도록 중재한 바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집에 따라 예전에는 전혀 생각치도 못했던 각종 이권관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이나 특허권같은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시비의 급증이 그 대표적 예라 하겠다. 진축설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왕왕 작품에 대한 표절시비가 생겨나곤 한다. 더욱이 정보매체의 발달과 정보유통의 초현대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손쉽고 빠르게 국내는 물론 해외의 설계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어 표절시비는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 이울러, 피할 수 없는 시장개방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를 감안할 때 진축설계저작권에 관련된, 그리고 장차 관련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에 와 있는 것같다.



독일의 도시설계

Deutschland Urban Planning

Prof. Dr. Ing Michael Trieb (슈트트가르트 대학교수, 공학박사) 조인숙 정리

ISSUE

주제 :

1. 도시설계의 이론적인 것들 (Theorie der Stadtgestaltung)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도시 : 환경과 도시

2. 실례를 통해서 보는 도시설계 (Stadtbildplanung in der Praxis : Beispiel "Stralsund", "Potsdam") 포츠담과 슈트랄준트를 중심으로

3. 종합토**론**회

사회:

김지덕 /유신건축 대표, 국제위원회 위원장

좌 장 :

강병기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자 :

안건혁 /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회상 / 서울시 도시경관과 과장

김우성 / (주)아키프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일시: 1992. 3. 30. - 31. 장소: 대한건축사협회강당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주관: 국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설계분과위원회

후원 : 주한독일문화원

연사: Prof. Dr. Ing. Michael Trieb (슈트트가르트 대학 교수, 공학박사)

통역: 김기호 Kim, Ki-ho

(서울 사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정리: 조인숙 Cho, In - Souk (다리건축, 국제위원회 위원)

얼마전 부터인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건축가들의 초청강연회가 여러빈 있었고, 필자도 몇 번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굶주린 자식욕을 채우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유명 건축가요 훌륭한 건축을 많이 남겼지만 과연 우리 현실에, 우리 실정에 맞는 무엇을 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물론 그들의 건축관을 듣고 또는 건축가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는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건축물들을 볼 때 늘 아쉬웠던 점은 눈에 띄는 건축물은 많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가꾸는 데에 가여도가 높은 건축물들은 드물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 잡지, 즉 그들의 시각을 통해 무분별하게 소개되는 세계 건축기들 및 그들의 작품에 따라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건물은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점점 국적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중심의 상실로 일관된 국제적인 건축은 우리 도시의 많은 부분을 망가뜨렸다고 나름대로 생각해왔다.

그동안 필자는 돌아다니면서 얻는 짧은 경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재법 자료를 갖게 되었다. 마침 92년 3월 일본의 요코하마시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Urban Design Forum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작년(91년) 가을에 돌게 되었다.

많은 훌륭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이 초청이 된다는데 그중에 슈트트가르트 대학의 '미카 엘 트립' 교수께서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중 한 분으로 오실 계획이라고 듣게 되었다. 독일에서 공부했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동문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이는 분으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지만 그 분이 하시는 사무소의 프로젝트 내용이 상당히 흥미가 있었던 중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잠깐 그 사무소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건축가로서 미처 생각지 못 해왔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속으로 조금 부끄러웠다. 그 사무소에서 다루는 일중에 흥미 있었던 것은 특히 도시와 건축과의 관계였는데 늘 생각은 하고 있었으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부분중의 하나였다. 도시속에서 인간과 자연을 위해 어떻게 건축을 하는게 좋은지를 제시하는 작업이었는데 우리들처럼 하나의 건축물에만 너무 골뜰한 사람들에게 그런 관점이 소개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마침 동경까지 오신다니 한 번 초청(?) 내지는 방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중 본 협회와 주한독일 문화원의 협력으로 강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트립교수께서 무슨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방문하셨거나 이곳의 프로젝트가 있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간곡한 청 에 의해 바쁜 시간을 내 주셨던 것이다.

트립 교수께서는 대학 강단에서 뿐 아니라 실무를 통해 독일 전역에서 도사설계 분야에서는 상당히 정평있는 분으로, 잠깐 만남이었지만 자연을 대하는 안목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었어도, 그 강의가 실제 우리가 일종의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도시설계'이나 '도시설계'라는 용어 자체에 상당히 치료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 1.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단절되다시피 했던 학계와 실무진과의 거리를 좁혔으면 했고,
- 2. 통일 목일후 과거의 동독지역을 어떻게 도시설계하는가를 설례를 통해 봄으로써 머지않아 막칠 우려 장래에 조급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랬고,

3. 무엇보다도 건축가 자신들이 단 한번 혼자서만 존재할 그런 건물들만 설계할 것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와 전통 그리고 기존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설계하므로 우리가 사는 도시를 좀더 잘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그러므로 오래 가는 건축물들을 설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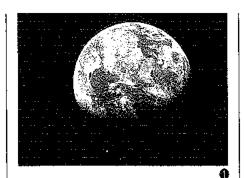
그런데 참으로 안타가운 것은 건축사 개개인이 본인들이 속해 있는 건축사협회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무조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로만 위상·위상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지는 작업을 통해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 소개하는 글은 강연회때 미리 나누어준 원고가 있었지만, 참석하지 못한 모든 회원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생생한 강연내용을 다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슬라이드는다 소개하자면 200여 필름이 되기 때문에 트립교수께서 임외로 골라서 다시 보내주신 것만을 강연내용에 맞는 부분에다가 끼워넣었고, 필름의 설명은 강연 내용을 토대로 트립교수께서 다시 써서 보내주신 것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을 위해 초고를 다시 한번 읽어주신 Stadtbauatelier와 김기호교수님, 강병기교수님 그리고 토론회 참석자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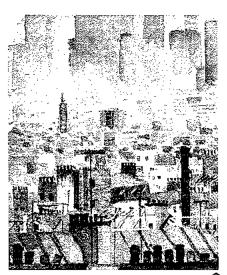
(1992년 5월 조 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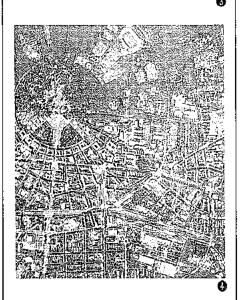
1. 도시설계의 이론적인 것들

대한건축사협회장님 그리고 자리해주신 여 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독일에서 외 저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독일에서 했 던 경험들이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역시 중요 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될지 걱정이 됩니 다.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공동의 관심사 내 지는 문제거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는 이자리에서 점점 커가고 있는 생태적인 문 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에게 권하 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공동의 또는 비슷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적으 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의 공통의 집 (Gemeisamen Haus)에 살고 있다고 말씀 -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도시계획에 있 여서의 생태적인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 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토양 의 오염과도 싸워야 합니다. 특히 공업지역에 서의 토양의 오염은 심각합니다. 어떤곳에서 는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이나 하수도 처리등도 문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독일에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런문제들에 대 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방법이나 기술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야 마 여러분들도 역사 스스로 그러한 문제에 대 해 현재 여러분 나라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리라 생각합 니다. 사실 우리들도 약 20억년 쯤 전에야 비 로소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 다. 우리들의 도시에 있어서 삶의 질 (Lebensqualität)이라는 것이 생태기술적 인 측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대 적이거나 생태기술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 은 우리들의 존재나 삶에 단지 물질적인 측면 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도 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것 이상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도시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발전이라고나할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 즉 도시란 우리의 모 든 분위기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 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관 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 지어진 환경들도 역사 그러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자적이며 예술적인 산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라 고 하는 장소는 우리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 지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 곳에서 우리들은 자극을 받습니다. 아이디어를 전개시키고 발 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우리 는 창조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즉 어린이로부터 커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될 때까지 그 곳으로부터 창조력을 얻는 것입니 다. 이러한 측면을 도시의 생태정신적인 (ökomental), 생태지적인 (ökointellektu ell)측면이라고 부르려 합니다. 유럽에서 어 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이러한 생태적이거나 생태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하다보니까 앞서말 한 생태정신적인, 생태지적인 촉면을 잃어버 리지나 않을까하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 다. 슬라이드를 통해 도시가 정신적이고 비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 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①) 제가 지금부터 지난 약 20여년 동안 독일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 왔던 실무를 바탕으로 익힌 여러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절대자가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지구를 자연으로 경험하는데 이 자연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이고 정신적이며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즉 자연은 우리들에게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 음식이라든지 등등의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들이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시받고, 재생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자연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고하는 것은 대우주(Kosmos)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우리들의 도시들도 있습니다. 도시들은 아마 하나의 소우주(Mikrokosmos)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는 그러나 절대자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생태적으로 좋은 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도시는 지구나 혹은 자연의 유기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②)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우리 지구 상의 몇 개의 소수의 도시에 해당될 것입니 다. 그래서 지구에는 많은 도시들이 공통적인 주제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극심한 주택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개발국가나 선진국가에서도 그 형태는 다룰지라도 거의 유사한 것에 바탕을 둔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심한 대기오임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약 5-6개월 전의 독일의 어떤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시는 <u>아이덴티티</u> (Identität)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문제를 대규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사진은 서울이 아닌 베를린의 한 큰 주거단지의 모습입니다.

(사진 ③) 그러면 도대체 한 도시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하는 질문에 부 딪히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이 단지 생태기술적인 측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도시에 사 는 사람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요구들로 만 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도 사가 총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좋 은 삶의 질을 제공하려 할 것 같으면 도시계 획가나 건축가로서 우리들이 오랫동안 무엇 인가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하나 의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란 마치 하나의 건물 을 설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 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도시 건축이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십 수 년 간의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및 경험에 의해서 우리 들은 도시건축의 요소됼(die Bausteine der Stadtarchitektur)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중요한 요소는 자연적인 조건(die Natürliche Situation)'입니다.

이 자연적인 조건, 예를 들어 지형이라는 지 등등은 식물 생태들을 포함하고, 또한 일 조, 기후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은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도시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 고 자연은 한 도시의 Identity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마치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이나 외사산같 은 것들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게되는 것입 니다. (이 내용은 지난 토요일-92년3월28일 통역자가 교수님을 모시고 서울을 둘러보았 을 때의 설명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의 도시설계 교재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러한 자연조 건내자 자연적인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굳 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의 도시설계나 계획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즉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 등등이 도시계획이나 건물을 세우는데 있어서 얼마나 쉽게 소홀하게취급되는지를...

두번째 중요한 도시건축요소는 <u>도시평면</u> (Stadtgrundriss) 입니다.

우리가 도시라는 표현을 할 때에 이 도시 라는 것은 작은 마을부터 큰 도시까지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사진 ④) 이러한 도시들은 모두 도시평면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평면들 은 각각의 도시마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 다. 그리고 이런 도시평면이 바로 도시에 아 이덴티터(Identität)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적인 도시들에서 기존의 도시평면을 무시하고 새로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도시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터는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에서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시내를 다니실 때 보신 기존 구시가지의 골목패턴에 새로운 격자패턴(Grid Pattern)이 도입되므로 생긴 칼집 부분등동을 애기한 것임

도시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주어진 자연 적인 조건 뿐 반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도시평 면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이 평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뉴욕, 메니 스나 플로렌스등의 도시에서 그 도시의 아이 덴티티의 상당한 부분은 바로 이 도시평면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도시건축의 요소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또는 볼륨계획 (die Stadtsilhouette, Höhenentwicklung der stadt)입니다.

이 세번째 요소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은 마치 도시의 얼굴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실루엩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에 의해서 생기는 우연한 산물입니다.

요즘 세상과 같이 자본주의적인 사회의 도시에 있어서 이러한 도시의 얼굴, 실루엩이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미국의 건축가 내지는 도시계획가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미 15년 내지 20년 전에 깨닫기 시작하

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계획가들은 이 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도시 의 실루앹을 형성하려는 계획들을 마련하였 습니다. 처음 그림처럼 마치 어떤 예술적인 작품처럼 시작된 도시 sketch는 중간 그림 처럼 공간적인, 3차원적인 현실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처럼 높이 등등을 포 함하는 구역계획(der Zonnungsplan)으로 귀결을 맺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Detroit)시 경우의 예인데

이리한 도시 실루엩을 규제하자는 가장 최 근의 시도는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점점더 많이 배워야만 합니다.

중요한 네번째 도시건축요소로서 <u>공공의</u> <u>공간(der öffentlicher Raum)을 들고자</u>합니다.

즉 건물 사이에 있는 길이나 광장같은 공 공의 공간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되 는 것으로써 마치 도시 사람들의 거실이라고 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러한 공공의 공간들이 점점 더 시민들에게 의미를 갖게 되며 시민들은 공간의 디자인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을 내놓게 됩니다.

이 스케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서 의 이러한 공공의 공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 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의 공간들의 조합은 마치 집안에 있어서 방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 처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거실 내지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점점 더 나아가서 마치 방의 벽이 특정한 모양을 가져야 되듯이 이러 한 도시의 벽들도 디자인 되고 모양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수 백 가지의 형태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사 도시의 공공공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가들이 세우는 어떠한 건물의 파사드(Fassade) 라는 것이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가지의 의미는 우리 건축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3차원적으로 서고 3차원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주의 생각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가들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보이고자 하는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사드의 한가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가로서 오랫동안 잊어 버렸던 것은 바로 이 파사드가 우리들이 공동 으로 사용하는 공공공간을 둘러싸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사드라는 것이 도시 전체의 공공공간을 한정하고 둘러싸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시건축의 요소로써 도시 공공공간의 길 가구들 즉 가로조형물(die Möblier ung der Offentlichen Räume)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것은 물론 여기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보시는 바와마찬가지로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항아리같은 나무병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피카소(Picasso)가 이런 항아리 굽는 것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공공간에 있는 모든 섬세한 요소들이 마치 방안의 가구들처럼 모두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디자인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건축법 에 의해 꼭 있어야만 하는 난간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듯이 형태는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판타지에 는 어떤 제한이나 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과 조형물들을 항상 고려하고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도시를 전체로서 생각 하고 설계할 때 그러한 것들을 거기서 살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사살입니다.

우리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실무를 통하여 도시건축의 요소가 무엇인지 배우려 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약 30 여 가지의 다양한 도시 건축의 요소들을 발견 하였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 어서 아시아에서 온 동료가 상당히 중요한 역 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섯, 여섯개의 가장 중요 한 도시건축의 요소들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른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도시건축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만으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어린이가 집짓기 벽돌을 책상위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무언가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사진 ⑤) 우리들은 우리의 실무에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부딪쳤습니다. 예를 들어 점점 더 혼란해지고 있는 도시들을 볼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경제가 발전하기도 하고 개인들이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동경(Tokyo)이 아니라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용파울로입니다.

(사진 ⑥) 또한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정리 하려고 할 때에 자칫하면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론토(Toronto)와 같은 단조 로움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도시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는 한 쪽은 아주 잘 정리가 되고 한 쪽은 아 주 혼란스러운 그러한 접경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진 ⑦) 이렇게 당황스러움에 처했을 때우리는 다시 자연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속에서 어떻게 개발성과 전체 통일감이 서로 잘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자연속에서 장미라는 것은 항상 같은 장미이다 (Die Rose ist immer die gleiche Rose)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 때에 각각의 장미들은 모두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 혹은 공동의 것이 섞여서 어떠한 통합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⑧) 우리들은 거의 모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혼란과 질서가 통합하여 하나의 새로 운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밖의 개나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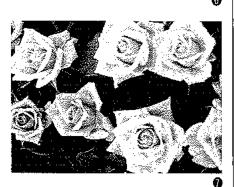
또한 우리들은 예술가들이 바로 도시의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린이들을 위한 독일 동화(Märchen) 책에서 발췌한 예술가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장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형태, 유형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건물에 있어서 창문이나 기타 부분들은 각각 다양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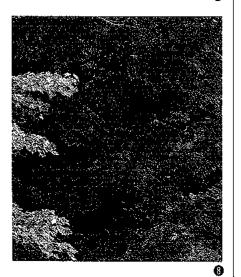
그리고 우리들은 오래된 도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도시에 있어서도 역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주는 도시들은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르셀로나시의 모습입니다. 이 바르셀로나 (Barcelona) 시의 격자형(Grid Pattern) 의 정형적인 평면은 세르다(Cerdar)에 의해 계획된 것인데 이러한 정형적인 도시평면 속 에서 각 블록마다를 볼 첫 같으면 개계의 필 지바다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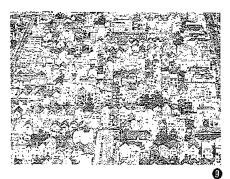
이러한 각각의 블록(Block)속에서 건축 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들은 파사드 (Fassade)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이상된 파사드에서 부터 현대적인 파 사드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건축 가들 개개인의 판타지(Phantasie)나 창의 성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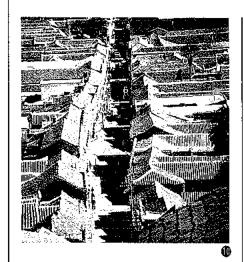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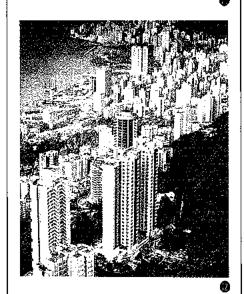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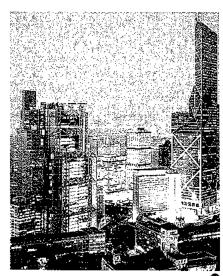












다. 즉 이렇게 건축가들의 창의성을 해친다기 보다는 건축할 수 있는 테두리를 제공하고, 이러한 테두리로 인해서 공통적인 요소를 갖 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③)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 을 센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100 년 ~ 150년 정도 오래된 건물들에서부터 오 늘날의 건물들 까지의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 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솔로본 (Solomon)이나 찰스 무어 (Charles Moo re)의 건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오래된 도시들의 모습들이 바로 자유와 구속의 콤비네이션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남부 독일의 도시들에서나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남부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발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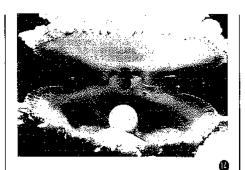
우리는 그래서 오래된 도시로부터 오늘날 의 고충건물에 이르기까지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그러한 이야기 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라 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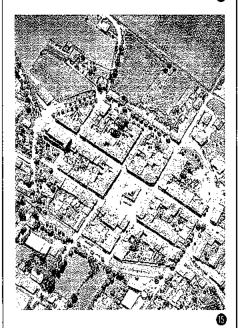
(사진 🕦, 🕦)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아시 아적인 상황속에서 위와 같은 것을 시도해 보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믿기에 는 아시아에서도 역시 같은 원칙에 의해서 도 시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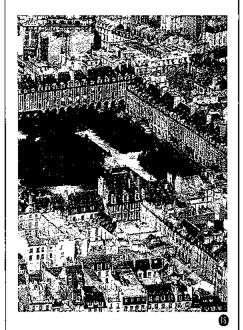
(사진 ②) 이러한 원칙은 오래된 옛날 도시 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현 대적인 도시에도 역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 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도시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칙들을 잘 모르 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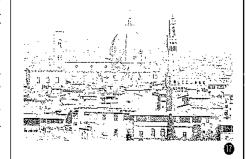
여기 슈트트가르트(Stuttgart)에서 보시 는 바와 마찬가지로 옛날의 경우에서 배운 것 을 어린이들의 집짓기 놀이처럼 만들었습니 다. 우리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친지들이 나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 여주기 위해 이런 집짓기 놀이를 시도해 보았 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은 혼란된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 는 그림처럼 질서 있게 배열해 보았습니다. 바로 도시 건축가의 역할이란 이러한 혼란스 러운 것과 질서가 정연한 것 사이에서 어떠한 새로운 상태의통합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 다. 즉 여기에는 하나의 해결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천 수 백개의 다양한 해결책이 있 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바 로 이러한 도시 건축을 만드는 것이 양극적인 힘을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상태의 것을 만드 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⑬)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또 다른









문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개인적인 개별적인 자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들은 건축가로서, 건축주로서 점점 더 개별적인, 개인적인 건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건물들이 혼자서는 좋을런지도 모르지만 서로가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진 (4)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에는 하나의 특별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혹은 보통의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특별한 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연 경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후지산이 아니라 남미 칠레에 있는 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이렇게 꽃밭에서도 발견할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할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살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여성들은 특별한 귀걸이 같은 것을 통해 전체 적인 분위기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어떤가요. 넥타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의 무외식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넥타이핀을 하나 더 꽂는다면 그러한 역할 내지는 원칙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여기 한국식 넥타이핀을 사서 꽂아어떻게 넥타이핀을 통해 이런 원칙 내지는 효과가 적용되는지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진 ③) 도시설계나 도시계획도 역시 이 와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 잡니다. 도시에서 보이는 지어진 블럭과 아직 지어지지 않은 반 땅, 즉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나 도시광장 등의 반땅은 바로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즉 비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속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 여러분이 만일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넓은 광장이 나타나면 바로 이러한 특별한 것을, 이상한 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지 혹은 이름답지 않은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도시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것(das Allgemeine)'과 '특수한 것(das Besonde re)' 사이의 관계를 통해 통합체가 이루어 진 것을 도시건축의 모든 단계및 도시건축의 모

든 요소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 ⑰) 여기 플로렌스(Florenz)의 경 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훌륭한 도시의 모습이란 이런 작은 여러가지 특별한 것들이 중첩되어져서 만들 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바로 우리들의 현대적인 건물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큰 건축물에서 부터 작은 디테일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시 건축의모든 레벨에서 우리들이 디자인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즉 이런 한 건물의 파사드(Fassade)의 디자인부터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돔(Dome)이나 지붕의 형태까지 디자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배워야할 것은 이러한 원칙을 오늘날 현대도시건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도시에 있어서 초고층건물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auf besonderem Gestaltungsprinzip) 설계되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도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 사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현대도시에서는 찾을 수가 없 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것'은 소박하고 일반적인 주변 내지는 주위환경을 요구한다는 것을 점점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떠한 위치에 어떤 형태가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가 봉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들은 이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8)) 우리는 여기서 세번째의 큰 문제에 부딪쳤는데 그것은 우리시대에 있어서의 사회의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70여년 전의 독일 농가의 여성의 모습이고 이쪽은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래 왼 쪽은 70여년 전의 농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서 자연정관에 있어 서도 이주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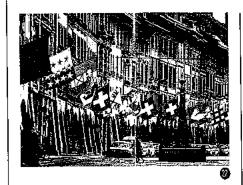
(사진 ⑩) 이러한 빠른 변화들이 두가지 종 류로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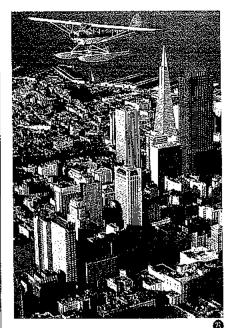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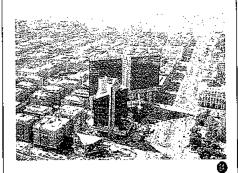














THE GERM: THE SEAT OF POWER

Above is drawn a diagram of a typical seed with two cotyledous. The cetyledous are specialized radimentary leaves containing a supply of nourishment sufficient for the initial stage of the development of the germ.

The Germ is the real thing; the seat of identity. Within its delicate mechanism lies the will to power: the function which is to seek and eventually to find its full expression in farta.

The seat of power and the will to live constitute the simple working idea upon which all that follows is based--as to offlorescence.

웠습니다. 하나는 그 도시의 부분이 매우 빠 르계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독일 의 한 도서의 약 3 ~ 4개월전의 항공사진의 모습입니다. 그 도시에선 20여 년 동안 도시 재개발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쇠퇴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쇠퇴에 포함된 것은 여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사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진 ②) 다른 하나는 도시가 상당히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15년내지 20 년동안 도시건축이 전혀 다르게 변하고 있습.

(사진 ②) 15~20년 사이에 큰 도시의 한 부분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하는 곳이나 성장하는 곳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연속성과 변화사이에 균형 (das Gileichgewicht)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도시 발전에 있어서 연속성과 변화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들이 꼭 필요하 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 츄리허공대 의 교수가 베른(Bern)시의 경우에서 어 떻게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도시 모습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ern이란 도시가 어떤 Type들의 건물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00여년 후에 어떻게 이 건물이 뒷마 당쪽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리고 약간 높이 지어진 것과 앞으로도 약간 넓어진 것, 죽 유형이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 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이 200년 후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②) 우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유럽

의 도시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즉 도시의 건축이 전체적으로는 유지가 되면 서 그 안에서 다양한 도시건축의 Level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 었습니다. (사진 ②)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 들이 우리들의 현대도시에 있어서도 일어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 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시 대에 살고 있고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여리분과 비슷한 생각을 했 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마 오래된 도시에서 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욕에서 만하탄지구에 그 와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1650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만하탄의 변화

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도시평면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러한 것들은 역시 도시공 간의 확장및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뉴욕시의 도시설계정책 (Urban Design Policy)을 나타내주는 다이아그램 입니다. 이러한 세기에 걸친 변화에도 불구하 고 중요한 도시평면 내지는 도시의 공간구조 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도시평면의 요소와 도시공간의 요소들이 규제되고 조정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트 로이트(Detroit)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와 뉴욕(New York)의 경험에 의하면, 즉 이러한 세가지의 경우를 살펴볼 것 같으면 경제적인 성장에 의해서 많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도시나 독일의 여 러 현대도시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을 지켜서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음을 보게됩니다. 그러 나 우리는 여기서 이런 도시설계정책(Urban Design Policy) 뒤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도시 건축을 바로 시민의 도시생활의 질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로 보는 시민들이 있어야 합니 다. 그리고 시의 행정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런 것들이 좋은 도시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뿐 아니라 좋은 도시이미지로 인해서 경제적으 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 다. 경제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큰 회사나 혹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 도 시에서 자리를 잡기를 원하고 그 도시에서 살 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②)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번째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 '연속성'과 '변화'가 어떤 통합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생활에서 그것은 마치 유토 피아적인 생각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것입니 다. 마치 물에다 불을 붙여 타게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겁니 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연에서 또 다시 배우게 되는데 자연은 이런 양극적인 힘으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업

만일 열이 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구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찬 것이 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아 마 얼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두개 의 극단적인 힘이 모여서 세 번 째의 새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우 리가 이러한 자연과학의 여러분야, 즉 물리나 생물 등을 다시 살펴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것 들의 연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가

지의 극적인 요소가 모여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것 에 의해 이미 발씀드린

- (1)다양성과 통일성의 문제
- (2)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관계
- (3)연속성과 변화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번째의 경우인 통일성과 다양성이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를 통일성이 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자유를 다양성의 경우 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사항들은 사실 우리들의 외부적인 것을 만드 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분들이 동양의 오래된 사상인 음과 양의 조화 를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거기서 이런 원칙의 유사성을 발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한가지 중요한 질문이 날아 있습니 다. 우리는 도시가 하나의 통일적인 아이디어 가 없이 만들어진 소우주라면 하나의 독립체 로써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도시의 상황을 책임지 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로 인간 즉 위 리들자신이 우리의 도시를 구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사진 🚳) 또한 이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설계하는 원칙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 웠습니다. 아마 보리를 키우는 데에 만약해 보리의 줄기에 달려있는 하나하나의 주머니 마다 씨가 돌어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서는 보리를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분부분의 디테일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만을 만들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 설리반 (Louis Sullivan)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발 견한 원칙이요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고충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그 건물의 아래 부터 위까지 부분부분의 자세한 설계도를 가 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리 알갱이의 실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리받은 말했 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모든 도시계획에 적 용될 수 있는 이러한 원칙들을 배우게 됩니 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슈트트가르트 에서도 마찬가지인테 - 바로 우리들이 어떤 도시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Concept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거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원칙을 잘 믿지않고 있습니 다.

(사진 ②)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 와 자연을 살펴볼 것 같으면 바로 자연이 이 러한 계획에 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런 원칙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도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져서 나타납니

다. 우리는 어린이로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갖게 될 플랜(Bauplan)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번 하기는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플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현대사회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나 생각하 실 것입니다. 모든 마이크로칩은 공간이나 시 간에 있어서의 계획(Bauplan)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chip은 바로 어떠한 프로 세스를 담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은 우선 전체적 인 것으로 계획이 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진 ②)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은 모두 통일적이고 총체적인 설계를 통하여 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의 이 자동차들 은 모두 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입 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국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 총체적인 디자인 속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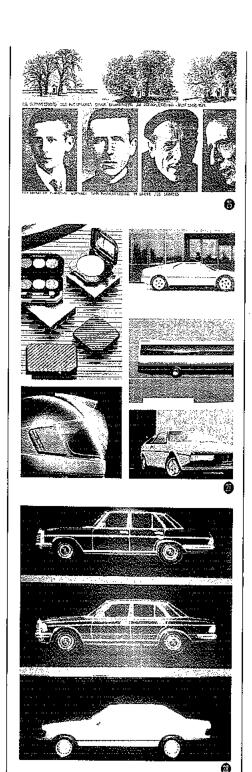
모든 건축은 이렇게 총체적인 디자인 속에 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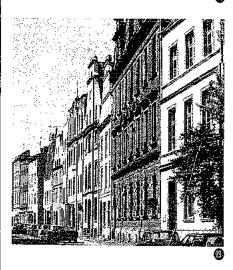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총체 적인 디자인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단지 도시 만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 제는 도시가 전혀 계획이 없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자동차앞의 것은 메르체데스 밴츠(Mercede s Benz)회사의 마크입니다.

벤츠회사는 그의 성공을 하나의 독특한 철 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음 이 회사 는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따르고 있습 니다. 이회사의 철학은 한마디로 나타낼 것 같으면 '전체라는 것은 부분의 합 이상이라 는 것(Das Ganze ist immer mehr als die Summe seiner Teile)'입니다. 이 것은 프 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Descartes)의 말 입니다. 아마 이 말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명언 내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 이 회사는 이것을 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세 세대에 걸친 메르체데스 벤츠의 모습입니 다. 대체적으로 각각 약 10년 정도씩 차이가 나는 모델들입니다. 그 철학은 매 번의 자동 차세대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그것이 메르체 데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디테일이 아니라 바로 그 전체의 모습이 바로 메르체데스 벤츠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 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가 많은 돈 을 들여 수 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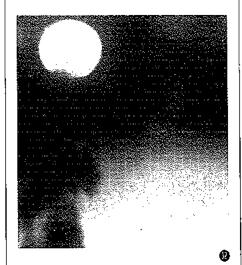
각각의 자동차 세대의 모델을 점점 더 발 전을 시키는데, 즉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상 당한 변화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모습에 있













어서는 그것이 바로 메르체데스 벤츠(Merc edes Benz)라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가지의 질문이 있습니. 다. 첫째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입 니다. 그 대답은 '사람들은 연속성과 변화의 통합체를 언제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회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오랫동안 꾸준히 성공을 거둘 수 있어왔던 것 은 이 회사가 이런 원칙을 충실히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이 세 상의 어떤 도시가 수백명 수천명의 건축가를 동원하여 수많은 돈을 들여 도시의 총체적인 Concept를 만들려고 하는 사도가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 🕲) 제가 알기 에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바로 기기에 문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리석게도 건 축가나 도서계획가들은 이러한 도시를 총체 적으로 디자인 하는 비용이나 기회를 얻는데 있어서 공공으로부터 그리고 일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 마지막으로 자연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구축 계획에 의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자연적 지형에도 해당되고 식물, 동물에 도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사진 ⑩) 이 원칙은 샌프란시스코의 오래 된 도시의 어떤 부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희귀한 예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②)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우리들은 생태테크니칼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진 ③) 왜냐 하면 도시는 우리들의 물질 적인 존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③)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우리의 도 시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영적인, 정신적 인 질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진 ⑧)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에서뿐 아 니라 도시에서도 그런 창조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우 리가 공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연이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또한 자극과 아름다음을 제공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 그래서 우리는 작은 공간에서도 아주 창조적이 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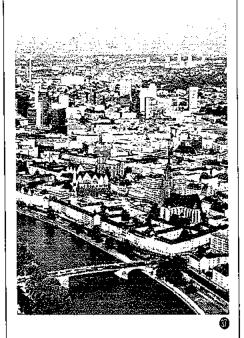
(사진 第) 이러한 생각을 도시에서 살현하 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도서는 다시 자연과 우주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는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원칙을 따 라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원칙









을 가지고 일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도시는 정 신적인 측면을 갖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러한 정신적인 원칙은 아마도 바로 서울을 처음 정도할 때에도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난 토 요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느꼈고 또한 서울 性(seoulness), 즉 서울포럼에서 발간한 책 에서 저는 알게되었습니다.

실례를 통해서 보는 도시 설계 포츠담(Postsdam)과 슈트랄준트 (Stralsund)

어제 우리가 주로 도시설계의 이론적 좋은 측면에 대해 얘기한 것에 반해 오늘은 우리들 의 주로 현실적인 사항에 관하여 얘기하려 합 니다. 오늘은 독일의 두 도시에서 일어났던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 용역을 저희는 해당도시로부터 받았 고 또한 거기에는 연방정부의 보조도 있었습 니다. 저희들은 이 도시를 위해 모델적인 도 식디자인의 예를 만들도록 위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도시디자인(Stadtgestaltun g) 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독일에서 Stadtgestaltung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20년전에 도시 디자인(Stadtgestaltung)이라는 것을 다 시 도시계획이라는 분야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Stuttgart대학이 독일에서는 첫번째 대학으로서 이러한 도시 디자인이라는 분야 를 대학의 교육내지는 연구분야로써 시작음 했습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도시계획,도시 디자인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 시민들이 느끼는 것으로부터 혹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 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도 시계획에서 도시디자인의 임무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고 려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 고하는 분야에서 토지이용, 교통의 문제, 경 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데 비해서 도시디자 인은 시민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요구를 고 려하는 임무를 가진 것으로서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도시디자인이라 는 이 분야를 연구에서나 실무에서나 교육에 서 다른 분야들(심리학, 사회학)과 함께 확 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 제 우리가 얘기한 사항들에는 즉 도시디자인 이라는 분야의 밑바탕에는 식리학이라든지 사회학 도시계획학등과 같이 연결된 그리고 그런 것에 기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린이들이 나이를 먹으며 단계적 으로서 어른이 되듯이 도시디자인도 다양한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을 학문 으로 확립하기 시작하였을 때 여기에는 세가 지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 백 년의 역사 를 가진 유럽의 도시건설예술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두번째는 영국의 도사분석입니다. 고 든 컬른(Gordon Cullen)에 의해 시작된 Townscape Design입니다. 세번째는 세계 적으로 유명한 연구자이면서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케빈 린치(Kevin Lynch)를 뜰 수 있 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아버지일 뿐 아니라 자주 독일에 그리고 Stuttgart대 학에도 왔었습니다. Kevin Lynch는 슈트트 가르트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사람입 니다. 그 외에도 Kevin Lynch와 Gordon Cullen은 Stuttgart대학에서 있었던 아주 큰Urban Design Conference에서 처음으 로 만나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어제 애기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배경이 설 명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 인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설명했던 아이디어나 컨셉트, 또 는 그러한 이론들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실 제에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포츠담(Potsdam)

(사진 ®) 먼저 베를린의 교외에 있는 Potsdam시로 안내합니다. 포츠담은 여러분들도 잘아실 것입니다. Potsdam에서 전쟁후 독일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회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과 처칠 트루만 등이모여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 등 독일은 그 조약을 극복하고 깨는 데 약 40년이 걸렸고, 아직도 그 것을 다 극복하지는 못했고 한국은 더욱 그런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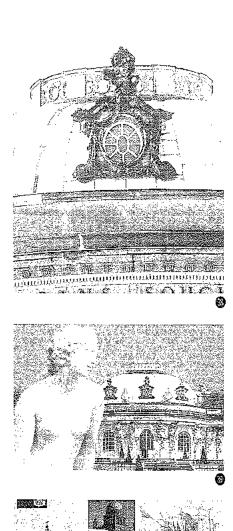
(사진 ⑩) 포츠담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성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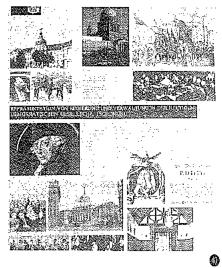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거기에는 귀중 한 미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역사적인 사실및 문화적인 의미로도 유럽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⑩) 포츠담은 프로이센시대에는 프로이센왕이 자리하던 곳이며 독일의 군국주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한편 위대한 학문적발견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문화, 예술의 중심지이고, 영화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두번째의 얼굴, 즉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도시가 퇴락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성도시들이 있는데 살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문제를 중 하나는 어떻게 우리들이 도심및 새로운 주거단지에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느





Boeing 747-400

Potsdam

820

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동독에 속해 있었고 현재 여기의 주민들은 통일로 인해 큰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탱크 를 갖고 싸웠던 시대로부터 내면적으로 큰 변 화를 해야 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를 배워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또한 자동차들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 와 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져야 하 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망가진, 황 폐된 환경속에서 새로운 아이덴티티 (Identität)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 습니다. 과제중의 하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연속성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진 @) 여기보시는 보잉(Boeing -747)기와 프로이센 병정처럼 즉 오래된 전통 과 현대와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입 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40년이나 살아온 사 회주의 채제로부터 새로운 자유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고 이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새로운 과제가 무여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계획이나 데이타나 규정들은 소용이 없게 되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소에서는 이 도시로 부터 전체도시를 대상으로하는 도시발전계획 (Stadtentwicklungsplanung)을 수립해달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업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시 발 전계획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러한 도시발 전계획은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 용계획으로 귀결이 될텐데 그것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처럼 동 료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포츠담의 프로젝트 담당자는 여기의 디트마 베버(Dietmar We ber)입니다. 그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걸 쳐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조용히 앉아서 차분하게 처리하고 안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도시는 아름다. 운 성이나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 와 같이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고 토지어용이 나 건축물의 이용이 문제가 있고, 교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적인 Design Concept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과제였을까요, 과제는 전체도시에 대해 토지이용, 교통, 그리고 도시디자인 (Stadtgestaltung)에 대한 Concept를 발 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포츠담이 이 양면(아름다운 측면과 아닌 면)을 통틀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가 과제였습 니다. 첫 번 째 과제는 (1) 미래의 포츠담의 Image를 생각하고 혹은 Formulate하고 만 들어내는 것 (2) 이러한 Image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을 끌어내는 것, 즉 예를들어 일자리라든지 거주 등등의 분야에 대해 구체 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 (3)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지어용계획이라는 테에서 현실적으 로 구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생활을 만들고 있는 부분 부분 측면을 분석해서 그것으로부터 구체적 인 목표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몇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용적인 사실들보다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일하는 방법이 흥미있을 것 같아서 그런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래서 우리는 개개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이 되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발견하고 정리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민들및 정치 가들이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포스터처럼 (Plakate) 만들어서 붙여서 보여주었습니

그래서 그들이 포츠담에 거주하는 데에 무 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사실들은 저희들은 만들고 자 하는 토지이용 계획의 기초적인 자료로 사 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새로운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를 표현했고 어디에 고 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표현했고 그리고. 어디에 시민들의 거주의 질을 향상시켜야하 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즉 위성도시등이 거주 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어떤 꿈내지는 희망사항으 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토지 이용 계획의 스케치로 전환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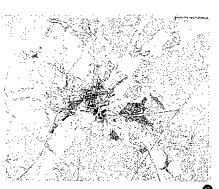
지금까지는 거주에 관한 것이었는데 일자 리, 일에 관한 것들도 똑같은 것으로 시도하 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발전 계획의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별 의미없이 보이지만 그런목표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츠담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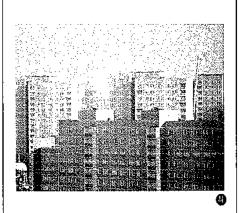
거기에는 중금속이나 기계분야가 아니라 사무,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 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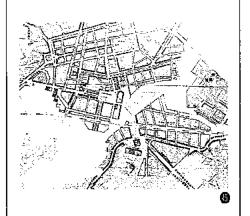
이러한 분석들을 다시 토지어용을 위한 스 케치로 전환하였습니다.

포츠답시를 위해 12가지 정도의 목표를 세









웠는 데 오늘은 그중 거주와 일자리의 2가지 정도만 보여 드렸습니다. 거주와 일자리라는 테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기 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요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야기했듯이 영적이고 정 신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은 이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목표를 세웠 습니다. 그래서 포츠담을 정원 및 공원이 많 이 있는 도시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포츠담은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너 댓 개의 큰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방문하고 보기 위해 포츠단이나 배를 린에서 뿐 아니라 독일이나 유럽에서 많은 사 람들이 옵니다.

포츠담은 도시계획에서 생태적인 방법을 사용한 약 3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 는 도시입니다. 프로이센의 왕은 이 도시를 건축과 도시와 자연이 하나의 통합체를 이룬 그러한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포츠담을 생태적인 종합예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츠 담을 지배했거나 행정을 관할했던 사람들은 항상 미래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도시내에서 시각적인 연결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하면서 계획했습니다. 평면에서 녹지의 축들이 사면에서 도심을 통과하여 쐐기모양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도시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도시구조의 구상은 이미 약 3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동안의 여러정치,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나치스나 그 이후 독일에서 모든 위정자들이 300여 년 전의 프로이센왕의 생각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포츠담은 또한 경기, 특히 육상부분에 있 어서 스포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사람들의 물질 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인 요구를 도시발전 계획에서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사진 @) 이러한 정신적인 욕구를 다루는 것은 문화나 예술에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더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습 나다.

또한 과제중의 하나는 새롭고 아름다운 건물이 포츠담에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③) 시민들의 정신적인 요구중의 하나는 포츠담이 이렇게 오랜 역사와 문제를 가진 도시로서 도시건축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은 매우 크다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우리들에게 과제나 의무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기회를 주는 요소 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10 개 이상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는데 이 목표들은 물질적인 측면과 그리고 비물질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도시의 기술적인 하부구조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들의 이러한 부분의 연구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부분적인 요소들은 마지막에 가서 일반적인 전체 교통계획 (Generalverkehrskonzept) 이라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합해졌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교통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일반적 /총체적 도시교통계획 (Generalverkehrskonzept)의 대안들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앞의 슐라이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반적 토지이용계획을 스케치로 시도해 본 것 입니다

이 평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회색부분은 어느 부분이 아직도 지을 수 있는지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 백 년 내려온 녹지축들을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전 44) 또한 여기서 도시 전체에 대해 도시디자인 concept를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도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 디자인 concept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역기 보이는 이런 plan은 평범하고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있는 요소를 을 갖고 있습니다. 평면에서 보시듯이 여러가 지 색깔은 높이와 밀도 등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안들은 미래 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들이 개발함 수 있는 높이나 건축볼륨을 제한하고 있기 때 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아가서 이 계획안에서는 기존건물의 철거 내지는 몇 층 없애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다른 필 요한 곳에는 고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시로부터 후속 작업을 의뢰받았는데 이 계획 안을 좀더 작은 스케일로 그리고 좀 더 자세 하게 연구해 줄 짓을 의뢰 반았습니다.

(사진 ⑥) 여기 보듯이 가로공간이 닫혀진 건축방식(Geschlossene Bauweise)에 의 한 건축선에 따라 도시의 건축공간이 한정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색깔에 따라 다른 높이들 이 지정됩니다.

이곳에 고층건물이 설 수 있는 장소들의 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역기서 아직까지는 층수, 전폐율 등을 나 타내는 숫자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서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 네모찬의 숫자처럼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등을 정확히 계산해서 써 놓았습니다. 현재나 미래의 땅의 소유자가 자기땅에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발전계획의 목표들을 수평적으로 발씀드렸는데 이러한 각각의 목표에는 언제든지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 결단이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마다 갈라지는 곳이 있듯이 각각의 목표에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point들이 있습니다.

(사진 ⑩)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처럼 포츠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전 목표 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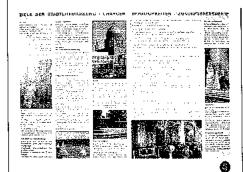
그래서 독일의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토지 이용계획의 바로 위에 혹은 그전에 도시 전체 에 대해 이러한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 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 토지의 평면적인 이용 (Nutzungskonzept)(2) 교통에 대한 concept (Verkehrskonzept) (3) 도시천 체에 대한 3차원적인 디자인 concept (3-Dimensionale Gestaltungskonzept) 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의 물 질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요구까 지를 함께 고려한 계획으로써 첫 번째 시도라 할 수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시계획 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 장적인 것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이라는 것을 도시전체의 레벨, 혹은 도시발절계획의 레벨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시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도시디자 연의 작업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느끼실 겁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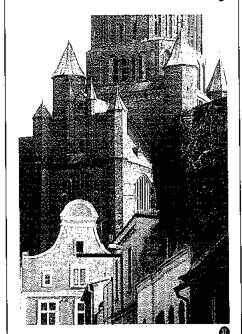
이렇게 Urban Design이라는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집안에서 쓰는 작은 가구디자인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계획에서는 가구내지는 쓰레기통까지 다자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계획범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 상단이 포츠담으로 독일에 오셔서 이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포츠담이 베를린 (Berlin) 바로 옆에 붙어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제 화제를 바꾸어 여러분들의 기분전환 을 위해 독일북부의 슈트랄준트로 초대하려 합니다.

슈트랄준트(Stralsund)

이 도시는 독일 북부의 폴랜드와 국경부근 에 있는 중세한자도시(Hansastadt)의 하나 로서 오스트제바다(Ostsee)에 면해 있으며 한자도시 뤼벡(Hansastadt Lübeck)처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희들의 용역파제는 도심부분을 위해 총체적인 도시건축Con-





cept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과제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내려가서 저희들 작업에 따라 조례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건축의 허가까지 조절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도심부 즉 핵부분은 큰도시전체의 한부분입니다. 이 도시의 전체를 위해서도 역시 도시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발전계획도 저희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심부를 위한 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 전체를 위한 발전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진 ⑩) 이 도시는 예로부터 아주 훌륭한 건축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700년내지 800년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지난 약 이,삼십년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된 도시부분을 통하여 확장되 었습니다.

이 도시는 관광의 도시가 아니라 무역, 그 리고 산업들이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큰 조선소가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즉 하나의 현대적인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3))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사회주의 이후에 도시의 여러 부분내지는 모든분야에 서 새로운 도시 디자인의 과제들이 발견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독 일 연방정부및 시의 주문에 따라 전체 도심에 다 디자인 Concept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는데 상당히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이러한 과제에 있어 어떻게 도시계획가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계획이었다.

미리 양해말씀드릴 것은 오늘 보여드릴 이 Project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 나 이러한 현재진행되고 있는 Project를 보 여드리므로써 훨씬 생생한 경험을 들으실 수 있고 저희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 과연 우 리는 도시설계 (Urban Design, Stadtges taltung)라는 것에 대해 무슨일을 하고 있을 까요? 이 방법은 우리가 모든 도시에서 적용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우리는 도시건축의 역사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리고나서 저희들 은 우선 도시건축의 요소를 찾아서 분석하는 데 예름 들어 자연적인 여러가지 조건, 도시 의 평면, 도시의 실루엩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지난 수세기, 수 백 년을 통 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분 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시공간에 대해 시도합니 다

도시공간의 구조가 지난 수세기를 통해 어 떻게 변화해왔는지 연구 분석합니다.

우리는 이런 요소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구 체적인 데까지 내려가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 내에 있는 요소들에까지도 확장하여 시도함 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과제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에게서 강연 끝난 후 질문을 받았는데 도대체 도시디자이너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디자이너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런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아주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합니다.

제 사무소(Stadtbauatelier)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분은 한국에서 오신 이 석정 씨라 하는데 이 슈트랄준트(Stralsund)프로젝트 담당자(Projectleiterin)입니다. 8년 전부터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기도하고 한편으로 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번에 함께 서울에 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권했더니 본인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저보고 혼자가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우리 사무실의 다른 동료와 함께 3일간의 혐의를 위해 슈트랄준트를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비 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보면 도시는 아주 성스럽게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도시는 전쟁후의 패허같은 구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차대전전까지는 이 구석들은 모두 아름다운 집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진을 몇 달 전에 찍었는데 이러한 전쟁의 상처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곳곳에 있습니다. 통일 후 많은 토지소유자및 투자자들이 이곳에 집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과제는 아곳에서 도시건축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 발전될 수 있는 Concept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진 ⑩) 첫번째 일의 시작이 역사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두번째는 도시디자인 요소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땅에 내려와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비행기에서와는 달리 얼마나 쇠퇴하고 황폐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어떻게 이런 계획의 과정이 흘 러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심지 에다 일자리와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해 서는 마스타플랜(Rahmenplan)을 만드는 것이 슈트랄준트의 과제였습니다. 설계대상 지역은 슈트랄준트시 전체가 아니라 우선 '고도시 부분(Altstadt = Innenstadt) 만' 이었습니다. 설계팀으로서 조경가, 생태연구 가, 교통계획가, Rahmenplaner 그리고 도 시디자이너 (stadtbildplaner, 여기서는 stadtbauatelier가 도시디자이너로서)가 함 께 하나의 마스타플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 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도시의 각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시청의 국장내지는 대표들이 참여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의 시장님 주관하에 4주내지 6주마다 한 번 쐬 모두가 참여하여 이불동안 Workshop같은 것을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는 독일에서는 쉽지않은 상황이고 잘되리라 생각지 않았는데 의외로 성공을 거두었습니. 다.

그래서 우리(stadtbauatelier)는 도시디 자이너로서 전체 마스타플렌의 한 부분인 도시디자인(stadtbildplanung)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1) 도시역사에 대한 분석 (2) 도시디자인 요소에 대한 분석,그리고 (3) 각각의 도시건축의 요소들에 대해서 계획안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첫번째의 과제는 이 <u>도시의 건축물 높이</u>빛 볼륨에 대한 Concept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시의 자연적인 조건에 대한 Concept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래에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테두리를 지정내지는 제시하기 위해

두번째의 과제는 도시의 가로공간및 광장에 대해 Guideline concept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가로공간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되도록 미리 계획을 하여 만들어지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화 되는데 바닥의 포장, 색채, 바닥의 구분등등까지 디테일화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다음 단계에 어떤 가로에 건축하게되는 건축가들에게 주어지게되는 그러한 조건들로서 대두되게 됩니다.

세번째 중요한 과제는 미래의 건축물의 형태와 파사드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소스로는 좋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건축물의 상황이나. 주변의 건축물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워질것 같으면 이 거리의 성격내지는 분위기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도사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Stralsund가로의 건축이 어떠한 모양을 가질 수 있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옛날의 건축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건축의 유형(Typus)을 연구해서 향후 미래에 어떠한 유형, Typology가 가능한지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너 개정도의 기본적인 Type들을 발견해내 놓고 거기에서 향후 건축가들이 설계할 때 고려할 서너가지 규칙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과정

에서 어제 우리가 얘기한 디자인 원칙들을 가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 얘기했고 그것을 통합하여서 도시를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맨위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통일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러한 유형(Typus)속에서 개개의 다양한 형태나 다양성을 개별적인 것으로 시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곳에서는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시는 한가지의 건축형태로 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건축 유형으로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양한 건축유형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체 도시에 해당되는 그러 한 Rule들입니다.

이들이 가로의 건축들에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여기 중간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 게 통일성과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연속 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들은 시내에 다양 한 장소 다양한 가로를 따라서 원칙들을 발전 시켰습니다.

건축주나 건축가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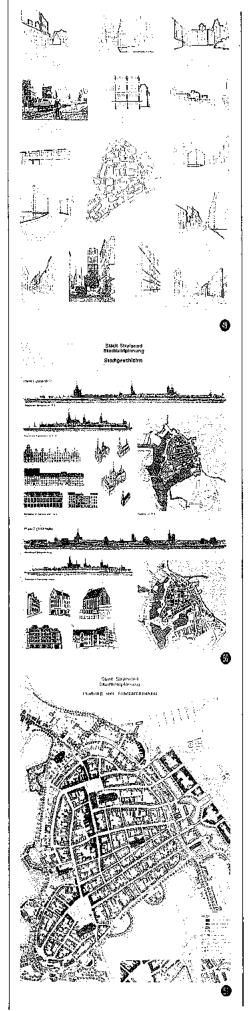
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완성 된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 에서 우리들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축가가 제출한 안을 평가해서야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건축가에게 도면으로 또는 스케치로 어떻게 하면 주변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 될지를 그려 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규모내지는 같은 비용이가 들어가는 전쟁하에서 입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과정은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므로 때로는 중단되기도 하고 또는 토지야용계획가, 교통계획가, 문화재보호가, 도시계획가, 도시디자이너등등이 만나서 토의하고 조정하고 맞추게 됩니다.

(사진 ⑩) 이러한 공동의 작업의 결과로서 마스타플랜 (Rahmenplan)을 만들게 되는 데 이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사항, 교통에 대한 사항,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건축행위는 계속됩니다.

저희들의 디자인에 대한 상황이 때로는 구체적이며 상세해야 하고, 때로는 테스트해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성벽인데 귀중한 건축부지가 그부근에 있습니다



■ 사진설명

- ◇大字宙로서의 자연, 小字宙로서의 도시
- 有機生命體로서의 지구와 도시
- ◇ 生態學的 관점
- ②, ③ 도시와 자연환경은 공통의 문제를 갖고있다.
- ◇ 질서와 인간의 아이디어
- ❸ ⑤ ⑥ 인간의 물질적 존재, 정신적 진화 및 예술적, 지적, 정신적 창의성의 장으로서의 도시

◇ 질서와 다양성

- ⑤ ⑥ ② 혼란스런 도심을 둘러사고 있는 단조로운 도시
- 🚯 자연 및 질서에 있어서의 질서와 다양성
- ⑤ ⑥ ⑥ 일반적인 설계원리와 아시아 도사에 있어서의 해 석간의 조화
- 😰 현대도시에 있어서의 건물형태의 변화
- ◇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보편성과 고유성)
- ⑤ 도소의 액락과 단독적이고 알반적이며, 그리고 특수한 새로 운 미적요소통과의 대립
- (월 '일반적인 것'과 '폭수한 것'의 평형
- (B) (D) 가료형태와 도시공간 그리고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의 '임반적인 것'과 '욕수한 것'의 종합
- ② 연속과 변화 속에서의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간의 조 화

◇ 연속과 변화 사이에

- 🔞 연속성과 변화 사이에서의 불일치
- 🐠 도시의 퇴락과 개발을 통한 일방적인 변화
- 가로의 그리도 개발에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 🕝 🔞 예도시와 신도시에서의 연속과 변화간의 균형

◇ 잎반적인 설계 아이디어(종합적 디자인 이념)

(II) 장미논 장미이고, 그 장미도 잠미이다.··(게루트루드 슈타인)

◇ 유형과 그 변형

- ⑤ 도시설계를 위한 배아상태의 설계 아이디어(디지인 야념)
- ④ ④ 페르체데스 融의 자동차 생산이나 다른 디자인 용품을 생상할 때 적용되는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의 디자인 지침의 총 체상
- 끊임없는 변용(또는 변형)의 단계로서의 자연
- 🐠 나무와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변용
- ① '일반적인 설계 아이디어'가 없는 도시 개발
- 🚯 🚯 보충적인 설계 아이디어로 조성된 주거지
- 어떤 도시라도 개발단계에서는 알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 포츠담

- ❸ ❸ ❸ 포츠당市 프러시아 주와 독일 군국주의의 요람
- ❷ 설계 어미지로부터 개발목표에 이르기까지의 도시계획의 단계를 및 특별개발 계획
- ♣ 도사설계의 문제점들과 일반적인 도시설계 계획의 몇가지 사항통
- ❷ 변화, 예술, 교육, 일자리, 주거, 교통 그리고 시민생활을 위한 개발 목표를

◇ 슈트랄준트

- ● 일반적인 도시설계 아이디어의 재발견
- ⑤ 도서설계의 문제점 본석과 초시간적 설계원리
- ② ⑤ ⑤ 설계지침의 예시와 설계 아이디어의 정의 및 건축법규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들은 설계지침을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 대지에 대한 현상설계 지침서로서 이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도시디자인의 규칙속에서 설계지침을 지키면서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만들게 되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설계지침(Guideline)은 건축가들에게 상당히 많은 운신의 폭을 항상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과제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사이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도심부의 주요한 보행및 상업가로에 하나의 대지가 비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좋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Palazzo스타일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땅을 위해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자리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서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자리를 위해 여러가지 실 험적인 디자인 (Test Design)을 했는데 그 중 두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⑩) 여기서 보시면 마치 Test Design이 건축가의 일을 대체하는 것처럼 자세한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가에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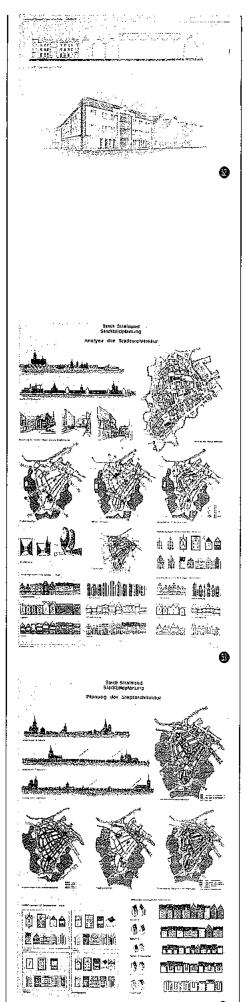
어떻게보면 여기서 저희들의 도시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은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업이 얼마나 깊이까지 이르는지를 보시게 되는데 건축물의 이용의 종류나 높이나 정면의 모습이나 그런것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건축적인 요소에까지도 작업이 미칩니다. (사진 🚳, 🚱)

마지막 과제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옛날의 항구구역을 새로운 Structure로 만들고 새로이 건설하는 과제입니다. 이 항구구역은 구도시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즉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선 섬의 한 부분입니다. 도 도지이용의 형태나 볼륨에서 뿐만 아니라 이땅은 가장 비싸고 귀중한 땅이라 할 수있습니다. 여기에는 호텔, 사무소, 백화점같은 건 물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사무소의 한 팀이 상당히 자세한 연구및 분석을 통해 항구구역에 대해 새로운 Concept를 만들었습니다.

이 것은 전체도시의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바로 바다에 면해 있어 이 도시의 얼굴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설계에 임하였는데 투시도라든지 평면이라든 지 여기보시는 것과 같은 모델이라든지 여러 한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조인숙씨가 와서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Guideline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Guideline은 시에 의해 수용되고 그러한 것들은 향후에 거기에 투자하거나 거기에 잡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이었습니다. 슈트랄준트(Stralsund)의 모든사람들은 이땅에 건물들이 빨리 지어지고 거기에 무엇이생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건축주나 투자가들이 있게 되는데 건축주나 투자가들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저희 사무소에서 만들어진 Guideline이 지켜지는 때에만 건물을 지을수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세한 연구를 거듭하였는데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뿐 아니라 교통, 주차의 소요요구량등이 자세히 연구되었습니다. 그결과는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이용할 수있는 볼륨의양, 3차원적인 형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 이 석정씨와 그의 동료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슈 투트가르트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 이사람들은 제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고있는 동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20개가 넘는 도시에 대한 설계 프로젝트를 현재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파트너인 알렉산더슈미트(Alexander Schmidt) 박사는 토마스 웃취(Thomas Utsch), 그리고 이석정씨와 함께 7-8년간 사무소를 오늘날과 같이 키워 왔습니다. 이들 동료들은 4-5개국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사실상의 전세계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유럽 사람들이 있고 남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시아에서 온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거의 잊고 동료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도시디자이너의 가장 큰 특성이랄까, 성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제 게 불어왔습니다. 그 질문은 저로하여금 한 시간반 이상을 생각하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질문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이었 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대답한다면

첫째 우리모두는 3차원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있는 능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3차원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또한 3차원적으로 미래의 그것이 어떻게 될지 꿈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을 할 때에 투서도적으로 생각하고 투

시도적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3차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필요로 하는 능력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물을 우리가 그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때까지 그 상황물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도시와 다른 도시가 왜 다른가 ? 어떤 한 가로와 다른 한 가로가 왜 다른가를 발견할 때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건전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양한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그 분야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혹은 그러한 자세를 갖추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통계획가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돈을 내야하는 투자자의 마음이 되어서 그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통합이 될 때, 같이이해를 나눌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u>네 번째</u> 필요한 능력은 팀의 구성원, 시민, 정치가들과 같이 화합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 같이 조정하고 협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능 력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은 장기적으로 오래생각할수 있고 끈기있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의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마 일을 수행하면서 매일 부딪히는 화나는 일이라든가 싸우는 일에 대해 수시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u>여섯 번째</u>의 능력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일상생활에서 느끼면서 보존하고그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u>일곱 번째</u>는 도시에 대한 아주 큰, 오래갈 수 있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사무소가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묶 어주는 그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모든사람이 그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들의 일 속에서 점차 배워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종합토론회의 내용은 7월호에 게재함 예정임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Go toward the 21C Architecture

다니엘 리베스킨트 / Daniel Libeskind

번역/이용재(프리랜서)

I.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세계

그는 1946년 폴란드의 로즈에서 대어나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곧 이스라엘로 이민을 떠난다. 그는 처음에 음악가로 교육을 받는데 1960년에 미국 /이스라엘 문화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뉴욕으로 유학을 떠난다. 당시 같이 선발된 장학생 중에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이작 펄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인 아이작 스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연주가의 꿈을 포기한다. 그 이유는 악보를 충실히 연주하는데 필요한 '테크닉'이 뒤따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전공을 건축으로 바꾼다. 음악과 비교해 볼 때 건축분야에서와 '테크닉'은 아주 단순해서 테크닉이 가져오는 극도의 피로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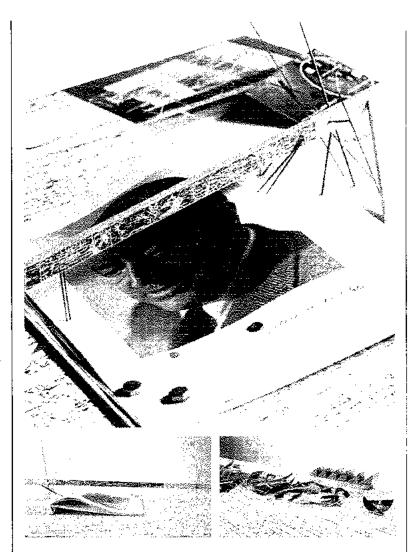
그는 쿠퍼 유니언에서 건축을 전공하면서 존 헤이덕과 피터 아이젠만으로부터 건축의 영감을 전수받는다. 그는 역사와 철학공부를 중시하였으며 영국의 AA에서 한 유니트의 마스타를 맡으면서 단어들과 선들간의 관계를 깊이 연구한다. 그후 그는 크랜브룩 건축대학의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궁극적 통합을 지향하는 아카텍처 인터먼디엄(Architecture Intermundium, 약칭 AI)을 창설하여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AI는 우선 기존의 논증 및 생산방식들을 폐기시키고 '탈제도권적' 건축사고를 실험한다. 사실 AI는 마술과 상징주의, 제식, 기술간의 구분이 모호했던 초기 르네상스시대의 연금술 실험실을 모델로 삼아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를 중심과제로 삼았다.

그에게 있어 유대교는 거의 선택의 여자가 없는 숙명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비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그의 직계선조는 무정부주의자이면서 랍비교리의 신봉자였다. 그러나 그의 유태교는 근본주의(기독교를 전부 배격하고 성서의 기록 전부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운동)나 반란과는 관계가 거리가 멀다.

그의 IBA마스터 플랜은 도시의 블럭돌과 그 건물들의 어떤 높이와 관계가 있다. 다시말해 일종의 블럭구조 즉 그 도시의 도시적 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 근본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 도시구조를 서로 어떻게 관련시키는가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관계의 형식을 찾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그래서 그는 도시구조를 이주 정밀한 도시적, 기하학적, 기능적 방식으로 취급하였다. 독일 베를린의 티엘카르텐 지구를 위한 사무실 및 주기개발계획인 시디에지의 건물군들은 평균높이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기술적으로 그 평균높이는 베를린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안하여 산출되었다. 물론 이 블록구조는 이미 주어전 것이기보다 진행되고 있는 논증으로 사용됐다. 다시말해 그곳에는 구조의 고고학(유적이나 자취같은)과 발전의 증거가 공존한다. 그렇지만 그 블록을 취급하는 수법은 가설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또다른 목적을 위해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다루어진다. 그 블록의 한 부분은 경첩이나 지렛대 받침으로 연결되어 두번째 블럭을 더욱 공허하고 황폐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블럭들은 각기 주거 뿐아니라 공장, 공공장소, 편익시설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갖는다. 궁극적으로 그는 이런 모든 모순들을 동질화된 파사드뒤에 숨기려 하기 보다 오히려 그 도시의 독립적 기능들을 하나의 구조로 정신적으로 일체화 시키려 한다.

소위 '물리적 공간'이라 불리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충고한다. 물리적 공간은 물리학에서나 중요할 뿐이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건축이 물리학에 근거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것은 건축적 공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클리드 물리학이 아니라 건축 물리학이다. 건물은 유리와 벽돌 뿐아니라 그밖에도 많은 다른 요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 건물이 다만 그같은 재료들의 위계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인간존재도 불고기나 원생동물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근거(foundation)와 형성(formation)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다시말해 건축은 근원적 현실보다는 형성적 현실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물리학(특히 계몽시대의 물리학)에 근거한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믿는 건축가들은 공간을 파괴하고 싶어도 고전적인 관념에 억매어 똑같은 테크닉을 반복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그가 생각하기에 생래적인 공간은 물리적 현실과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물리적 현실을 뛰어 넘는 그 무엇이다. 동시에 이 '생래성(givenness)'은 욕망과 관계가 있다.



베를린의 유태교 중축안은 '담화성(narrative)'을 담고 있다. 그것은 미술관에서 전시작품에 관해 방문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 이 '열린 담화성' 은 여러가지 이야기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미술관에서 경험한 기이함에 대한 대화일 수도 있고 하나의 주제에 따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논쟁적인 이야기 방식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부재공간(the absent space)의 담화성은 이 부재를 관통하는 공간의 담화성보다 세력이 약하다. 그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베를린 미술관의 소장품들을 새로 수집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전시도판들과 거리를 두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관람객들이 그 소장품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수집하는가에 의존한다. 그런 이유로 유태교 소장품과 베를린 소장품을 구분하는 보이드의 벽은 두 면을 갖는다. 하나는 미술판으로의 연속적인 접근에 의해 볼 수 있지만 또다른 면은 이 보이드내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볼 수 있다. 마치 건물의 외벽같은 느낌을 주는 이같은 벽의 이중화는 작품전시에 유용하다. 예를들어 당신은 공간의 앞에서 오브제의 뒤를 보거나 그 공간의 에지에서 오브제의 전면을 볼 수도 있다. 이처럼 그가 즐겨 사용하는 벽의 이중화 수법은 양면성이나 모호함, 통합의 어려움, 회고적인 통합을 보여주는데 적합하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또다른 주제인 "부재(absence)"는 사실 그 부재자체가 이 세계내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해를 어렵게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재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만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부재'는 기존의 부재의 산물인 건물에 분명히 현존한다. 그것은 무덤이나 피라미드의 수법으로 구축된바 있다. 수세기에 걸친 사회적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사실 인간의 죽음에 의해 그 생명력을 시작한다. 그것은 근원과 신념과 믿음의 문제이다. 오늘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해서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유태교 미술관은 역사적인 지역인 모즈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확장(extension)"이라는 개념이 중요시된다. "확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 이국적인 다른 요소를 끼워 넣어 유대인 거주구역으로 제한한다는 뜻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대인의 역사를 배를린의 역사에로 확장하자는 뜻으로 사용했다. 그것은 매우 혁신적인 테마이다. 왜냐하면 베를린은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비극적인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태인의 콜렉션들을 배를린뮤지엄의 부속동에 소장한다는 것은 유태인에게 있어 받아 들이기 힘든 제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말하는 "확장"은 단순히 인간의 팔에 외수를 덧붙이는 따위의 물리적 확장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는 이 현상설계에 참여한 다른 건축가들이 그것을 단순히 중축의 개념으로 처리한데 비해 일종의 텅빈 지하세계의 가능성으로 제안한다.

결국 유태인의 콜렉션들은 베를린 뮤지엄에 자리하게 되지만 그가 보기에 그 소장품들은 어쩔수 없이 통렬한 유태인의 흔적을 담고 있다. 이미 유태인 커뮤니티는 베를린에 동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은 가능적인 문제들, 족이들 소장품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 이들 사인들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관람객들이 이들 사인을 보면서 유태인 역사의 본질을 잡아낼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관람객이 정말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들은 아직도 잔존한다.

그의 중요한 또다른 개념은 "보이드"의 문제이다. 그가 보기에 보이드는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인지할 수 없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보이드가 아니다. 이같은 미묘한 의미들은 지적이기보다 오히려 세속적이다. 그것은 일종의 탄도와 같은 것이다. 그 탄도가 만들어내는 패시지(passage)가 이 미술관에는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발견해낼 수 없다. 당신이 이 패시지를 관통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다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보여줄 수도 없다는 사실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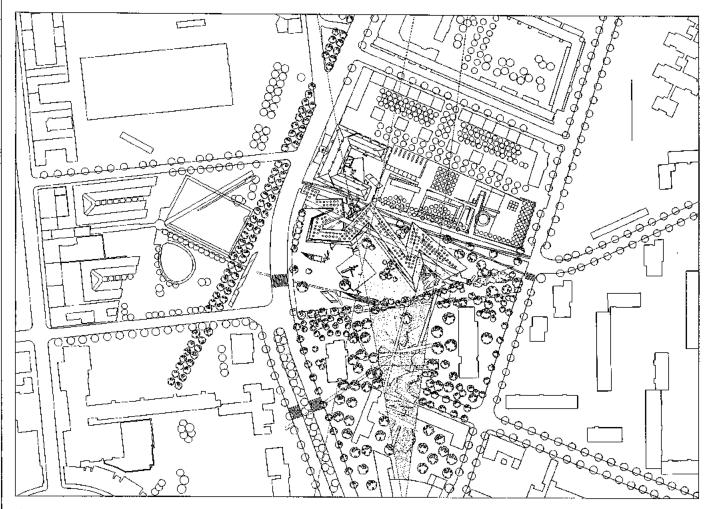
또한 그는 배를린 기하학을 만들기 위해 그 도시로부터 다윗의 별을 끄집어 낸다. 그 별은 배를린 전체를 뒤덮고 있는 비틀리지 않은 유태교 별의 "노란색"이나 쉔베르크 "의「모세와 아론」²¹ 악보의 노란색 결표지와 관련이 있다.

주 1) ~

주 2) :

• 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 오스트리아 태생 작곡가. 무조(Atonal)음악의 창시자로써 현대음악의 방향을 제시. 그는 7개의 음에 속박된 조성체계를 버리고 12반음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기법은 전개한다. 종래의 악곡은 하나의 조를 중심으로 한 관계조와 그것들 상호간의 조바꿈이라는 수단에 의해 명확히 구성되었으나 무조사대의 악곡은 이 오랜 전통을 기초부터 파괴하고 대위법적 구성이나 언어를 기초로 한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쉔베르크는 조성조직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로 생각하고 어떤 중심적인 조에 대한 다른 조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중심조에 속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다툼으로써 조성조직 가운데에서 12반음의 자유로운 취급을 가능케 하였다.

모세와 이론 (Moses und Aron) 엔베르크의 미완성 3막 오페라. 자작대본에 의해 1932년 베를권시절 쓰기 시작했으나 1933나짜의 박해로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중단했다가 51년 다시 작곡을 시작했으나 2막만을 완성한채 눈을 감는다. 54년 함부르크에서 방송으로 초연된다.



사용된 이래로 그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제로라는 숫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100만, 10억, 1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나는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 더욱 포괄적인 정험을 건축에 끌어들여 균형을 이루게 하고 싶었다.

람프나니/그외에도 당신은 많은 텍스트를 작품에 끌어들이면서, 특히 유다의 벌을 극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파괴하면서 재구축하여 상징으로 사용한다. 그것을 어떻게 화면에 담을 것인가? 이렇게 파괴된 별의 상징주의가 ¤연건축의 작용장치로 가능하여 그 뮤지엄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리베스킨트 /나는 그 상징들이 단순히 정치적, 또는 의도적인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는 항상 인간의 욕망과 기호를 조절하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해 왔다. 다시말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자의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고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왔다. 이를테면 어떤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읽을 수 없거나 그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것은 진실일 수 있어야한다. 무엇인가가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선(line)위에 그것을 놓는 것이다. 예를들어 아주신비로운 폴 셀란의 "오라니엔스트라베 넘베 원"이라는 시는 어떻게 진물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 작품에 더욱 다가 갈수록 더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가다머는 21세기에 가야 셀란의 시는 이해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도 나는 그 시가 오시에츠키(Ossietzky)의 양칠 컵이나 옛 Kammergericht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 특별한 발굴선은 뮤지엄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60년대에 한창 논의되던 기호학 코드에서의 건축보다 훨씬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다. 거기서

도출된 의미의 탐색은 진행중이지만 그 과정은 이직 신비에

싸여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상적인 도서관에는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이데거의 지적은 옳다. 나는 항상 일상속에 이 不在와 보이드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한다. 뮤지엄의 목표는 관객을 쉽게 끌어 들이는데 있다. 어떻게 하면 유태인의 잔혹했던 역사나 쉔메르크나 아인슈타인같은 위대한 유태인들을 알지 못하는 관객들의 기억을 환기시킬 것인가 ? 그중에는 무명의 사업가, 의사, 저널리스트, 배우,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통일된 베를린과 신생 독일의 새로운 세대들이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이제 태어날 세대들에게까지 이 역사의 비극을 전해주기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건축은 어떤 궁극적인 건축적 체험을 통해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재구축돼야 한다. 건축은 피상적 책임이 아니라 공공에의 텍스트에까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것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사적인 세계와 다르다.

람프냐니 /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작업하면서 학생과 소승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금도 당신은 비서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 조직이 당신 건축의 발전에 자극이 된다고 보는가 ? 그들과 작업하면서 프로젝트의 통제가 가능한가 ? 아니면 그들은 다만 당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기능인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

리베스킨트 / 현시대는 건축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건축사무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 잡혀 있다. 그런 이유로 사무소는 거의 어떤 수준에서 멈춘 채 지루한 유령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사무소는 프로젝트의 수행에 꼭 필요한 메카니즘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프로젝트의 세련된 변형은 색다름에서 기능한 데 기존의 사무실은 너무 인습적인 과정에 대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 건축사무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환각이 끊임없이 만연되고 있다. 가끔 나는 너무 정당하고 책임있은 운영체계에 억눌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날 작업을 위한 자극을 충전 받곤한다. 그렇다고 건축적인 절차같은 전체 시나리오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인습, 진부함, 주저, 연기지연같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명확한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가끔 그것은 너무 평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건축은 원래 지연의 과정 그 자체이지만 그것이 어디서 기원하였는지는 베일에 가려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과정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바삐 서두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협력입체의 바보스러운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숨을 헐떡이며 뛰어다닌다. 영감을 통해서만이 건축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기조차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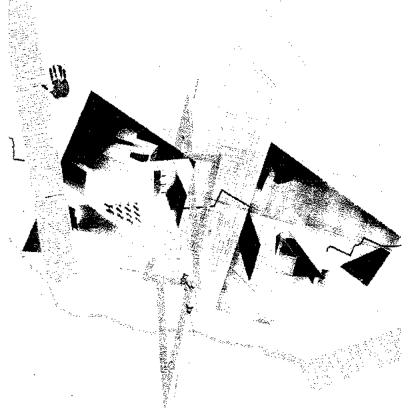
람프냐니/건축사무소는 대개 두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다. 첫번째 유형은 초안인 계획도면을 잡아 나가는 것에서부터 설시도면을 작성하기까지 모두 사무실내에서 처리하는 경우이며 두번째 유형은 알도 로시의 사무소처럼 개념만 잡고 실시도면은 전부 외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키를로 스카르파는 이런 방법을 쓰다 망하기도 하였다. 이 두가지 극단적인 유형중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 디테일에도 관심이 있는가 ? 나는 특히 종이를 덧붙여서 다양한 재료효과를 내는 당신의 모형작업에 무척 흥미를 느낀다.

리베스킨트/나는 로시나 스카르파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나는 모형이나 도면을 건물만큼이나 중요시 한다. 다시말해 모형은 이전 과정의 이미지를 단순하게 반사하는 종속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동동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들 동동성을 촉전시키려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1=1"이라는 하이어라키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나는 건물을 건축의 대체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출구는 어디일까? 그러나 그곳에는 운명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이미 1:50이나 가끔은 1:1의 스케일로 작업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진지할 수 있다면 이미 그곳에는 순수한 개념이라 불리는 구성적 자극의 경험이 내재되어 있다.

람프나니/당신은 모형을 처음 만들때부터 이미 그 건물의 재료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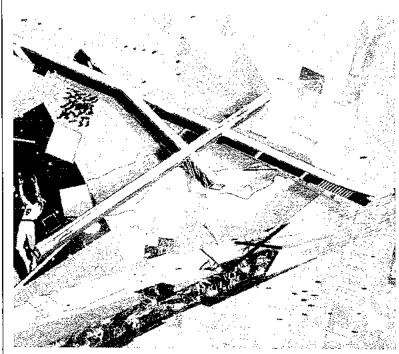
리베스킨트/그렇다. 어떤 점에서 모형은 아이디어의 정수라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재료가 돌인지 아니면 철인지 확연히 말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 나는 가능하면 지상보다는 창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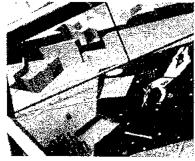
- "미스반 데로에 기념관"
- 🛾 베플린 시티예지(감마모형)
- ❸ "신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계"
- 베를린 뮤지엄(모청단면)
- ಈ 배를린 뮤지엄(배치도)
- ⑤ 배률린 뮤지엄(꼴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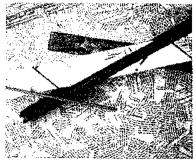


건축하기를 회망한다. 지금 나는 그 같은 수범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그 결과물은 각기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과정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건축의 질조차 변화되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래전에 어떤 현인은 매일 인간은 최고의 정신적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밤마다 그에게 물었다. "오늘 제가 최고의 정신적 단계에 도달했었습니까?" 그 대답이 No일 경우 당신은 깊은 실망에 잠긴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매일 물이나 불의 코드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서 최고의 정신적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축이나 오브제들을 고립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이들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작업해야 한다. 다시말해 건축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물론 건축의 증진을 위해서는 건축자체의 정신적 증진이 먼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기하학의 이중성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 기하학의 지배력은 존재하지 않는 문맥내에서의 시각화를 시도함으로써 소멸되고 만다. 두번째로 이 기하학은 이미 사멸된 기하학의 구현체인 기념비적 문화공간에의 업문을 거부함으로써 유대교 역사의 이해에 기여한다. 그는 쉔베르크의 "모세와 아론" 악보를 깊이 연구한다. 알다시피 쉔배르크는 화성체계의 나뭇가지 주변에 구조를 세웠다. 그래서 그 구조는 자율적인 연관능력을 소진함으로써 "들을 수 없는"관계들을 만들어 낸다. "들을 수 없는(inaudible)"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있어 양심과 우아함의 목소리이다. 그가 보기에 뮤지엄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3막 (Act Three: 여기서 3막은 미완으로 끝나 존재하지 않는 「모세와 아론」의 3막을 지칭한다.)의 리듬에 비례한다. 이것은 "모세와 이론"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쉔베르크의 밀폐된 12음^의 조성체계에 12음표가

주 3) -12음 음계(twelvenotes scale)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 음계. 반음계와 동일한 음렬이지만 반음계가 원음에서 반음 변화되어 사이음이 생기는 형태임에 비하여 12음 음계는 원음, 사이음의 구별없이 전체 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12음의 작곡은 원칙적으로 12반음을 어떤 순서에 따라 배열한 12음 음렬을 되풀어 제시함으로써 구성되는데 이때 12개 음의 순세는 항상 지켜진다. 말하자면 어떤 음이 연주될때 나머지 11개 음이 응렬적으로 제시된 후가 아니면 그 음이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다. 이것은 12개의 반음중 어느 것에도 다른 음보다 우월한 기능을 주지 않기 위한 규칙이다. 이같은 규칙만으로는 약곡이 필연적으로 단조로와지고 발전성이 없으므로 우선 음렬의 성질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화시킨다.

덧붙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그런 쉔베르크의 태도를 베를린에 적용해 보면 확장의 불가능성을 증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리베스킨트가 보기에 건축은 이미 음악이다. 그것이 "들을 수 없는"음악일지라도.

11.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와 빅토리오 마냐고 람프냐니(Vittorio Magnago Lampugnani)의 대담

람프냐니/당신의 건축 유토피아는 대중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아주 은밀하면서 폐쇄적인 공간을 갖는다. 이런 유토피아가 베를린 뮤지엄 중축안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리베스킨트 / 나는 거기서 베를린의 역사가 다양한 각도로 해석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유지엄의 중심공간을 만나는 가능한 방법들을 시도하였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구조체계는 규범적인 기능체계를 부정함으로써 이곳에는 갤러리나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반적인 의미의 공간은 사라지고 이제 당신이 지적한 그런 인상적인 공간만이 존재하게 된다.

람프냐니/배클린 뮤지엄의 내부공간은 톡이한 형상과 특성을 가지고 무언가 침묵속의 명상을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그 건물은 베를린이라는 도시적 랜드스케잌 속에서 매우 강렬한. 상징이 되고 있다. 비명으로 가득찬 현세계에서 당신의 그 우아하면서 강렬한 몸짓은 어떤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것은 오히려 각종 시끌시끌한 선언적 건축으로 가득찬 도시내에 던지는 또다른 절규처럼 느껴진다.

리베스킨트/그렇다. 도시는 이미 어쩔 수 없는 모습들로 가득차 있다. 이미 베를린에도 온갖 문화적, 건축적, 도사적 현상들이 주어져 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특이한 자극이 필요했다. 나는 도시 곳곳에 산재하는 상상력을 결여한 그 "어떤 것"을 또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건축은 그 건물주변에 존재하는 기존의 형식, 공간, 기능들과 그것에 모순되는 형식, 공간, 기능들간의 대화이다. 건물의 특별한 임무는 결정과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아내는데 있다. 그 둘 사이에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예를들어 초기 그리스 시대의 음악이나 원주민의 음악들은 대개 터무니없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시작되는데 이를테면 교향곡은 상호소통을 위해 그 음악의 정점을 향할수록 마지막 음표는 고요함으로 화귀함으로써. 상호소통의 가능성이 대응한다. 역으로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마지막 코드의 길이를 짧게 줄이게 되면 당신은 그 교향곡을 들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회귀(return)"의 계기를 갖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그 교향곡을 삭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음악의 목적이다. 그로인해 비음악적인 만족감을 주는 정적감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건축에도 적용된다.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침잠되어 있는 무용성을 소생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일종의 자멸적 메카니즘으로 우리는 그런 예를 알도 로시나 존 헤이덕의 건축에서 볼 수 있다. 건축은 본래적으로 침식(corrosion)을 계속한다. 그로인해 건축은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그 침식성은 사물을 통화시켜가는 기법의 하나이다. 또한 그 기법이나 기예가 정당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경화현상을 촉진사킨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종말을 향한다고 믿었던 시기도 있었다. 따라서 억압된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숙련된 건축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건축의 종말은 피할 수 없으며 날마다 침식을 계속하면서 자기혁신을 꾀하는 인간과 명상을 계속하는 야행성 인간간의 모순을 해소할 수도 없을 것이다.

람프냐니/이 침식적인 입장은 유태인 뮤지엄이라는 건물용도 때문이기 보다는 베를린 시라는 특수한 장소성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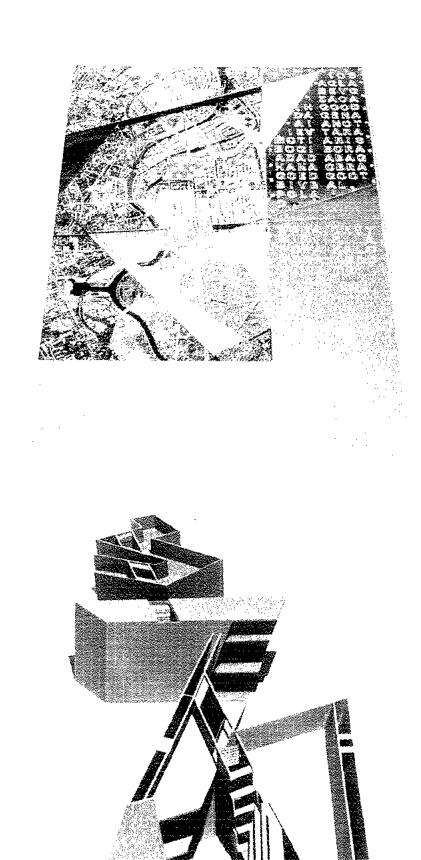
리베스킨트/그렇다. 중요한 것은 유태교냐 아니냐가 아니고 베틀린이라는 도시와 건축이다. 이 침식은 형태의 상징과는 무관하다. 투명한 공간간을 자랑하는 내셔널 갤러리의 작은 유리 정방향이 베를린에서 가장 침식성을 대변하는 건축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 건축에 발을 들여 놓아본 사람들은 무언가 격별한 방사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무 고상하거나 억압적인 건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너무 합리적이고 타협적이고 편의적인 정치적 형태들은 자나친 "공격성"을 띠게 되어 결국 자신의 발작적인 에너지를 내보이고 말것이다.

람프냐니/미스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보이는 격렬함(violence)과 베를린 뮤지엄의 격렬함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리베스킨트/다르다. 우선 시기적으로 다르다. 나는 그같은 경험들이 건축을 변형시킨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건축의 발견과 창조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또한 사람이 건축에 접근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한다. 이것은 기의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듣거나 새로운 경험을 들게되면 그것을 구체화하려고 애쓴다. 언어를 갖지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은 거의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그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비를 결코 알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결여한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건축을 이해하지 못한다.

람프냐니 /베를린 사티에서 당신이 애정을 갖고 보여주려한 것은 무엇인가 ? 이를테면 미스가 내셔널 갤러리에서 보여주려한 것과 유사한 것인가 ?

리베스킨트 / 그렇다, 베를린 뮤지엄같은 프로젝트는 쉰벨이나 발터 밴자민, 호프만같은 "베를린"의 상징을 만들려 노력했던 사름들의 생각을 공유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같은 시대를 초월한 선각자들과의 비판적인 깊은 대화없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급급했다. 모든 뛰어난 건축가들은 시대를 초월한 비밀스런 대화를 끊임없이 계속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베름린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수량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불가측성은 역설적이게도 언제나 가축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그 빈 공간은 계속 또다른 계측들을 만들어 왔다. 이를테면 그것은 제로라는 숫자가 처음



개정 건축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 13,655 조

◇ 建築法施行令 改正理由

건축법이 전문개정(1991. 5. 31. 법률 제 4381 호)됨에 따라 하기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율·용 적률 및 높이제한등의 법위 및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반내용별 이행장제금의 급액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읍·면지역에서 허가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창고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에는 충전의 60제곱미터이하에서 100제곱미터이하로,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마터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제11조 제1항).
-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급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은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숙 제 11조 제 2항).
- 다. 철근콘크리트구조동의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지금까지는 기초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와 단열재시공이 50퍼센트의 공장에 이른 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 5개중마다 바닥슬래보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에도 중

- 간검사를 추가로 발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令 제16조 제1항).
- 라. 사장등이 건축하가 ·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현장의 조사 나 검사등의 업무를 일정한 용도와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로 하 여급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그 대상을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현재곱미터 미만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주가 관청에 직접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수 제 20조).
- 마.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방식을 지급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급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의 성 각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기타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외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속 제65조).
- 마, 주요 건축기준중 건폐율·용적률·일조등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 한등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임(숙 제78조·제79조 및 제 86조).
- 사. 건축물의 높이를 대지가 전하는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로 하되. 토지의 고도 아용이 필요한 구역안에서는 전면도로폭의 3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조해로 성하 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숙 제85조).

〈법제처 제공〉

건축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총 칙

제 [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암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 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 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 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을 말한다.
-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 는 것을 말한다.

-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애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 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 기는 것을 말한다.
-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 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라. 자봉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채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바,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 색채 또는 답장을 변경하는 것
- 7.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 · 차연석 · 인조석 · 콘크리트 · 아스팔트 · 도자기질재료 · 유리 · 기 타 야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 8.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 가. 철망모르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마터 이상인 것
 - 나,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

- 터 또는 회반축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 다. 시멘트모르터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 라,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 마. 두께 2.5센타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바,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 사.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사형 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 되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기 행하는 품 절검사에 합격된 것
-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 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기.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으로 판

정되는 것

- 나.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 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 이 확인되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 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기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 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규모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 13. "용도"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함계의 50퍼센트미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 건축물의 설비 ·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의 용도
-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예 의한다.

- 제 3조(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도지 등) ①법 제 2조 제 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2. 지적법 제 18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 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나하다.
 - 가. 각 꾈지의 지번자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 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 4.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동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 5. 법 제 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②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충 높이의 3분의 2(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③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가진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 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로서 두째가 10센티미터야상인 것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 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그 바름바탕을 불 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 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의 두 깨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라. 벽돌조에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먹의 경우에는 제 1호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 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4센티미 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제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 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 라.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볼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타미터이 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 는 두계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 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골을 두깨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 나. 현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
 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타미터이상의 철망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5. 보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꼴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골을 두께 6센타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 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것에 한한다) 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청근콘크리트조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 는 석조
-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식조
- 다.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 는 석조

라, 철골조

- 8.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부장 판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 ④법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언정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내의 너비 3미터이상인 도로(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미터야상인 것에 한한다).

2.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길이 35미터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단위 : 미터)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만	2
10이상 35미만	3
35이상	6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
	는 4)

제 4조(적용제외) 법 제 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 33조·법 제 35조·법 제 36조·법 제 36조·법 제 45조·법 제 49조·법 제 65조·법 및 제 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 ·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시설 용지지구
- 2. 시 또는 읍의 지역(섬의 경우에는 인구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 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8조 제 2항 및 법 제 6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 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렁으로 정한 다.

③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사 · 직할시 · 도 · 시 · 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는 지방 건축위원회를 둔다.

-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2.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 8 조 제 2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
 인 및 허가에 관한 사항
- 4, 법 제 3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 정에 관한 사항
- 5. 법 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

지예 관한 사항

- 6. 법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7. 미관지구 ·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히가에 관한 사항
- 8,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다

제6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 1. 주변의 여건을 참작할 때 법령등을 완화하여 적 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 물, 다만, 일부 규정의 완화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 나.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 을 주는 경우
 - 다.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2. 도시계획의 결정 ·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
- 3.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도사저소독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 물
- 4.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
- 5. 법 제 36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 게 된 대지

②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의 기순에 따라 건축조레가 정하는 비에 의한다.

-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중 축 또는 개축은 종전의 규모를 초파하지 아니함
 건
- 2. 제 1 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할 것.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 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아니한다.
 - 가. 건페율 : 10분의 9이하
 - 나. 용적률 : 당해 지역 ·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 률의 2배이하
 - 다. 대지면적기준 : 당해 지역 · 지구에 적용되

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 라. 대지안의 공지: 0.5미터이상으로서 범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 의 1이상
-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제 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법 제 7조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의 건축물"이라 함은 충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 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시장등은 법 채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휴양자역 과 개발촉진지역중 시설용지지구
- 2.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 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0 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ㆍ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 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장등이 지정ㆍ공고한 구 역을 제외한다.
- 3.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시장등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건축허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하기 전에 미리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조와 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중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충수가 4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 2. 층수가 21층이상 41층미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 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 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 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국보·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중 건설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 의하여 지정하는 보물동의 보호구역의 경제(보호 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축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 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한다)의 건축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시장등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해 의하여 건축하가동을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하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10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건결정에 관한 업무
-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관한 업 무
- 3. 법 제 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현 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
- 4.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등이 주 민의 편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 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

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건축신고) ①법 제 9조 제 1항 제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옵·면지역(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구역을 제외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를 말한다.

②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밝한다.

- 1. 연면적의 함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야하의 범위안에서 중축 하는 건축물
- 3. 건축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 게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 ③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2조(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중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도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중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 ③범 제 10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하다
-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 터이하인 경우
- 2. 대구선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0.5미터이하로서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제9조 제 1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3조(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 12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 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 외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할 것
- 3.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 제 14조(용도변경) ①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혁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1 각호 각목간(제 4호 각목간의 경우와 제 5호 각목간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용도변경
- 2. 전용주거자역안에서의 별표 1 제 4호 각목간의 용도변경
- 3. 전용공업적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간의 업종에 관한 용도면경
- 4. 일반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간의 업 종에 관한 용도변경
- 5.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②범 제 18조 및 법 제 29조의 규정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 인 용도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법 제 19조

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제 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정자에서 건축을 허가함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 님 것
-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임 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3층이하일 것
-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5. 공동주택·판매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6, 도사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 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ㆍ범 제44조ㆍ범 제47조 및 법 제49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 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 34조 내지 제 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법 제 15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채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 장등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2. 시장등이 도시미뫈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 축물 및 공작물
-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5. 시장등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 생에 지장이 없는 것
-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갸설건축물 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7. 조립식구조로 된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것
- 8.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시무 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
- 9.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 ·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 곱미터이상인 것
- 11. 농업용 고정식온살
-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 16조(중간검사) ①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 를 침부하여 시장동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조적조 또는 보강콘크 리트블록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게 된 때
 -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나, 단열시공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공정에 달하였을 때, 다만, 단열재가 사용된 벽·가둥·바닥·보·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5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5개층마다 바닥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라. 공동주택이 아닌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지 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②건축주는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물이 많이 나오는 대지에 건축공 사를 하는 경우 기타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간검시를 함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이상으로 나누어 중 간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 청은 중간검사예정일의 3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검사예정일에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아 하다.

⑤중간검사의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17조(임시사용의 승인선청등) ①건축주는 법 제 18조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 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실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가준에 직합 한 경우에 한하여 임사사용을 숭인할 수 있다.

③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등은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동으로 인하 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8조(표준설계도서등) 법 제 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사용한 설계도서는 건축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다

제 19조(공사감리) ①법 제 2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법 제 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법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등"이라 한다) 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그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동 의 공사
-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 다)의 건축등의 공사
- ③법 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는 건축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 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 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과 4층이하로서 연면 적이 2천재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조사ㆍ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 조사 및 검사
- 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다. 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 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라. 기타 건축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건설부량이 정하는 사항
- 제1호외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대행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긴설부 령으로 정한다.

제 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사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3장 건축물의 유지 · 관리

제 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 26조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물"이라 함은 충수가 1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관리하는 건축물과 방산시설 및 주택건설촉 진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 24조(건축지도원) ①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등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②제 1 항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주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시공역부의 확인 · 자도 및 단속
-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동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지도 및 단속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제 25조(건축물대장) 법 제 29조 제 1 항 제 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 56조 및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 법 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 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 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 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 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 26조(대지조성시 안전조치) 법 제 30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 상으로서 높이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 치한 건
- 2. 응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 크리트구조로 할 것
-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4. 용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 의 높이등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 합하게 함 것
- 제 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마터이상인 대지(음·면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식수등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등 조정에 필요한 바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충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 재곱미터이상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충수가 11 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 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 역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 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 33조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 · 공원 · 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시 장등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 축조례로 정한다.

-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할 것. 이 경우 건축 물의 연면적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이상 의 도로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길이이상을 접하여 야 한다.
- 2. 판매시설 · 위탁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 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길 이이상을 접함 것

제 29조(도로안의 건축제한) 법 제 34조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견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물과 건축물간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 는 건축물
- 2. 승차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 3. 공공용차양시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 물

제30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법 제2조 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경우 그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를 기재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②범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
- 2.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태

3.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폐지 또는 변경 에 대한 동의서

제 31조(도로모통이에서의 건축선) 법 제 3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통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등이 부분의 건축 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나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도로의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	
교차각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는 도로 의 너비	
000 = 1 = 1	4	3	6이상 8미만	
90° 미만	3	2	4이상 6미만	
90° 이상	3	2	6이상 8미만	
120° 미만	2	2	4이상 6미만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 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 38조 제 2항 외 규정에 외하여 충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충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 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또는 기둥과 기둥사 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 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 전을확인하여야 하며,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부 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 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중축(연면적 10분 의 1이내의 중축 또는 1개층의 중축에 한한다) • 일부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 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충수가 16층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범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제 33조(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 야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양옆에 거 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국민학교 · 중학교	2.4 이상	1.8 이상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용 복도		
의료시설의 환자용	1.5 이상	1.2 이상
복도와 기타의 건축		
물로서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	레곱미터이상인	층
,	∥ 있는 복도	

②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 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에 따른 너비로 하여야 한다.

- 1, 그 총의 관람석 또는 집화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5미터이상
- 2.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8미터이상
- 3.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2.4미터이상
- ③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 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바깥쪽 에는 그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복 도의 유효너비는 장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 상, 가운데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한 다. 이 경우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가운데복도식 의 복도는 40미터마다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피난 충(직접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충에서는 피난충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충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피난총의의 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총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식동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증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 곱미터이상인 것
- 2.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유스호스텔 · 외료시설 ·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 상의 총으로서 그 총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3. 공동주택(충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 ·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 4. 제 1 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 35조(피난개단의 설치기준) ①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개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다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라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 흥(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 또는 지하 3 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 1 항의 규장에 불구하고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한다.

③제1 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제37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파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 40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 치하여이 하는 건축물에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광장으로 통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⑤건축물와 5층이상의 층으로서 운동시설·위략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생활권청소년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적통계단의에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때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제 37조의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재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한다.

제 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충의 경우에는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한다.

- 1. 공연·부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및 부도유흥음식 정
-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제 37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건 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 문둥"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 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2.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제료 로 할 것
- 3. 제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4.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 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 5.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 한다)은 방이 들어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변적을 각각 1제곱미티이하로 할 것
- 6.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녀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단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인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옹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7.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②건축물의 바깥쪽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동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계단은 그 개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계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 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 64 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3.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 4.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 도록 할 것
- ③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 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또는 건설 부령이 정하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 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3.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4.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 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외한 조명설비를 할 것 5.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돌어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마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6.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

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7.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 (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있는 유리의 불 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 8. 노대 및 부속실에는 게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동(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9. 견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통하는 출입구에는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율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11.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 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다

제 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① 관람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 단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다면 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1. 각 충별로 2이상 설치할 것
-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 3. 각충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그 충의 관람 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 제 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 3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와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 ②관람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 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 니된다.
- ③제 2 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 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④판매시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마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⑤근린용공시설 ·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이 5천제 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 장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0조(옥상광장등)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반, 당해 노대등에 출입한 수 없는 구조인 경우

②5층이상의 층이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 무도유흥음식점·장례식장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 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1조(소화설비) 건축물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설비를 설차하여야 한다.

제 42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와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 (제 39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보조출구 및 비상구를 초합한다)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효너비를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43조(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①충수가 1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재곱 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너비 3미터이하인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는 너비를 2.5미터이상, 높이를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 33조 내지 제 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 물로 본다.

제 45조(방화애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같

은 건축물안에서는 의료시설 · 아동시설 · 노인시설 · 다중주택 · 공동주택 ·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 외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위락사설 · 공연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숙박시설 · 유스호스텔 · 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련상업지 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②같은 건축물안에서는 노유자시설(야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 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제료로 된 건축물료서 연면적이 1천제곱 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중방화문(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 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확하여야 한다.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직 1천제곱미터(스프 링클러 가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 확할 것

2. 3층이상의 총과 지하층은 총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 링클러 기타 여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 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 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관람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운동시설 · 전시 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2. 물품의 제조·가공 및 운반등을 위한 대형기가 섭비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3. 계단실부분 ·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 (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 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4.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또는 피난층 부분 5. 복흥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 차장의 부분
- 7. 단목주택 · 공관 · 수도장 · 군사시설 · 축사 또 는 식물관련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세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⑥환기 ·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철재로서 천판의 두께가 1.5밀리미타이상일 것 2.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 외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3. 닫힌 경우에는 방황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핰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설부장관이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 47조(화장실등의 설치) ①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 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화장실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구역외의 곳으로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범률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8조(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①높이 3미터 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 한다.

②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마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바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계단의 경사도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⑤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 단·망루용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9조(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 ①계단을 대체 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체부 지유자용 경사로는 유효너박 1.2미터 이상으로서 경사도 1:12를 넘지 아니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을 거친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②제 48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 에 이를 주용한다.

제50조(거실의 반자높이) ①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2.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의 반자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 (노대의 아래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51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참실에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부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명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에 지장이 없는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 52조(거실의 바닥등) ①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는 그 바닥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공중목욕장의 욕실 또는 숙박시설·음식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바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 53조(경개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기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 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 1.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
- 학교의 교실・외묘시설의 병실・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와 침실간의 간막이병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자봉면으로부터의 수직 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 탑ㆍ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 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 · 계단탐 · 옥탐 등보다 높게하여야 한다.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
 학·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 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재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 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 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5 조(창문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56 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 40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첫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 및 자가발전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2.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 축물

3. 체육관, 운동장, 위략시설(무도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 전시시설,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생활권청소년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장 창고사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타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 · 유스호스텔 · 의료 시설 · 아동시설 · 노인시설 · 근린생활시설(의료 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 다중주택 · 공 동주택 · 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 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 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①법 제 4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화 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

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 56조 제 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욋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 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 64조 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 46조 제 4 항 내기 제 6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다

①제 3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 · 광장 ·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 58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 4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 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언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 59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법 제 4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체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 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57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 분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 방 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 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mark>올종</mark> 방화문

2. 추무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 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된 벽 ·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는 3밀리며터이하인 금속망

제 60조(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 42조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제료를 말한다.

- 1.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촉진법 제41조의 규정에 외한 주택자재생산 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건축재료로서 주택건 설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적합 하게 생산한 것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절검사에 합격한 것
- 2. 건설가술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국·공립시합 기관 또는 품질시험대행자가 공업표준화법에 의 한 한국공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힘을 실시하여 한 국공업규격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3.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제 61조(건축물의 내장) ①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거 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들림 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마감을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하여야 하고,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 는 주된 복도 -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 내에 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 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 닥면적(소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 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1. 관람잡회시설 · 종교집회장 · 위락시설 · 전시 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불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 축물
- 2.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 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대화구조 또는 분 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3. 위협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소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발전소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 4.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충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 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실 과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 계단 기타 통 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 62조(지하층의 설치) ①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 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 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 1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하 층	의 면 적
	수도권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구 분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수도권외의 지역
	권지역을 말한다)	_
1. 판매시설·위락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 공연장	바닥면직의 합계의 10분의 1이상	바닥면직의 합계의 12분의 1이상
및 집회장	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	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다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	총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
	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 공 동주 택 · 기숙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사 · 종합병원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1이상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이상
• 전염병원 •	으로 하되, 15층이하인 공동주택	으로 하되, 그면적이 각층 평균바
정신병원 • 요	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각층 평균	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
양소 • 업무시	바닥면적을 넘는 경우에는 각충	총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
설 및 숙박시설	평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으	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로 하고, 16층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 바닥면적의 2	
	배에 성당하는 면직으로 할 수 있	
	다.	
3. 제1호 또는 제2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호에 해당하지 아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1이상	바닥면적의 합계의 20분의 1이상
니하는 건축물	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충 평균	으로 하되, 그 면적이 각충 평균바
	바닥면적의 2배이상인 경우에는	낙면적의 1.5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1.5배에 상
<u></u>	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 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의 용도로만 쓰 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산업하지 아니하다. 제 63조(지하층의 구조) ①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 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 46조의 규정 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 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단의 구조로 할 것
-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재곱미터이상인 총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 를 설치할 것

②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제 1 항의 규정

- 에 의한 기준의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꼴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자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두 께이상으로 할 것
- 가, 충수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 타미터
- 나, 층수가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에는 30센티미터
- 다. 총수가 21총이상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 4. 지하총의 바닥면척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 할 것
- 제 64조(방화문의 구조) ①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율종방화문으로 구분한다.
- ②갑송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5말 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라미터이상인 것 3.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 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로 한다.
-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 밀리미터미만인 것
-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 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 인 것
- 4. 기타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 건설시험소상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자정한 것 ③방화문의 문들은 불연재료로 하고, 방화문이 문 를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 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자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 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장 지역 및 지구인의 건축물

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동)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확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은 다음 기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 1. 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 다
- 2. 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 다.
- 3. 준주거지역 :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 다
- 4. 중심상업지역 : 별표 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 다
- 5, 일반상업지역 :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바에 외한다
- 6, 근린상업자역 : 별표 7에서 규정하는 바에 외한다.
- 7. 유통상업지역 :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 다
- 8. 전용공업지역 : 별표 9에서 규정하는 바에 외한다.
- 9. 일반공업지역 :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10. 준공업지역 :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11. 보전녹지지역 :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바에 외한다
- 12. 생산녹지지역 : 별표 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다
- 13. 자연녹지지역 : 별표 1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제1종일반주거지 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공원안의 건축물) 공원안에서는 자연공 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 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함 수 없다.

제67조(유원지안의 건축물) 유원지안에서는 도 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68조(풍치지구안의 건축물) ①풍치지구안에 서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 · 유지에 장에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 중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대지안 의 조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판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 · 유지에 필 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 69조(미관지구안의 건축재한) ①미관지구안 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판지구안의 대지면적은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대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무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생채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률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상독대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그 설치의 제한·금지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및 색채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을 사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모양 및 색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 70조(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최고고도지 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 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 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최저고도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률 기쳐 시장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1조(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학교·항만·공용의 청사등 도시계 회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 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72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보존지구안에서 는 도시계획법 제 1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제 한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 73조(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①공항지구안 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하다

②세1 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공항지구안의 건축 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 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차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74조(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재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제획의 수립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 75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 18조 제 2 항의 규정에 외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 76조(용도지역내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① 도시계획법제 2조 제 1 항 제 1호 나목의 도시계획 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 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 45조의 규정에 외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계획법 제 20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조정구역 및 동법 제 21 조외 규정에 의한 개발제 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 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 4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정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 · 지구 또는 지구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건폐율) ①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이하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 12. 생산목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 13. 자연독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제4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100 분의 60이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쾌 육은 제1종일반주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건 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④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안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다.
-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 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 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 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
 -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 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자들레 길이의 3분의 1이상 이 도로에 접한대지
- ⑤법 제 4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 에 적용할 전폐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40이상 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시장등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 올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79조(용적률) ①법 제 48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 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 3. 군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 500퍼센트이하
-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 300퍼센트이하
-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 100퍼센트이하

-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인하
-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제4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400 퍼센트이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 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용 적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④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4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 입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 • 방화 및 위생상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 1. 공원 ·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준 에서 갑다) ·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 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 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체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 지안의 건축면적이 [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 ⑤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 광장 ·도로 · 하천등의 공지를 설치 · 조성하여 제공하 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 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건축조례 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 1. 특정가구정비지구
- 2. 아파트지구
- 3. 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한
-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 5. 상업지역

⑥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중 운동장 · 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 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0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 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직의 법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하다
-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머터이상
- 3. 주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제곱미터이상
-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이상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
-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
- 14. 도시계확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제 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와 제 8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60 제곱미터이상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 면적최소한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대 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안의 구역별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세분하여 정 할 수 있다.
- 제 81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 을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୩୪୯୩୭	건축기준의 범위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3미터 (준공업지역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서 건축하는 경우에
200제곱마터이상인	는 1.5미터)이상. 다
공해공장 • 위험물제	만, 전용공업지역 ·
조소 - 위험물저장소	일반공업지역 또는
등 공해 및 위해의 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생이 우려되는 것으	한 공업지역 및 시설
로서 건축조례가 정	용지지구에서 건축하
하는 건축물	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3미터 (준공업지역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서 건축하는 경우에
500제곱먁터이상인	는 1.5미터)이상. 다
창고등 불품의 저장	만, 전용공업자역・
또는 작업등으로 교	일반공업지역 또는
통소통에 장애가 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l .

례가 정하는 건축물	용지지구에서 건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2미터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이상인 판	
매시설·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 전시	
시설 및 종교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	
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3미터이상 (아파트에
	한한다)
기타 도로의 기능을	l미터이상
저해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2미터(준공업지역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서 건축하는 경우에
200제곱미터이상인	는 I미터)이상. 다
공해공장 • 위험물제	만. 전용공업지역·
조소 • 위험물저장소	일반공업지역 또는
등 공해 및 위해의 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생이 우려되는 것으	한 공업지역 및 시설
로서 건축조례가 정	용지지구에서 건축하
하는 건축물	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1미터이상, 다만,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심상업지역 · 일반상
천제곱미터이상인 판	업지역 · 근린상업지
매시설·숙박시설·	역 및 유통상업지역
관람집회시설 - 전시	에서 건축하는 경우
시설 · 종교시설등 다	에는 그러하지 아니
중이 이용하는 시설	하다.
로서 건축조례가 정	
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3미터 (아파트를 제
	외한 공동 주택은 1미
	터)이상
기타 인접건축물의	0.5미터이상
통풍·환기 및 연소	
차단통을 위하여 건	
축조례가 정하는 건	
축물	:

- 3.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용 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대지가 접하는 도 로의 수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동) ①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간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2.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을 재외한 부분 3. 제 1호 내지 체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②법 제 51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제83조(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안 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에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 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높이 11미 터이하인 건축물

제8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자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받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부분의 권축물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 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 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최용하는 경우에는 건 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①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51 조 및 법 제 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 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 제1

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 제52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립상업지역 및 유통상업 지역중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서 건축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지정・공고한다.

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까지 수평거리의 1.5베이상 3배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한다.

제 86조(일조등의 확보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 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 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만, 제 2호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본다)으로부터 다음 각복의 범위안에 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 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지개발예정지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체 2조 제 1호의 규 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도시재개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과 건 설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 절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에 의하여 정남방향 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뛰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 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충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 터 채광을 위한 청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 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가지의 거리의 1.25배야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
- 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 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위생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 환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 설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통력자원부 장관과 혐의하여 정한다.

제 88조(건축설비의 설계동) ①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및 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 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이조에서 "기술사"라 한다)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계설비를 설계하는 자는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 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상태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 제1 항외 규정에 외하여 충수가 6층이상으로서 연면 적이 2천제곱마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충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4대이상의 승용승강기 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중 근린공공시설 · 외 료시설 • 업무시설 • 판매시설(연면적이 5천제곱 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 판광호텔 • 공연장 • 관람장 • 도서관 • 직업훈련소 • 전시장 • 신문사 • 방송국교연구시설 • 공장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 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하는 승용승강기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를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규모 및 구조동은 건설부령으로 정하 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 5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 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 이상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 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 에 1천500재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 다 1대씩 가산한 대수야상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 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 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 및 그 승강장 의 구조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산업안전보건 애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 91조(바상급수설비의 설치) 연면적이 5천제곱 마터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 5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I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라다.
-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
- 2.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투수성 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 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포함 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 하다고 지방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인정하는 건축
-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 4.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 00조(형과생님) 제 환수방생성 - 인망생성 - 인

제 92조(환기설비) 관광숙박시설 · 위락사설 · 관 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마터이 상인 대중음식접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 · 조리장 · 관람석 · 집회실 및 석 당등에는 건설불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93조(난방설바등) ①공동주택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람집회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하지 아니함 수 있다.

②골프장 및 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4조 (배연설비)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 회사설 · 종교집회장 · 장례식장 · 운동시설 · 위 락시설 · 전시시설 ·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관광휴게시설 • 판매시설 • 숙박 시설 • 유스호스텔 • 의료시설 • 아동시설 • 노인 시설 • 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건설부팅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5조(위생설비) ①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 관람집회시설 · 전시시설 · 윤수시설 · 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 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전용변소가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 인 충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②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 화장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하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판광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①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 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
- 제 8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 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 3.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련공공기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연면적 5천제곱미 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관광호텔, 공장, 방송· 통신시설 또는 공중화장실
- ③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관립 합치시설 및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기존전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

준은 건설부렁으로 정한다.

제 96조(오수정화시설등의 구조) 건축물에는 오 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97조(비상조명장치) 건축물에는 비상조명장 치로서 소방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 • 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98조(구대통신선로설비등) 건축물에는 체신 부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99조(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 ①공동주택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판매 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공동시청안테나외에 텔레비전수상안테나를 옥 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배관 및 선로 설비를 갖춘 공동신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청안태 나의 설치기준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0조(배관등의 설치) ①연면적이 500제곱미 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땅속에 설 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자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전기설비용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 입이 용이하도록 배판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 과 전기설비용수전실의 확보공간등은 건설부렁으 로 정한다.

제 101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 충수가 3층이상 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마터이상인 건축물(창고 시설ㆍ주차장ㆍ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 깥쪽으로의 출구 또는 경비실이나 그 부근에 체신 무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수취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 102조(국기계양대의 설치) 중심상업지역 • 일 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및 미 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3 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국가 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 이 10미터이상의 국기계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3조(피뢰설비) 높이 20미터이상인 건축물 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뢰설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4조(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등의 확 보) ①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 는 관람장은 다음 표에 의한 지체부자유자가 이용 할 수 있는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 자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공연장 또는 관람장에	지체부자유자
설치하는 관람석의 수	전용관람석
500석이상 I천석미만	3석이상
1천석이상 3천석미만	5석이상
3천석이상 1만석미만	10석이상
l만석이상	15석이상

②건축물에 지체부자유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동시 설의 안내를 위한 표지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8장 도시설계

제 105조(도시설계의 작성기준) ①법 제 6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 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1. 당해 구역의 위치 및 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 대한 고려할 것
- 2. 장래의 도시개발방향 및 목표가 제시되도록 함
- 당해 구역안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문화 적 ·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것
- ②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 6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서류 및 도면을 건설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시설계의 작성목적과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
- 2. 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구역의 현황
- 3.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 4.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 한 교통처리계획
- 5.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및 색채등 에 관한 규제계획
- 6. 도로・상수도・하수도등의 실치계획 및 에너 지공급에 관한 계획등
- 7. 내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 8. 기존건축물의 처리 및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9. 제 3호 내지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
- 10. 대상구역이 포함된 지역의 도시계획도
- 11. 법 제 6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그 의견의 처리 결과
- 1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세 부작성기준 및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106조(도시설계의 변경) ①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도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 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주민의 공 람 또는 공청회와 건설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치. 해 관람석에 이르는 통로는 경사로등 지체부자유 🕴 지 아니하고 도시설계작성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 🕴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법 제 62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은 재 1 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변경절차에 이를 준용

제 107조(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등) ①법 제 62조 제 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합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구의 개발에 관한 허가 • 인 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②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6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 의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 1. 도시설계의 내용에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2, 도시설계의 내용에 자동차의 주차장 또는 보행 자의 통로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2 필지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
- 3. 도시설계의 목적상 합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108조(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법 제 6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 1. 대지의 일부를 보도 · 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 하거나 건축물안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 공공지로 제공된 면적 또는 건축물안에 설치된 조 경면적의 3분의 2를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산입한다.
-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이 지 정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어 지정된 경우 또는 층 수가 제한된 경우에의 건쾌율은 당해 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 · 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의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10분의 2 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 4,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된 경 우에는 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예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도시설계에 의하여 합벽개발을 하도록 한 경우. 와 공동주차장 또는 보행자통로가 지정된 경우 그 공동주차장 또는 보행자 통로와 접하는 대지의 경 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2를 기산한 높이로 한다.

제 109조(도시설계지구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 ①법 제 6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작성 자는 도시설계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 1.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 우로서 대형건축물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
- 3. 2필지이상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 터이상으로서 당해 대지의 소유자가 1인이거나 2 인이상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합의한 경우
- ②세 105조 내지 제 108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설계구역의 지정절차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110조(공동주차장등의 설치) ①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로로 구획된 지역안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밖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자밖의 부설주차장 또는 공동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등이 당해 도시설계지구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동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밖의 공동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111조(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법 제 6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구역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한다.
-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이상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③법 제 6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 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법 제 6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당해 구역의 녹지공간의 확보와 특색있는 건물외관 및 단지구 성·스카이라인의 변화등으로 도시경관의 향상이 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④건설부상관은 법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건설부장관은 법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동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주택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조건 및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 112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법 제 6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 (이하 "특정가구정비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한다)로 구획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당해 지구에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2.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야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함 것
- 3.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부득이한 경우로 서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 ·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 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 3. 특정가구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인근구역의 지역 · 지구 및 도시재회시설을 표시한 도면
- 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기존건축물 의 현황과 이외 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 3.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기존건축물 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 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 ④시장등이 특정가구정비지구의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이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계획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제 2항 및 통조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시장등은 법 제 6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건축계획의 개요
- 2. 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 3.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에 의하여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말한다)하여야 할 기간
- ⑥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 5 항 제 3 호 의 규정에 의한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 간내에 건축에 관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동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 토지 및 건축물

- 의 소유자가 법 제 66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침부하여 시장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사장등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 여 시 · 도지사에게 이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등은 기간을 정하 여 조정신청인외의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외 외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관계 토 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 다.
- ⑩시·도지사가 법 제 6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조정신청 인과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정의 결과를 관할 시장등에게 통지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이를 거체없이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다.
- 제 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 6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 는 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 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인에 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③제 I 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에는 건의자 ·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디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④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 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 제 47 조 및 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쾌 율 및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용 적률의 1.2배야하
- 2.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꽁지는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공자기준의 5분의 1이하
-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가준의 1.2 배이하
-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지면사정으로 인하여 7월호에 계속 계재할 것임.

의료시설 계획

The Planning of Medical Facilities

새로운 의료시설의 영역, REHABILITATION 部門에 관하여

鄭賢和 / (주)원도시건축 · 공학박사 by Cheong, Hyun - Wha

우리사회에서는 「Rehabilitation」이 흔히들 수족의 운동기능의 회복훈련을 지칭하는 「물리치료」, 「물리요법」, 또는 「이학요법」 등의 협외의 외미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로서의 리해빌리테이션이란, 심신장애를 갖게된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보통상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과정 전체를 의미하고있다. 그 과정의 제1단계가, 치료의 초기부터 일관되게 행해지는 의료로서의 리해빌리테이션이며, 의료시설체계의 최일선에 있는 병원이 맡지않으면 안될 중요한 의료영역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의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은 단순한 의료의 부가적 서비스부분으로서가 아니고, 새로운 의료개념에 기초를 둔 진료조직체계의 중심적인 부문으로 그 위상을 정립시키지 않으면 현대의료가 요구하고 있는 포괄직 외료의 실질적 달성이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금후 의료시설은 단순히 병의 치유라는 1차적 의료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병후의 장애로부터 사회복귀까지를 담당하는 리해빌리테이션의 요구에 대응해야만 할 시기를 맞게 될 것이므로, 의료시설계획사에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의 건축적 요구도 증대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금회에는 리해빌리테이션 시설의 개념과 건축계획적 요건들을 정리하여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새로운 의료시설의 영역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전하고자 한다.

1. 리해빌리테이션 의료의 이념

리해빌리테이션이란 중세에는 종교적 외미를 갖고

있어서「破門」으로 부터의「復活」이란 의미로 넓게는 명예의 회복을 의미하였다. 현대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회복, 다시말하면「全人間的 復權」을 의미하는 단계로 확장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라해빌라테이션이란 단순한 장애자의 기능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닌, 넓게는 인간성의 부활을 이념으로 하고있다. 장애자의「전인간적 복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학, 교육, 직업, 사회적인 4개의 영역의 리해빌라테이션의 종합적인 실시가 필요하게 된다. 병원의 리해빌라테이션기능이란 이러한 이념에 기초를 둔「의학적 리해빌라테이션기능이란 이러한 이념에 기초를 둔「의학적 리해빌라테이션」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소프트웨어적 첨단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적 리해빌라테이션은 선천성장애, 뇌졸증 등의 뇌혈관손상에 의한 중추신경마비, 두부손상에 의한 마비, 착추손상에 의한 마비, 관절증 및 류마티스 등에 의한 신체부자유, 정신질환후유증 등 거의 전 절환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것이며, 리해빌리테이션사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질환」이 아니고 「장애」로서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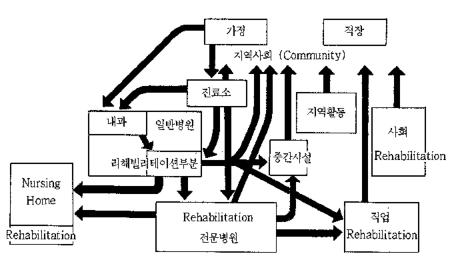
- 1) 기능장애(impairment)에의「차료적」 Approach: 마비·고차기능장애의 회목촉진, 합병증의 예방 등 의학적 Approach.
- 2) 능력장애(Disability)에의「적응적」Approach: 피할 수 없는 후유증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응시킬 것일까? 라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Wheel chair 장구, 보조구 등 도구를 사용하여 일상생활동작의 확대를 도모하는 Approach.
- 3) 사회적 불리(Handicap)에의「환경개선적」 Approach: 후유증에 의한 사회적 불리를 수용시키기 위한 환경개선으로 가옥개조, 가족지도로부터 직업적, 사회적 불리를 극복시켜 사회복귀에 이르게 하는 Approach라고 말할 수 있다.

「全人間的 復權」으로서의 리해빌리테이션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불리(Handicap)까지를 극복시켜 장애자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2. 리해빌리테이션의 흐름과 지역의료성

앞에서 말한 이념에 비추어 볼때 마비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좋은 상태」로 지역사회에 되돌려 보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를 지역사회(가정ㆍ직장)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장애를 갖게된 환자가 입원중에도 휴일에는 자택에 외박을 시키고, 가족과 친구의 문안도 간단하게 가능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원시켜 외래환자로 훈련 및 지도를 계속할 수 있는 조건, 또는 가옥개조 및 가정에서의 생활지도를 위해 리해빌리테이션ㆍ스텝이 가볍게 가정방문을 갈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해빌리테이션병원을 전문특수 병원화하여 온천지 등에 설치한다든지, 지역사회와 격리시켜서 구체적인 사회복귀목표를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훈련을 위한 훈련 r만을 행하는 것은 handicap의 경감보다도 impairment의 치료에 치중하는 것으로 「빼앗긴 기능에의 집착」을 강하게 할 뿐, 리해빌리테이션의 진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물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다 세운 리해빌리테이션 전문병원도 필요하지만(약 1할의 환자에게 있어서), 환자의 주거에 근접한 도시 또는 최소한 주변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상생활권에서의 리해빌리테이션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근린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초기적 리해빌리테이션이 행하여지고, 상위시설인 종합병원에는 충실한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이 설치되어. 기본적 리해발라테이션의 과정부터 보다 충실한 리해빌리테이션의 과정까지가 포괄적으로 실행되어져야만 한다는 점이 지역의료로서 성립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뇌졸중 리해빌리테이션의 경우는 급성기로부터 침대위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까지 다양한 病態의 환자가 존재하며. 뇌졸중환자의 제발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급성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뇌졸증 리해빌리테이션은 발병직후부터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급성기 리해빌리테이션이란 장애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근육위축, 관절의 고착등. 2차적 장애를 방지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보면, 급성기를 담당하는 일반병원과 만성기의 리해빌리테이션병원이 기능적인 연게가 불충분한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뇌졸중 환자에게 사회복귀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도 일선병원, 특히 내과계 병원에 어느 정도의 초기적 리해빌리테이션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의 기능 연계와 사회복귀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제도적 정비는 긴급을 요하는 과제의



[표 - 1] 리해빌리테이션의 흐름

하나이다.

3. 리해발리테이션의 수요예측

의료계획의 전제조건은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전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의료자원의 체계적 배분을 도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의료의 Sub — System인 리해빌리테이션도 의료 서비스제공의 지역적 단위를 설정하고 단위별로 발생하는 수요를 질적 · 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리해빌리테이션의 수요예측에 관한 필자의 연구결과를 정리해본다.(1982년 日本 三重縣을 대상으로)

인구 30만의 三重縣에 대해 전병원입원환자 4,800명과 전병원외래환자 22,232명, 계 27,032명의 카르레를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중 1,850명(38.5%), 외래환자중 1,953명(8.8%)가 운동장애를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리해빌리테이션을 필요로하는 입원환자는 1,650명(34.4%), 외래환자는 1,571명(7.1%)으로 전체환자의 11.9%가리해빌리테이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復病大分類인 18疾病別로 리해빌리테이션의 필요도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높은 질병이 「착추손상 및 중독」으로 대상환자의 86.9%, 「근육골격계, 결합조직 질환」이 82.1%, 「순환기 질환」이 50.7%, 「신경계, 감각기질환」이 42.5%, 「신천이상」이 29.3%의 환자가 리해빌리테이션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임신, 분만 및 합병증」, 「주산기에 발생하는 병태」, 「보건 서비스」를 제외한 전 질환에서 리해빌리테이션의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인구 10만에 대한 리책빌리테이션 환자수를 추계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숫자로 復病18大分類별 환자수의 예측이 가능하였다. 人口 10만당 리해빌리테이션환자수

=P × (370,08 ± 41,71) : 총수(인)

 $=P \times \Sigma A$

=P×∑(3.7 ± 1.5) : 감염증 및 기생충증

(8.7 ± 4.4): 신생몰질

(4.° ± 1.°): 내분비, 영양, 대사질환

(0.1 ± 0.1) : 혈액 및 조혈거질환

(28.6 ± 6.2) : 정신장해

(30,4 ± 6.9) : 신경계, 감각기질환

(134.4 ± 20.8) : 순환기 질환

(3.7 ± 1.2):호흡기 질환

(9.9 ± 2.5):소화기 질환

(3.7 ± 0.7) : 비뇨생식기계 질환

(0,6 ± 0,3): 피부, 피하조직의 질환

(69.º ± 18.²) : 근육골격계, 결합조직질환

(3.9 ± 2.6) : 선천이상

(0.6 ± 0.3) : 증상, 정후, 진단명 불명

(65.7 ± 12.3) : 손상 및 중독증

(보기) P : 지역의 총인구수 / 10만

A: 復病분류별 인구10만당 리해빌리테이션

환자 발생수

± :표준편차

물론, 日本의 의료조건 및 절병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정확한 환자의 정보가 파악되어있는 의료통계에서 분석된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환자의 정보가 파악되기 힘든 (특히 순환기질환에서 발생하는 중풍환자 등의 데이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볼 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인구 10만 단위의 시설수요를 정하는 지역의료사설계획의 지침으로 광역의료권에 있어서의

Room	Cubicld	Equipment
1. 기능훈련	1. 고정식운동	起立훈련용, 상지훈련용
Ì	2. 가동식운동	坐立훈련용, 일반훈련용
	3. 체조	매트, 기울
2. 온 열요법	4. 온열요법	핫팩, 파라핀욕
3. 전기치료	5. 전기치료	초단파, 초음파, 저주파
	6, 광선치료	적외선, 자외선
4. 맛사지	7. 땃사지	처치대, 결상, 커텐
5. 水치료법	8. 전신 요중운동	운동욕, 하바드 탱크
	9. 부분욕	상체, 하체, 와류욕
	10. 갱의	로커, 세수
	11. 공작기가	목공, 금공, 작기
	12, 도구수작업	테이블, 작업대, 점토
	13. 게임	탁구, 대형, 트럼프
7. 일상생활동작	14. A. D. L. 보드	A, D, L, 보드
	- 15. 홈 마비네 먼트	모델, 키츠비트
	16. 거실	걸상, 테이블
8. 진료실, 수부	17. 수부, 기록	
	_, 18, 진료	
	19. 대합코너	
9. 갱의, 세면, 변소	! 20. 갱의코너	
	21. 세면, 번소	
10. 수납	22. PT. OT · 창고	

(기타)

11. 사회질병부 12. 회의실 13. 심리요법 14. 난청언어치료실

15. 弱視지도실 16. 義肢제작실 17. 옥외훈련장

[표 - 2] 리해발리테이션 부문의 제실과 설비

리해빌리테이션 시설공급계획과 정비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4. 의학적 리해빏리테이션 · 프로그램과 목적

의학적 리해벌리테이션의 치료 • 훈련 내용을 발병으로부터 사회복귀까지의 과정으로 나타낸 것이 (표 - 2)이다. 여기서 가장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종합적 팀ㆍ이프로치가 필요한 중증의 환자를 예로 들었다. 표에서 표시한 것 이외에도 입상심리(지능과 심리적 평가와 심리요법), 직업카운셀링, 정신의학적 진찰, 내과적투약, 처치, 정형외과직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너무나 복잡해서 여기서는 생략 하였다. 그 결과 PT(이학요법), ADL(일상생활훈련), OT(작업요법), ST(언어요법), SW(Social Work)의 5가지가 리해빌리테이션시설의 기능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훈련 및 요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 리해빌라테이션시설의 건축계획시에 각 시설 단계별 기능의 설정시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기초적 리해빌리테이션」만을 필요로 하는 일선병원일 경우에는 이학요법(PT)만을 설치하고, 「충실한 리해빌리테이션」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에서는 이학요법(PT) +일상생활훈련(ADL)을, 「종합적인 리해빌리테이션 (을 실시하는 리해빌리테이션 전문병원과 뇌졸중 전문병원에는 마비장애와 언어장에가 복합된 환자가 치료ㆍ훈련을 받게 됨으로 거의 전 기능이 필요하며, 정신병원은 작업요법(OT)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등 시설계획의 요구조건을 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연구철과에 의하면 리해빌리테이션 치료 · 훈련의 목적의 규정요인은 전 장애자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행훈련」, 「근력증강」, 「관절가변역 훈련」 이냐 질환에 따라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훈련이냐에 따라 「공통 또는 특수성」의 성격에 의하여 구별되며, 한편으로는 초기적 싱격이 짙으냐 사회복귀성이 짙으냐에 따라 「초기성 또는 사회복귀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가지 성질에 의하여 시설이 대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훈련 내용을 목적별로 구분하면

가) 통증경감, 부종개선 등의 물리적 목적, 나) 체력증강의 목적, 다) 기본적인 목적, 라) 기립, 보행능력향상의 목적, 마) 작업능력향상의 목적, 바) 특수훈련의 목적, 사) 사회복귀지도의 목적 등 7개로 대별할 수 있었다. 그 실시의 방법은 가) 필수적인 것, 나) 보조적인 것, 다) 간헐적인 것의 3개로 분류되었다.

5 리해빌리테이션시설의 종류

병원에 있어서의 리해빌리테이션 부문의 설치형태는 그 지역사회의 Need 및 그 병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된다. 각각의 병원의 리해빌리테이션 부문은 리해빌리테이션시설 전체계의 배차계획에 따라 게획되어, 환자의 전 시설체계내에서의 시설간 이동 및 협력이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조직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힐버어튼법(Hospital Survey and Construction Act)에 의한 리해빌리테이션시설의 종류는 다음의 4가지로 규정되어있다.

가) 병원에 부속되어 다종류의 기능장애자를 위한 리해빌리테이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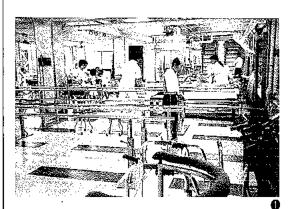
나) 독립하여 있으면서, 외래·입원의 부문을 갖고. 다종류의 기능장애자를 위해 만들어진 리해빌리이션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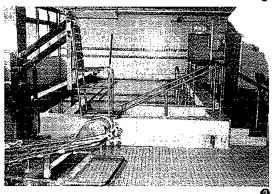
다) 독립하여 있어서, 외래부문만을 갖고, 다종류의 기능장애자를 위한 리해빌리테이션 시설,

라) 단일종류의 기능장애자만을 위한 리해빌리테이션 시설.

이 중에서 가)의 형태가 종합병원의 리해빌리테이션 부문으로 리해빌리테이션하에 속한다. 기타, 정형외과병원, 소아병원 등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나)는 리해빌리테이션의료센터, 혹은 전문병원으로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는 통원센터로 외래환자를 위주로 한 경증 리해발리테이션 시설이다. 라)는 전문병원의 리해빌리테이션전차, 특수질환의 리해빌리테이션센터로, 척추손상센터, 뇌성마비센터, 뇌졸중후유증 전문병원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등에서는 원인질환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장애를 갖고있는 장애자들을 모아두는 「수평적 리해별리테이션」방법으로 시설을 분류하는데 대하여 일본 등에서는 뇌혈관장애, 관절ㆍ류마티스, 신경질환 등의 원인질환별로 시설을 구분하는 「수직적 리해별리테이션」방법으로 시설을 분류하고 있다. 금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방법으로 시설체계가 구분될지 현단계에서는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지만 리해별리테이션의 대상이 「원인질환」보다는 「장애」그자체인 것으로 미루어 보다





● 운동요법실❷ 수치료실(운동욕실)

❸ ❷ 작업요법실

@ 0 0 ADL실

「수평적 리해빌리테이션」방법의 시설분류가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6. 리해빌리테이션의 기능 및 평면구성

리해빌리테이션 기능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요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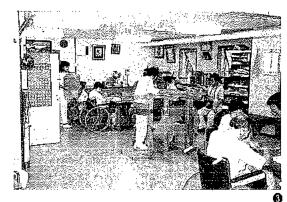
가) 이학요범(Physical Therapy :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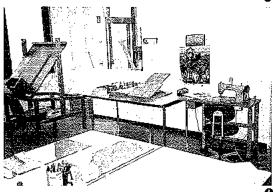
온열, 전기, 水, 광선, 맛사지, 운동 등의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종래의 물리치료를 포함한 운동요법이 중심이 되어있다. 의사의 진단 · 평가 · 처방에 의해 이학요법사(PT)가 처치한다. 日本의 경우 의료보수가준에 PT한사람이 하루 15명의 환자까지의 진료를 인정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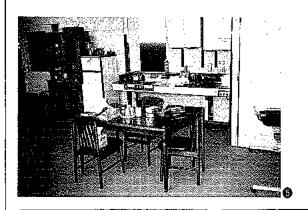
나)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 OT) 작업기능의 회복 특히 손의 기능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PT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기기, 기구를 이용하여 일상작업에 대한 동작의 개선을 목적으로 장시간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반복훈련한다. 전문병원에서는 목공, 수공예, 점토, 게임, 도예, 편물 등의 고차원적 작업훈련도 행해진다. 작업요법은 정신장에의 리해빌리테이션에도 유효하다. 작업요법사(OT) 1인당 1일 40인의 환자이상을 담당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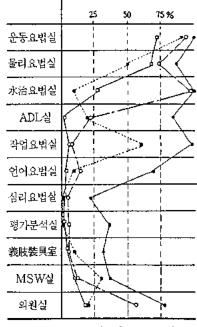
다) 일상생활 동작훈련(Activity of Daily Living : ADL)

리해빌리테이션의 최저한의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가되는것이다. PT, OT, 간호사의 협력으로 훈련이 행해지며 그 내용은 기침동작, 휠체어동작, 용변, 목욕등의 위생행위, 이동, 외출동작 등이 있다. 실제의일상생활의 공간과 같이 만든 방, 부엌, 변소, 목욕탕등의 훈련실에서 PT 또는 OT에 의해 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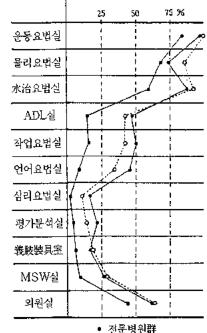








- 기초적 理學요법실
- 理學요법충실형
- 작업요법주도형
- 통합요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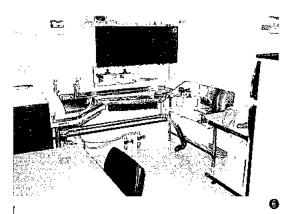
- 신문병원群
- 대규모병원부속형
- 중·소규모부속형



- 입원형
- 입원주도형통원주도형▼통원형
- 25 50 75%
 운동요범실
 목리요법실
 水治요법실
 작업요법실
 작업요법실
 원이요법실
 정기분석실
 청동

 MSW실
 외원실
 - 뇌질환전문병원
 - その地の질환병원
 - 외상형 · 관절증병원

[표 - 3] 시설 성격별 요법실의 소유상황



라) 기타의 메디칼 · 리해빌리테이션

지역의 중심적인 병원에서는 언어장에 및 난청, 약사자의 훈련 등의 기능을 설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요법 및 직업전훈련 등을 포함한 완전한 메디칼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을 갖춘 사설도 있다.

각 요법별 필요훈련실과 설비는 〈표 - 2〉와 같다. 한편, 필자의 연구에 의해 파악된 시설성격별 훈련실의 소유상황은 〈표 - 3〉에 표기하였으며, 140개의 시설에 대해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의 평년도를 기능도로 차환하여 평면구성을 비교검토한 결과, 각병원에 설치율이 비교적 높은 운동요법실 (74.5%), 물리요법실(59%), 수치료실(59.4%), 작업요법실(31%)의 4실의 설치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표 - 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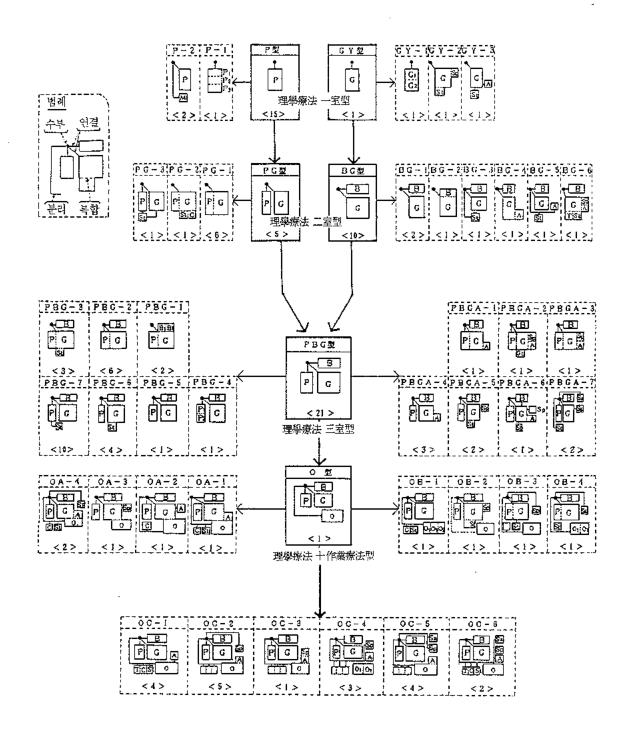
크게, 「P형_(물리요법실만 설치)
「G형」(운동요법실만 설치)
「PG형」(물리요법실 + 운동요법실)
「PB형」(물리요법실 + 수치료실)
「PBG형」(물리요법실 + 운동요법실 + 수치료실)

「○형」(이학요법 + 작업요법실)의 6가지 형으로 분류되었고, 각실간의「연결」,「복합」, 「분리」의 형태에 따라 전부 29시설 형태가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조사대상의 병원중 비교적 전문적 리해빌리테이션 시설의 이학요법실과 작업요법실 기구배차의 일례를〈표 - 5〉,〈표 - 6〉에 전문적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의 전체평면구성의 표준예를〈표 -7〉에 표기하였다.(日本 竹田종합병원 리해빌리테이션部)

7. 규모계획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의 설치가 실제로 가능한 병원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200Bed 이상의 병원이라고 말하여지고 있으며, 그 이하의 경우, 즉 정형외과 또는 소규모 내과병원의 일부는 병동부의 Day — Room 등에 훈련코너를 확보하거나, 물리치료실 1실에서 일상의 치료ㆍ훈련이나, 간호중에 병실에서 리해빌리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직원이나 시설의 채산성이나 이용율면에서 볼 때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120m²정도의 면적이면 〈표 - 3〉에 표기한 Cubicle안에 이용도가 높은 기본적인 function을 수용할 수 있고 PT, OT 등 4명정도의 요법사로 40명정도의 환자에 대해 훈련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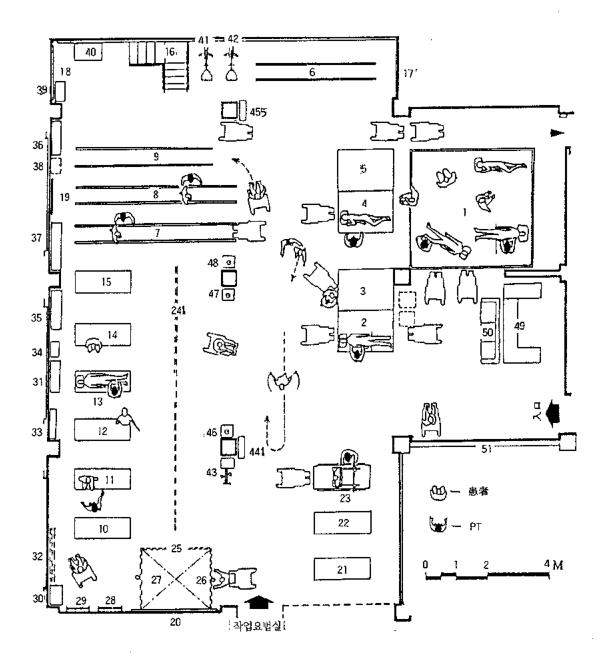
범례 G: 운동요법실 P: 분리요법실 B: 水治療靈 Sp: 언어요법실 St: 직원실 C: 평가분석실 O: 작업요법실 A: ADL 훈련실 Sa: 특수요법실 T:義胺裝具憲 M: MSW실

[표 - 4] 리해빌리테이션부문 평면 구성 일람

일반적으로 중앙 진료부의 6~8%가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의 면적으로 할애된다. 200Bed정도의 병원에서는 중앙진료부가 1,500m²일때 리해빌리테이션부문의 면적은 8%인 120m², 400Bed정도에서는 200m²(중앙진료부 3,000m²의 6.5 %), 600Bed정도에서는 300m²(중앙진료부 4,500

 m^2 의 6.5%), 전문병원일때는 $600\sim1,000m^2$ 정도로 되어있다. 한편 환자수에 의한 리해빌리테이션 면적의 산출근기를 4가지 시설형별로 조사·분석한 결과가 〈 표 -8〉로서,「기초직 이학요법형」이 $3m^2$ /1인, 「이학요법 충실형」이 $4m^2$ /1인,

「작업요법주도형」이 5m² / 1인, 「종합요법형」이 10



1. 매트

2~5. 플랫홈 메트

10~15 치료 Bed

6~9, 평행봉

16. 훈련용계단 17~20. 거울 24. 보행선

25, 오버해드 후레임

26, 27, 견인활차 운동장치

. 28, 29. 助 木

30, 31. 책상

32. 탁구대

21~23. 기립훈련대 33. 아령

34. 특정기

35, 36. 로켓

37. 보행보조기 보관소

38. 지팡이 보관소

39. 소납장

40. 작업 테이블

41~43. 자전거 훈련기

44, 45. 기립훈련대

46, 48. 추활차 훈련대

49. 수부 테이블

50. 벤치

51. 예정게시판

[표 - 5] 운동요법실 기구배치의 실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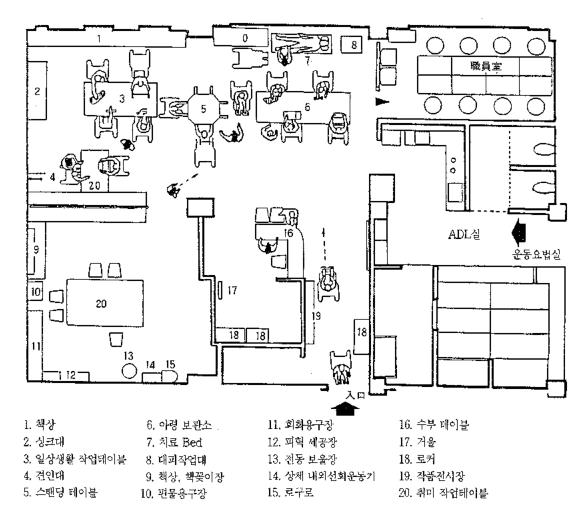
m² / 1인 이었다.

한편, 「종합요법형」에 있어서의 각실의 구성비율은 운동요법실이 22.2%, 작업요법실이 13.6%, 물리치료실이 5.5% 기타부분이 58.7%의 구성을 보였다.

각 요법실은 다시 세분되여 각 요법코너로 나누어 진다. 「종합요법형」 시설에서 운동요법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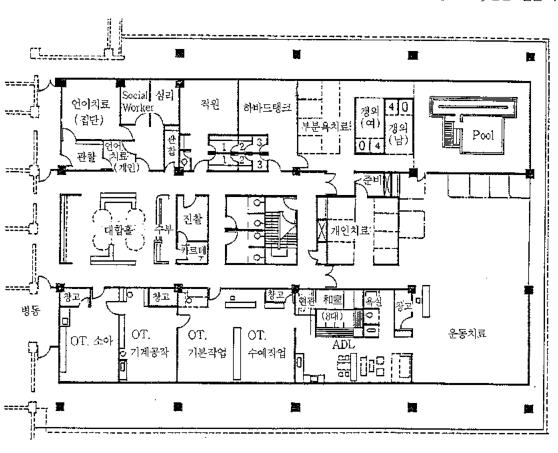
코너구성비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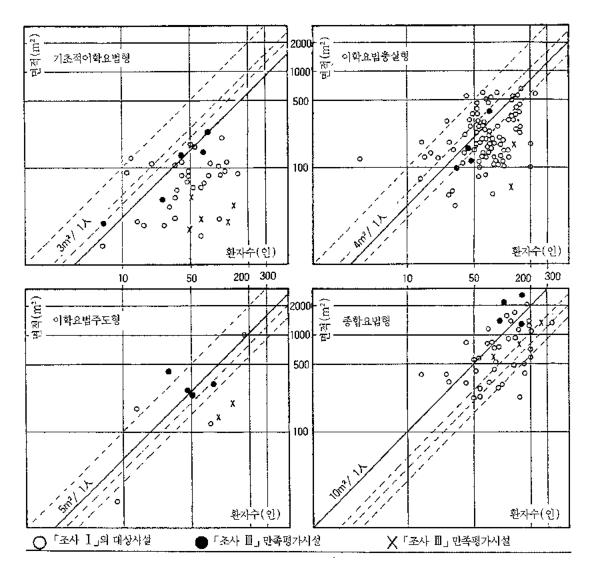
가) 보행훈련: 23.8%, 나) 매트훈련: 21.4%, 다) 하지훈련: 11.5%, 라) 상지훈련: 4.1% 마) 개별치료코너: 7.0%, 바) 물리요법: 0.3%, 사) 기록: 1.7%, 아) 기타, 린넨, 기구창고, 출입구, 휴식 및 대합 등의 코너가 9.2%, 다목적공간이 21.1%의 공간구성비율로 나타났다.



[표 - 6] 작업요법실 기구배치의 실예

[표 - 7] 종합요법실 시설의 평면도 예





 $[\, \hbox{$ u = 8 }]$ 기능 유형별 리해빌리테이션 환자수 $(\, \hbox{$ i \hbox{$ u $} $})$ 와 리해빌리테이션 전체면적의 대비

		치료・훈련	[전용부분(치료학	단위 코너)						속부분	
= 1 =	보행훈련	매트훈련	하지훈련	상지훈련	개별훈련	物療	기록	린덴 기구 ⁵	5椅子 치장 출 [℃]	입구 휴식 대합	다목적공간
기초적 이학 요법형	15.1	14.0	4.4	2.4	0.0	7.4	3.0	8.2		.6 2.9	3.8
65.8 m²	22.9%	21.3	6.7	3.6	0.0	11.2	4.6	2.1 12.5	2.1 2	.7 4.4	5.8
이학요법 충실형	20.8 m	16.2	15.2	ß.2	0.0	0.8	2.4	0.5 7.5	1,2	1.2 0.7	12.7
91.4m*	22.8%	17.7	16.6	6.8	0.0	0.9	2.8	0.5 8.2	1.3 3	.5 5.2	13.9
작업요법 주도형	22.8 🖈	34.3	11.9	7.9	0.0	0.0	2.4	4.7	3.5 2	0.3	17.7
107.7 w	21.2%	31.8	11.1	7.3	0.0	0.0	2.2	0.0 4.4	3.2 2	.0 0.3	16.4
통합 요법형	72.8 ਜੀ	86.0	35.5	12.7	21.7	0.9	5.3	9.0 t	3.7	9.2	63.8
308.3 ㎡	23.8%	21.4	11.5	4.1	7.0	0.3	1.7	0.4 2.8	1.2	2.6 2.2	21.1

[표 - 9] 운동요법실에서의 요법코너의 평균면적과 구성비

8. 리해빌리테이션 환자의 생활환경계획

리해빌리테이션의 목적에 따른 훈련 및 생활공간은 환자에게 있어서 쾌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입원이 다소 장기화되더라도 언젠가는 퇴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자의 거주공간의 쾌적성을 중시하여 환자의 입원전 평균적 일상생활수준을 극단적으로 넘어선 환경설비는, 환자의 가정에로의 복귀면에서 생각한다면, 반드시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실내온도의 배려도 중요한 것으로 혈압에 영향을 주는 온도차는 5℃라고 말해진다. 병실·훈련동 등 일상의 거주공간은 충분히 난방되어져야만 한다. 냉방의 보급은 하기의 실내온도를 과잉냉각시켜 뇌졸중 재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됨으로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입원기간이 장기화된에 따라 가족관계가 소원하게된다. 장에극복의 의욕을 갖게 하면서 원활한 가정복귀를 위한 좋은 가족관계의 유지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우선 입원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으로서, 기능회복의 미완성부분은 Day — Care, 통원 리해빌리테이션에 의해 계속해 나간다. 또한 가족에 대한 지도나 Social Worker에 의한 여러가지 종합적 의료복지 사업의 상담기능을 시설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건축재료나 디테일설계에 있어서도 환자의 특성에 대비하여 고려해야만 할 것이 많이 있다. 안전을 고려한 바닥재료의 선택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유리벽의 반사가 일으키는 마비환자, 노인환자에게의 착시증상등의 방지는 심각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9. 금후의 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리해빌리테이션에 대한 인식도 "문리치료"라는 원시적인 단계를 하루 빨리 탈피하여 발병초기부터의 적극적 개입은 물론, 사회복귀까지에 이르는 포괄적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필요로하는 시기에 와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비되어야할 제도적 장치가 너무나 많이 산재해있다. 그중에서도

- 가) 리해빌리테이션 의학교육의 확충.
- 나) 전문요법사의 양성.
- 다) 리해빌리테이션의료의 비채산성의 개선,
- 라) 각종 지역의료 및 복지시설과의 연계,
- 마) 객관적 정보망의 정비,
- 바) 의료비부담구분의 통일 등 제도적 정비가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리해빌리테이션 시설의 획일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의료수가상의 설계기준에 관계가 있는 시설인가 요령도 시설의 단계성, 대상으로하는 환자와 치료・훈련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념의 정리가 완성된 후에 리해빌리테이션 시설의 건축계획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외료시설 영역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 1회 아카시아건축상' 응모 안내

본 협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RCASIA)에서는 아시아 건축가들의 우수한 설계작품을 엄선하여 공식 인정해 줌으로써 아시아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아시아 건축의 우수성을 세계 각지에 널리 흥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 12회 아카시아이사회에서 아카시아건축상을 제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상은 오는 10월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개최될 제 5차 아시아건축사대회시 각 부문별로 금메달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있으시길 바랍니다.

• 용모대상

1992년 6월 현재 개업중인 건축사

• 출품자격

1992년 6월 30일 이전에 준공검사를 필한 작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 건축물

• 응모부문

- 주거용 건물(단독, 다세대, 개인, 공동주택)
- 공공건물(오피스텔, 협회 및 종교단체 건물, 위락시설, 쇼핑센터, 건강관리시설등)
- 산업시설(공장, 창고등)
- 보호관리 프로젝트(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건축적 유산을 보존 또는 복구하는 프로젝트)

● 재출자료

-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설명서 (양식 1~3)
- 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설명서 (양식 4)
- 축소된 배치도, 3개이하의 축소된 평면도 및 2개의 단면도 (양식 5)
- 5도, 색상 이상의 칼라사진 (양식 6)

• 응모마감

1992년 7월 10일

• 시 상

각 부문별 금에달 1작품

- 1인이 한 작품 이상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작 품별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양식을 추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A4크기 어야 하며,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함.
- 아시아건축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출
 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음.
- 아시아건축사협외회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8월초)에
 통과된 작품은 최종심사를 위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야 함(칼라사진 및 모형 추후 통자)
- 자료 제출은 반드시 협회를 경유해야 함.

• 제출 및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총무부 (581 - 5711~4)

1992년 4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4월분 1천78만6천8백77m² 보 다 19.04%(2백5반3천8백77m²) 감 소 한 8백73만3천m²의 실적을 보였

나. **전년동기비** 전년 4월누계 4천8백만6천2백35m²

보다 22.37%(1천74만8백76m²) 감 소한 3천7백26만5천3백59m²의 실적

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3월분 1천1백75만3천7백20m² 보다 25.70%(3백2만7백20m²) 감소

한 8백73만3천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 圖書申告 槪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	분	1991년도	1992년도	증ㆍ감	비율(%)
	부 산	955,856	1,380,823	424,967	44.46%
증가지역	 대 구	254,676	642,174	387,498	152.15%
	인 천	343,306	503,063	159,757	46.53%
	강 원	319,776	380,979	61,203	19.14%
	충 날	338,705	348,839	10,134	2.99%
	전 북	226,472	329,710	103,238	45.59%
	전 남	234,799	257,821	23,022	9.80%
	경 북	533,657	767,915	234,258	43.90%
	서 울	2,047,721	1,229,179	(818,542)	-39.97%
감소지역	광 주	209,457	93,611	(115,846)	-55.31%
	대 전	555,217	234,749	(320,468)	- 57.72%
	경 기	2,922,690	1,529,144	(1,393,546)	-47.68%
	충 북	391,994	237,453	(154,541)	- 39.42%
	경 남	1,309,877	709,174	(600,703)	-45.86%
	제 주	142,674	88,366	(54,308)	-38.06%
합	계	10,786,877	8,733,000	(2,053,877)	- 19.04%

全國 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G G -1/1 G /				(54) / m)
종 별	3월분	4월 분	증·감	비율(%)
단 독 주 택	1,323,728	1,024,638	(299,090)	-22.59%
다세대주택	221,894	226,369	4,475	2.02%
연립주택	65,179	76,677	11,498	17.64%
아 파 트	5,882,533	2,485,343	(3,397,190)	-57.75%
근린생활시설	1,543,899	1,566,242	22,343	1.45%
종 교 시 설	90,650	80,557	(10,093)	- 11.13%
의 료 시 설	38,353	65,363	27,010	70.42%
교육연구시설	331,928	200,370	(131,558)	-39.63%
업 무 시 설	409,065	764,895	355,830	86.99%
숙 박 시 설	61,212	58,676	(2,536)	-4.14%
공 장	1,004,387	1,222,467	218,080	21.71%
기 타	780,892	961,403	180,511	23.12%
계	11,753,720	8,733,000	(3,020,720)	-25.70%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槪況(4月分)

	구분	신	축・개축・자	H축	증		축	대수	∸선 및 용도 ⁽	 변경	합		계
시도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율	2,396	2,442	1,188,038	125	135	41,141	1	1	0	2,522	2,578	1,229,179
부	산	1,416	1,648	1,315,484	172	219	35,857	47	51	29,482	1,635	1,918	1,380,823
CH	구	578	668	598,819	290	313	21,237	50	50	22,118	918	1,031	642,174
인	천	476	679	482,253	34	34	10,921	22	21	9,889	532	734	503,063
광	주	269	281	65,018	76	96	23,556	19	19	5,037	364	396	93,611
CĦ	전	339	353	208,433	49	56	16,520	77	78	9,796	465	487	234,749
경	기	2,017	2,469	1,342,863	263	309	100,842	109	109	85,439	2,389	2,887	1,529,144
강	원	747	827	332, 166	118	139	43,706	24	25	5,107	889	991	380,979
충	북	678	765	184,677	154	193	41,089	81	88	11,687	913	1,046	237,453
충	남	566	593	279,107	151	153	51,777	22	22	17,955	739	768	348,839
전	북	622	738	291,693	96	118	27,380	26	26	10,637	744	882	329,710
전	남	690	801	207,588	139	184	45,980	17	17	4,253	846	1,002	257,821
경	북	876	1,046	609,451	209	244	116,343	33	33	42,121	1,118	1,323	767,915
경	남	1,265	1,453	565,033	258	389	113,267	43	43	30,874	1,566	1,885	709,174
졔	주	242	265	80,546	86	86	7,820	0	0	0	328	351	88,366
합	계	13,177	15,028	7,751,169	2,220	2,668	697,436	5 7 i	583	284,395	15,968	18,279	8,733,000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4月 合計分)

	구분	신	측 · 개축 · 지	축	25		측	대수	·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시도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서	울	6,746	7,064	4,212,742	364	390	180,310	1	1	0	7,111	7,455	4,393,052
부	산	4,586	5,722	3,459,703	566	710	222,130	191	213	115,752	5,343	6,645	3,797,585
대	구	1,706	1,901	1,326,453	840	905	107,018	161	167	89,073	2,707	2,973	1,522,544
인	천	1,444	2,014	1,792,141	101	106	98,133	90	93	45,349	1,635	2,213	1,935,623
광	주	1,054	1,231	856,359	233	270	67,991	50	50	13,942	1,337	1,551	938,292
대	전	1,060	1,314	1,672,033	149	164	94,595	250	262	101,450	1,459	1,740	1,868,078
. 경	기	6,166	8,424	8,675,733	674	789	285,179	374	374	258,771	7,214	9,587	9,219,683
강	 원	2,003	2,437	1,730,992	359	431	176,987	79	82	18,009	2,441	2,950	1,925,988
충	북	2,152	2,593	966,744	449	590	160,406	255	268	30,243	2,856	3,451	1,157,393
충	남	1,724	1,836	1,247,590	433	440	131,854	78	97	52,796	2,235	2,373	1,432,240
전	북	1,470	1,721	1,289,638	284	329	90,408	100	100	31,505	1,854	2,150	1,411,551
전	남	2.012	2,391	884,459	472	616	190,609	81	86	21,468	2,565	3,093	1,096,536
경	북	2,786	3,336	2,242,106	620	739	297,847	121	1 15	142,570	3,527	4,190	2,682,523
경	남	3,989	4,974	3,136,656	643	943	283,457	157	160	90,641	4,789	6,077	3,510,754
제	주	726	877	351,979	293	293	21,538	0	0	0	1,019	1,170	373,517
합	계	39,624	47,835	33,845,328	6,480	7,715	2,408,462	1,988	2,068	1,011,569	48,092	57,618	37,265,359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4月分)

구분	· 신축·개축·재축			중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용도별	건 수	등 수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톡 주 택	6,425	6,661	955,877	839	883	62,757	63	64	6,004	7,327	7,608	1,024,638
다세 대주 택	447	595	223,748	18	20	1,817	5	6	804	470	621	226,369
연립주택	57	61	76,569	0	0	0	1	1	108	58	62	76,677
아 파 트	1 41	550	2,483,512	14	28	1,831	0	0	0	1 5 5	578	2,485,343
근린생활시설	3,993	4,179	1,339,759	557	594	110,502	299	300	115,981	4,849	5,073	1,566,242
종 교 시 설	88	99	64,002	45	55	15,150	6	6	1,405	139	160	80,557
의 료 시 설	. 7	7	58,790	9	9	6,573	1	. 1	0	17	17	65,363
교육연구시설	60	79	108,808	56	71	81,330	23	23	10,232	139	173	200,370
업 무 시 설	113	126	712,208	56	63	28,291	22	23	24,396	191	212	764,895
숙 박 시 설	23	23	43,883	12	14	5,505	13	13	9,288	48	50	58,676
공 장	562	917	902,393	263	500	257,834	67	74	62,240	892	1,491	1,222,467
기 타	1,261	1,731	781,620	351	431	125,846	71	72	53,937	1,683	2,234	961,403
합 계	13,177	15,028	7,751,169	2,220	2,668	697,436	571	583	284,395	15,968	18,279	8,733,000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4月 合計分)

구분	신축·개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할 계		계
용도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통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18,295	19,481	3,168,911	2,322	2,491	183,837	194	197	18,273	20,811	22,169	3,371,021
다세대주택	1,399	1,794	691,143	80	82	6,803	13	14	2,223	1,492	1,890	700,169
연립주택	178	251	376,890	13	13	3,130	3	3	36 9	194	267	380,389
아 파 트	646	3,795	17,360,517	37	67	69,727	14	15	18,728	697	3,877	17,448,972
근린생활시설	12,755	13,416	4,680,765	1,668	1,756	327,105	1,006	1,019	347,005	15,429	16,191	5,354,875
종 교 시 설	249	299	186,682	161	183	55,349	22	22	7,337	432	504	249,368
의 료 시 설	18	18	73,787	25	34	77,262	8	8	4,223	51	60	155,272
교육연구시설	187	264	543,331	151	189	265,538	111	122	90,660	449	575	899,529
업무시설!	401	434	1,663,485	157	180	132,851	79	81	98,630	637	695	1,894,966
숙 박 시 설 :	. 66 h	71	135,494	40	44	15,655	37	39	85,827	143	154	236,976
공 장	1,649	2,825	2,652,119	767	1,302	728,620	222	259	170,214	2,638	4,386	3,550,953
기 타	3,781	5,187	2,312,204	1,059	1,374	542,585	279	289	168,080	5,119	6,850	3,022,869
할 계	39,624	47,835	33,845,328	6,480	7,715	2,408,462	1,988	2,068	1,011,569	48,092	57,618	37,265,359

建築士業務 停止 處分에 對한 取消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 22 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 직대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울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청구인 윤○○는 서울 성동구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89. 4월경 건축주인 청구와 정 ○○의 의뢰를 받고 서울 성동구 소재 청구의 정 ○ ○ 소유의 주택에 대한 근린 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1동(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설계 변경(주 계단 위치 변경)과 허가면적 초과(26.76 m²의 면적 증가)의 위법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건축사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건축사범 제 28조 제61 항 제 9호, 제 20조에 의거 1991, 5, 25자로 피청구인(서울 특별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1, 5, 29~1991, 7, 28)의 건축사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데 대하여.

원고 윤○○는 위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로서의 성실의무를 태만히 한 바 없고, 위 위법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시정 권고 하였고. 또한 1991, 1, 11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 1991, 2, 3, 준공검사까지 마침으로서 기왕에 발생한 위법사항이 치유되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대법원에서논

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 정○○의 서울 성동구에 신축하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긴축주인 위 정 ○○이 허가면적보다 약 26m²를 초과하여 건축하고 설계도와는 달리 벽체를 쌓는 등 위법한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정○ ○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기간 내에 원고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건축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로서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사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로서의 성실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패율을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위 정(○○이 예상되는 건폐율을 범위 내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원래의 허가면적을 초관하여 이 사건 면적을 건축하였고, 원고도 이와 같이 건폐율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의 허가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정○○의 위법사항음 보고하지 않은 사실, 살제로 서울특별시 내외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1990. 7. 7 자로 종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변경된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계 되자 위 정 ○ ○은 1991. 1. 11 자로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같은 해 2월 3일에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기왕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위법사항의 발생경위, 원고가 위법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 이 사건 건물이 후에 설계변경의 허가를 거쳐 적법한 건물로 된 사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념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궁이 가고 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 주장하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 22조는 행정청내부의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1992. 4. 28 대법원 제 1부 관결선고)

※ 참조조문

진축법 제 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제 20조(업무상의 성실등 의무) 제 28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 명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 22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건축사 업무쇄신 다짐대회 개최

본 협회(회장 오운동)는 지난 6월 5일(금) 본 협회 대강당에서 7백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축풍토의 쇄신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건전한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일부 건축사업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착결의 일환으로 건축사업무 쇄신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지역을 팔두로 전국 시 ·도 건축사회 단위로 개최되는 이번 다짐대회에서 오운동 회장 은 인사발을 통해 「전문직업인 오로서의 자공심을 가지고 부단 한 개혁의지로 건전하고 성숙된 민주사회의 건축풍토 조성에 앞 장서자」고 하였다. 이어, 이경남 이사의 선창으로, 「건축물의 설계·감리에 있어 따르는 업무수 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절의 건 축관련 비리의 근절에 앞장서 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다짐대회에 이어 서울 건축사회 회원들의 '92년도 보수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7 월 7일까지 전국 시·도 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로실시될 예정이다.



다잡대화 전경



決意文

우리는 建築物의 設計, 監理에 관하여 國家로부터 資格을 賦與받은 專門 技術人으로서 建築土業務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일어나는 一切의 建築關聯 非理의 根絕에 앞장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決意한다.

- . 우리는 建築物의 設計, 許可, 監理 및 檢查等의 過程에서 迅速處理 를 위한 儀禮的인 金品接受行為와 違法·不當한 事項에 대한 무마, 그리고 목인조의 金品接受行為等을 --切하지 아니한다.
- -, 우리는 設計 및 監理 受注를 爲한 過當 競爭을 止揚하고 設計圖書 의 充實한 作成과 檢討는 물론 現場監理를 보다 徹底히 함으로써 不 實設計 및 監理 素地를 根本的으로 除去한다.
- 一. 우리는 建築上 調查·檢查 代行業務를 許可權者를 代身하여 誠 實히 遂行함으로써 "建築民願行政 刷新運動"에 積極 앞장선다.
- 우리는 免許貸與 및 二重就業等 建築關聯法令과 建築士 倫理規程 을 違反하여 建築士의 品位를 損傷하는 一切의 行為를 하지 아니하 며, 自體 倫理委員會를 強化하여 自律的으로 淨化해 나갈 것을 <u>다진</u> 한다.
- 우리는 30分 일더하기와 無事妄逸·非能率·不親切等 3大 追放 運動, 그라고 家庭과 職場에서 에너지와 物資節約의 生活化를 통하여 「새秩序·새生活 實踐運動」에 積極 <u>同參한다.</u>
- . 우리는 創意性을 最大한 發揮하여 國民便益을 圖謀하고 建築技術 開發에 最善을 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建築文化 暢達을 積極 主導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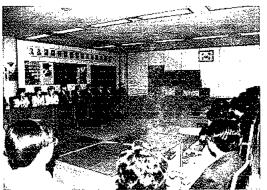
1992, 6, 8

大韓建築士協會 會員 一同

특별 직장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달 25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우리 경제의 실상에 대한 울바른 이해와 열심 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속히 정착 시키기 위하여 특별 직장교육을 심시하였다.

본부 및 서울건축사회, 서울 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직원을 대 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을 주제 한 박경환 상근 부회장은 실례로 보는 우리경제의 지표'와'민주화 추진을 위한 우리의 자세'란 주 제를 가지고,마국 MIT의 보고 서를 인용하여 미국이 쇠퇴하는 원인과 일본이 급성장하게 된 배 경등,선진국의 경우를 세부적으 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우리 경제 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우 리가 나야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특별 직장교육 광경



전경부대 위문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월) 해외건설협회·대한설비공 사와 함께 군무에 충실하고 있는 201전투경찰부대를 방문하여 사 과 7상자와 라면 50상자 등의 위 문품을 전달하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 하였다.

농촌 일손롭기 성금 기탁

본 협회에서는 지난 달 25일 농촌의 이농현상 및 농촌 인력의 노령화로 인력이 부족하여 휴경 농지가 늘어나고 적기영농을 추 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농촌에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 │ 에 기탁하였다.

철을 맞아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일손톱 기와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일환 으로 농촌 일손돕기 성금 일백만 원을 농림수산부 일손지원센터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서울건축사회(회장 이분유) 에서는 6월 16일 자로 "서울건 축사신문"이 창간 되었다.

이 신문은 격주간으로 건축관 련뉴스의 심층분석, 건축정보의 신속한 보도, 건축학 연구논문 게재, 회원동정 및 목자투고란 📗 고 있다.

활성화, 그리고 우수건축물 및 새 건축자재를 소개하는 등 올바 른 건축문화 창달에 일조함은 불 뿐, 회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신 속한 정보 전달과 성실한 대관청 민원창구의 구실을 목적으로 하

경로 소연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 이문우) 는 지난 5월 18일(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웃어른 올 공경하는 뜻으로 역대 서울건 축사회 회장 및 원로회원(추대

회원)을 모시고 경로효친 사상 을 고취시키고자 경기도 장흥 소 재 세종레저타운에서 소연을 베 풀고 선물을 중정하였다.



경로소연 광경

간담회 실시

광주건축사회(회장 서정만) 에서는 지난 달 20일 광주건축 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건축행 정 건실화 및 발전을 위한 건축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

광주직할시의 손병선 건설주 택국장 등 11명과 건축사회의 서정민 회장을 비롯한 25명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본협회 업무 현황 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계획 및 건축법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 와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올 토의 답변하는 등 좀더 발전 적인 건축행정 및 건축계 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제1회 韓國建築文化 大賞 作品公募

서울경제신문사화 건설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설협회 · 한국주택사업 협회 ·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등 유관 4개단체가 후원하는 제 1회「한국건축문화 대상」의 작 품응모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조성을 목표로 제정된 건축문화분야에 관한 국내 유일 의 시상제도로서「환경과 조화 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 물」을 빚어낸 설계자ㆍ시공자ㆍ 건축주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 축을 문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 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주인공들 음 격려코자 합니다.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누구 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의 시상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작품 제출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대 신 국제 최초로 현장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찬란한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를 이어 받아 민족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건축공간을 창조해 후손 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시대의 역사적 책무이자 사명이기도 합 나다. 또 경제성장에 발맞춰 건 축이 문화의 차원으로 올라서 실 제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 여를 기대합니다.

◇ 응모요강 ◇

- 賞의 종류
- · 大賞 1점(전건축물 대상)
- 本賞4점(주거용·非주거용 각 2점)
- 공로상(건축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입선작 다수
- 시상시기 : 10월초(연1회)
- 시상대상: 시행연도 및 전년도 에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
- 응모기간:6월10일~8월30일
- 응모자격 : 설계자, 시공자 또 는 건축주
- ◆ 제출서류
- · 작품설명서와 기본설계도면 이 포함된 B4 규격(25.6 × 36 cm)의 작품사진첩(8 × 10인치 사진 10장내외) 2부
- · 작품의 설계자 · 시공자 · 건 축주 간이소개서 2부
- 패널은 입선작에 한해 추후제 출 통보(계작비 일부 지원예정)

- 접수 및 문의처
- 우편번호 110 792
-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 체신문사 편집국사회부
- (227 2457 8)
- 본협회 출판사업부
- $(2581 5711 \sim 4)$
- 제출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 는 우송 제출
- 심사 : 관계전문가 및 사회각 분야 저명인사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서류심사후 현장방문 집사
- 시상내용
- · 본상이상 설계자 · 셔공자 및 공로상수상자 - 상쾌수여 및 해 외시찰(중국 예정)
- 건축주 상패 및 동판(건축 물부착용)수여
- · 입선작 설계자·시공자-상패
- 시상자: 건설부장관 서울 경 제션문사장 및 후원 4개 단체장
- 특전 : 진응모작 보도홍보 및 상설전시

주최:서울경제신문사·건설부

후원: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사업협회 ·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